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367호

2016. 8. 25.(목)

함께
서울



목 차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16-1737호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
---	---

◆ 고 시

제2016-255호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가재울4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4
제2016-256호 수락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31
제2016-257호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40
제2016-25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54
제2016-259호 서울특별시 지적 조사사업 종합계획(2차) 고시	58
제2016-260호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고시	71
제2016-261호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86

◆ 공 고

제2016-1515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112
제2016-1516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112
제2016-1517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113
제2016-1706호 시유특허권 처분 공고	113
제2016-1714호 회계관계직인 등록 공고	124
제2016-172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공고	124
제2016-1727호 소방시설업 폐업 공고	125
제2016-1728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125
제2016-1729호 2016년도 제14차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공고	127
제2016-1732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128
제2016-1739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130
제2016-1746호 보라매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열람공고	131
제2016-1747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공고	132
제2016-1761호 2017년도 서울광장 사용신고서 접수 공고	132

◆ 구 고 시

제2016-89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종로구)	143
제2016-80호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성동구)	144
제2016-91호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광진구)	146
제2016-108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성북구)	146
제2016-76호 도시계획시설사업[불암산도시자연공원(중계지구)]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노원구)	150
제2016-73호 도시관리계획(연서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은평구)	158
제2016-69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강서구)	160

◆ 구 공 고

제2016-596호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용산구)	162
제2016-825호 도시관리계획(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열람공고 (도봉구)	165
제2016-690호 도시계획시설사업[불암산도시자연공원(공릉지구)] 실시계획(변경) 인가 열람 공고(노원구)	166
제2016-911호 도시관리계획(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재 열람 공고(양천구)	168
제2016-104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구로구)	169
제2016-958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시행자(변경)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서초구)	171
제2016-1441호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 폐지 결정 열람공고(강남구)	172

◆ 사업소고시

제2016-17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74
제2016-17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74
제2016-17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75

◆ 사업소공고

제2016-178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한강사업본부)	176
제2016-179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수시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한강사업본부)	194

자 치 법 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737호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장기간 동결된 견인료의 현실화, 차종에 따른 견인료 차등 적용 등 현 실정에 부합되는 제도 정비로 서울시 견인 업무의 원활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피견인 차량을 승용·승합자동차(경형, 소형, 중형, 대형), 이륜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로 세분화하여 견인료 차등 적용
 - 승용자동차는 경형 40,000원, 소형 45,000원, 중형 50,000원, 대형 60,000원으로 자동차 규모별 세부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 승합자동차는 경형 40,000원, 소형 60,000원, 중형·대형 80,000원으로 자동차 규모별 세부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 이륜자동차는 40,000원 적용
 -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는 2.5톤 미만 40,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60,000원, 6.5톤 이상 10톤 미만 80,000원, 10톤 이상 140,000원으로 무게에 따라 차등 적용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주차계획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서소문청사 1동 6층, 우편번호 04-5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차계획과(전화: 02-2133-2353, FAX:2133-1051, E-mail: noobel004@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법인명이나 단체명 또는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위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55호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가재울4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59호(2005.1.15) 개발기본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43호(2005.8.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74호(2008.10.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98호(2009.12.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35호(2009.12.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00호(2010.11.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8호(2011.1.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52호(2011. 6.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4호(2011.10.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63호(2012.3.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31호(2012.5.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44호(2012.6.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30호(2012.8.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66호(2013.5.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5호(2014.1.16)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25호(2014.4.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69호(2014.5.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31호(2014.9.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35호(2014.12.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05호(2015.10.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98호(2015.12.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83호(2016.3.31.) 등으로 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된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5조에 따라 가재울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 변경없음

명칭	유형	위치	면적(㎡)	지정목적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주거 지형	서대문구 남가좌동·북가좌동 일대	1,077,769.39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북가좌동·남가좌동 일대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 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변경 없음

- 기준연도 : 2003년
- 목표연도 : 2019년

3. 재정비촉진지구의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없음

-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과 자족적 도시기능의 도입
- 자연과 더불어 사는 환경 친화 뉴타운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변경)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1) 주택건설용지 : 768,215.69㎡

(2) 상업업무용지 : 98,600.00㎡

(3) 공공시설용지 : 210,953.70㎡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077,769.39		1,077,769.39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768,215.69		768,215.69	71.3	
	단독주택	12,601.00		12,601.00	1.2	
	공동주택	687,777.19		687,777.19	63.8	
	근린생활	67,837.50		67,837.50	6.3	
상업 업무 용지	소 계	98,600.00		98,600.00	9.1	
	상업업무복합	98,600.00		98,600.00	9.1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210,953.70		210,953.70	19.6	
	도 로	103,154.40	감)25.75	103,128.65	9.6	
	공공청사	2,969.70		2,969.70	0.3	
	공원녹지	64,406.70		64,406.70	6.0	
	학 교	33,349.70		33,349.70	3.1	
	도 서 관	3,486.80		3,486.80	0.3	
	사회복지	2,200.00		2,200.00	0.2	
	공공공지	1,386.40	증)25.75	1,412.15	0.1	
	폐기물처리시설	(5,064.00)		(5,064.00)	(0.5)	

※ () 부분은 근린공원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 중복결정 면적임

2) 인구·주택수용 계획 : 46,705인/19,556세대 (변경 없음)

구분	면적(㎡)	인구수 (인)	가구수	분양	임대
총계	1,077,769.39	46,705	19,556	16,368	3,188
가재울1 재정비촉진구역	19,782.09	892	362	272	90
가재울2 재정비촉진구역	26,116.50	1,138	473	373	100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	242,710.00	7,871	3,293	2,664	629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283,401.70	10,277	4,300	3,550	750
가재울5 재정비촉진구역	52,867.70	2,383	997	827	170
가재울6 재정비촉진구역	48,084.40	2,419	1,047	869	178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78,640.00	3,240	1,350	1,080	270
가재울8 재정비촉진구역	13,248.00	654	283	237	—
가재울 지구단위계획구역	58,318.00	3,099	1,287	1,287	—
준 치	254,601.00	14,732	6,164	5,209	955

3) 교육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

구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3,392.6	증)25.75	43,418.35	
교육 시설	시설명	시설의 세분	소계	33,349.7	—	33,349.7	
	학교	초등학교	북가좌동 80-110 일원	7,438.0	—	7,438.0	
	학교	초등학교	남가좌동 164-1 일원	11,167.0	—	11,167.0	
	학교	중학교	북가좌동 145-106 일원	7,256.1	—	7,256.1	
	학교	고등학교	북가좌동 144-706 일원	7,488.6	—	7,488.6	
문화· 체육 시설등	시설명	시설의 세분	소계	10,042.9	증)25.75	10,068.65	
	공공청사	동사무소	북가좌동 144-343 일원	1,004.7	—	1,004.7	
	공공청사	동사무소	남가좌동 119-17 일원	935.0	—	935.0	
	공공청사	지역아동센터 및 노유자시설	남가좌동 130-10 일원	1,030.0	—	1,030.0	
	도서관	공공도서관	북가좌동 119-3 일원	3,486.8	—	3,486.8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남가좌동 138-3 일원	1,601.0	—	1,601.0	
	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남가좌동 184-10 일원	599.0	—	599.0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남가좌동 289-54 일원	—	—	—	가재울8구역 건축물내 공공시설 (기부채납) -용도 : 어린이집 -면적 : 500㎡이상 (전용면적+공용면적)
	공공공지	공공공지	남가좌동 378 일원	1,386.4	증)25.75	1,412.15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변경 없음)

구분			위치	면적(㎡)	비고
합계				64,406.70	
생활권공 원	시설명	시설의 세분	소계	51,067.00	
	공원	근린공원	북가좌동 105-8 일원	15,421.20	
	공원	어린이공원	남가좌동 175-5 일원	10,500.30	
	공원	어린이공원	북가좌동 168-32 일원	6,652.80	
	공원	어린이공원	남가좌동 379-3 일원	1,175.50	
	공원	어린이공원	남가좌동 123 일원	9,385.00	
	공원	어린이공원	북가좌동 72-126 일원	5,240.00	
	공원	어린이공원	남가좌동 274-26 일원	1,643.20	
	공원	소공원	남가좌동 152-19 일원	1,049.00	
녹지	시설명	시설의 세분	소계	13,339.70	
	녹지	완충녹지	북가좌동 149-60 일원	4,480.60	
	녹지	완충녹지	남가좌동 124-215 일원	1,346.00	
	녹지	완충녹지	남가좌동 115-34 일원	418.00	
	녹지	완충녹지	남가좌동 76-145 일원	1,108.00	
	녹지	경관녹지	북가좌동 362-3 일원	1,318.30	
	녹지	경관녹지	북가좌동 100-45 일원	1,221.90	
	녹지	경관녹지	남가좌동 237-250 일원	681.40	
	녹지	경관녹지	남가좌동 241-49 일원	374.00	
	녹지	경관녹지	남가좌동 380-1 일원	936.50	
	녹지	경관녹지	남가좌동 77-4 일원	1,455.00	

5)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변경)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1	25	보조간선도로	444	성산동 2-20	홍은동 3-17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1	1	20~26	보조간선도로	1,313	남가좌동 105-47	북가좌동 362-7	일반도로	-	서고2007-74 (2007.3.22)	
기정	중로	1	2	20~27	집산도로	1,207	수색로	남가좌동 352-27	일반도로	-	서고2007-74 (2007.3.22)	
기정	중로	1	62	20	집산도로	2,750	연희동 3-17	신사동	일반도로	-	건고2493 (96.6.21)	
기정	중로	2	1	20~21	집산도로	401	모래내길	남가좌동 275-32	일반도로	-	서고2007-102 (2007.4.12)	
기정	중로	2	4	15	집산도로	77	수색로	중로(뉴) (2류-2)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2	5	21	집산도로	706	남가좌동 275-43	북가좌동 421	일반도로	-	서고2007-74 (2007.3.22)	
기정	중로	2	6	15	집산도로	521	북가좌동 108-1	북가좌동 82-1	일반도로	-	서고2005-243 (2005.8.11)	
기정	중로	2	7	15	집산도로	160	남가좌동 169-2	남가좌동 235-345	일반도로	-	서고2008-374 (2008.10.23)	
기정	중로	3	1	12	국지도로	240	북가좌동 144-53	북가좌동 149-23	일반도로	-	서고2007-74 (2007.3.22)	
기정	중로	3	1	12~12.5	집산도로	435	남가좌동 268-33	남가좌동 142-2	일반도로	-	서고2007-102 (2007.4.12)	
기정	중로	3	2	12	집산도로	216	남가좌동 293-94	남가좌동 288-8	일반도로	-	서고2007-102 (2007.4.12)	
기정	소로	1	1	10~13	국지도로	128	남가좌동 268-3	남가좌동 288-4	일반도로	-	서고2007-102 (2007.4.12)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171	남가좌동 152-59	남가좌동 152-58	일반도로	-	서고2007-102 (2007.4.12)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199	남가좌동 267-1	남가좌동 산33-2	일반도로	-	서고2007-74 (2007.3.22)	
기정	소로	2	4	10	국지도로	150	남가좌동 256-21	남가좌동 260-410	일반도로	-	서고2007-102 (2007.4.12)	
기정	소로	2	5	11	집산도로	118	남가좌동 164-12	남가좌동 155-45	일반도로	-	서고2007-102 (2007.4.12)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191	북가좌동 75-89	북가좌동 361-9	일반도로	-	서고3 (69.1.18)	
기정	소로	2	7	8	국지도로	194	북가좌동 417	북가좌동 418	일반도로	-	서고2007-74 (2007.3.22)	
기정	소로	2	8	8	국지도로	280	중로(뉴) (1류-3)	북가좌동 362-2도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9	8	국지도로	36	남가좌동 262-241	남가좌동 262-449	일반도로	-	서고2007-74 (2007.3.22)	
기정	소로	2		8	국지도로	288	북가좌동 304-37	북가좌동 301-2	일반도로	-	서고2012-144 (2012.6.7)	
기정	소로	3	245	6~8	국지도로	138	남가좌동 188	남가좌동 214-2	일반도로	-	서고3 (69.1.18)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142	중로(뉴) (1류-3)	소로(뉴) (2류-7)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40	북가좌동 362-2도	응암로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4	6	국지도로	84	남가좌동 115-60	남가좌동 137-5	일반도로	-	서고2007-102 (2007.4.12)	
기정	소로	3		6	국지도로	73	북가좌동 100-336	북가좌동 303-40	일반도로	-	서고3 (69.1.18)	
기정 변경	소로	3	11	4	국지도로	1510	남가좌동 76-19	남가좌동 116-4	일반도로	-	서고2015-305 (2015.10.1)	-
기정	소로	3	12	4	국지도로	19	남가좌동 124-607	남가좌동 124-609	일반도로	-	서고2015-305 (2015.10.1)	-

6) 경관계획 (변경 없음)

○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도서(☐-8장, 경관계획)에 명시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없음)

구분	사업방식	구역명	위치	면적(㎡)	변경사유	비고
합계				764,850.39		
기정	주택 재개발	가재울1 재정비촉진구역	북가좌동 75번지 일대	19,782.09		
기정	주택 재개발	가재울2 재정비촉진구역	남가좌동 240번지 일대	26,116.50		
기정	주택 재개발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	북가좌동 144번지 일대	242,710.00		
기정	주택 재개발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남가좌동 155번지 일대	283,401.70		
기정	주택 재개발	가재울5 재정비촉진구역	남가좌동 175번지 일대	52,867.70		
기정	주택 재개발	가재울6 재정비촉진구역	남가좌동 224번지 일대	48,084.40		
기정	주택 재개발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북가좌동 80번지 일대	78,640.00		
기정	도시환경 정비	가재울8 재정비촉진구역	남가좌동 289-54번지 일대	13,248.00		

8) 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시행자	비고
사업방식			합계		764,850.39		
기정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가재울1 재정비촉진구역	북가좌동 75번지 일대	19,782.09	민간(조합) 시행	
기정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가재울2 재정비촉진구역	남가좌동 240번지 일대	26,116.50	민간(조합) 시행	
기정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	북가좌동 144번지 일대	242,710.00	민간(조합) 시행	
기정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남가좌동 155번지 일대	283,401.70	민간(조합) 시행	
기정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가재울5 재정비촉진구역	남가좌동 175번지 일대	52,867.70	민간(조합) 시행	
기정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가재울6 재정비촉진구역	남가좌동 224번지 일대	48,084.40	민간(조합) 시행	
기정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북가좌동 80번지 일대	78,640.00	민간(조합) 시행	
기정	재정비 촉진구역	도시 환경정비	가재울8 재정비촉진구역	남가좌동 289-54번지 일대	13,248.00	민간(조합) 시행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변경없음)

(1) 용도지역계획 (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계		1,077,769.39	100.0	
주거지역	소계	1,051,329.39	97.5	
	제1종일반주거지역	21,439.00	2.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39,120.80	12.9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406,518.84	37.7	
	제3종일반주거지역	441,817.35	41.0	
	준주거지역	42,433.40	3.9	
상업지역	소계	26,440.00	2.5	
	중심상업지역	-	-	
	일반상업지역	26,440.00	2.5	
	근린상업지역	-	-	
	유통상업지역	-	-	

(2) 재정비촉진구역별 용도지역계획 (변경없음)

- ① 가재울1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② 가재울2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③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④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283,401.70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34,257.60	12.1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121,251.00	42.8	
제3종일반주거지역	126,506.70	44.6	
준주거지역	1,386.40	0.5	

- ⑤ 가재울5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⑥ 가재울6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⑦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⑧ 가재울8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변경없음)

구역명	주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계획	
		기준	상한		평균층수/ 최고층수	최고높이 (m)
기정 가재울1 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90	240	50	16층이하/ 20층이하	62이하
기정 가재울2 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90	240	50	16층이하/ 20층이하	62이하
기정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90	240	50	16층이하/ 35층이하	105.8이하
기정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90	240	50	17층이하/ 33층이하	102이하
기정 가재울5 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0	300	50	18층이하/ 25층이하	75이하
기정 가재울6 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0	300	50	18층이하/ 25층이하	75이하
기정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0	255	50	- / 26층이하	80이하
기정 가재울8 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오피스텔/ 판매시설	300 (허용340)	400	60	- / 27층이하	85이하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변경)

(1) 기반시설 확보율 (변경없음)

구역명	면적(㎡)	기반시설면적(㎡)					비고
		계획기반 시설①	계획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②	기존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③	유상매입 시설 ④	순부담면적 ①-②-③-④ (%)	
가재울1재정비촉진구역	19,782.09	5,043.90	-	-	-	5,043.90 (25.50)	
가재울2재정비촉진구역	26,116.50	5,373.20	-	-	-	5,373.20 (20.57)	
가재울3재정비촉진구역	242,710.00	74,800.30	23,172.10	14,469.40	-	37,158.80 (15.31)	
가재울4재정비촉진구역	283,401.70	71,622.90	-	-	-	71,622.90 (25.27)	
가재울5재정비촉진구역	52,867.70	10,902.50	2,336.60	1,562.90	599.00	6,404.00 (12.11)	
가재울6재정비촉진구역	48,085.40	9,994.90	1,062.00	870.00	-	8,062.90 (16.77)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	78,640.00	21,026.00	3,172.00	5,963.00	-	11,891 (15.12)	
가재울8재정비촉진구역	13,248.00	3,378.00	1,857.80			1,520.20 (11.47)	
총계	764,850.39	202,141.70	31,600.50	22,865.30	599.00	147,076.90 (19.23)	

(2) 도시기반 및 공공시설 설치계획 (변경)

시 설 명			개소	규모	위치	비고
도로	대로3류		1	폭 : 25m, 연장 : 444m	성산동2-20~홍은동3-17	가재울 재정비 촉진 지구내
	중로1류		2	폭 : 20~27m, 연장 : 2,293m	모래내~응암로	
	중로2류		6	폭 : 15m, 연장 : 2,631m	수색로~북가좌동115-103	
	중로3류		1	폭 : 12~12.5m, 연장 : 380m	중로2류5~수색로	
	소로1류		1	폭 : 10~13m, 연장 : 158m	중로1류-1~남가좌동377-5	
	소로2류		10	폭 : 7~14m, 연장 : 1,649m	남가좌동152-58~남가좌동152-59	
	기정 변경	소로3류	6	폭 : 4~6m, 연장 : 362m 폭 : 4~6m, 연장 : 357m	중로1류-3~소로2류-7	
공원 · 녹지	근린공원		1	15,421.2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어린이공원		6	34,596.8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가재울4구역)	
	소공원		1	1,049.0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가재울4구역)	
	경관녹지		6	5,987.1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가재울4구역)	
	완충녹지		4	7,352.6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학교	초등학교		2	18,605.0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중학교		1	7,256.1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고등학교		1	7,488.6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 시설	공공청사복합화 (동사무소)		2	1,939.7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지역아동센터 및 노유자시설		1	1,030.0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가재울4구역)	
	도서관		1	3,486.8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3	2,200.0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정 변경	공공공지	2	1,386.4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3		1,412.15㎡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가재울4구역)		

1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변경 없음)

○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도서(㉓-15장, 임대주택 건설)에 명시

13)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구분		구역수	대상지역	비고
기정	1단계 (2004 ~ 2008년)	2개	가재울 1, 2촉진구역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함
기정	2단계 (2007 ~ 2015년)	3개	가재울 4, 5, 6촉진구역	
기정	3단계 (2010 ~ 2019년 이후)	2개	가재울 7,8촉진구역	자율정비구역 및 존치지역

14) 광고물 관리계획 (변경 없음)

○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도서(㉓-18장, 광고물 관리계획)에 명시

15)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도서(㉓-19장, 폐기물처리계획)에 명시

16)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변경)

가. 가재울1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나. 가재울2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다.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라.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구분	촉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서대문구 남가좌동 155번지 일대	283,401.70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illegible]

나) 용도지역계획 (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283,401.70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34,257.60	12.1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121,251.00	42.8	-
제3종일반주거지역	126,506.70	44.6	-
준주거지역	1,386.40	0.5	-

(3)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변경)

가) 도로 결정조서 (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3	1	25	보조간선 도로	444	성산동 2-20	홍은동 3-17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1	1	20~26	"	1,313 (736)	남가좌동 105-4	북가좌동 99-18	"	-	-	-
기정	중로	1	2	20	집산 도로	1,207 (544)	남가좌동 268-1	남가좌동 185-2	"	-	-	-
기정	중로	2	1	20~21	"	401	남가좌동 124-329	남가좌동 275-32	"	-	-	-
기정	중로	2	5	21	"	706 (127)	남가좌동 275-52	남가좌동 275-32	"	-	-	-
기정	중로	3	1	12	국지 도로	437 (38)	남가좌동 268-33	남가좌동 142-2	"	-	-	-
기정	중로	3	2	12	"	216 (43)	남가좌동 293-94	남가좌동 288-8	"	-	-	-
기정	소로	1	1	10	"	131 (105)	남가좌동 268-3	남가좌동 288-4	"	-	-	-
기정	소로	2	2	8	"	171 (14)	남가좌동 152-59	남가좌동 152-58	"	-	-	-
기정	소로	2	4	10	"	150	남가좌동 256-21	남가좌동 260-410	"	-	-	-
기정	소로	2	5	11	"	118	남가좌동 164-12	남가좌동 155-45	"	-	-	-
기정	소로	3	4	6	"	84	남가좌동 115-60	남가좌동 137-5	"	-	-	-
기정 변경	소로	3	11	4	"	15 10	남가좌동 76-19	남가좌동 116-4	"	-	-	-
기정	소로	3	12	4	"	19	남가좌동 124-607	남가좌동 124-609	"	-	-	-

※ ()안의 사항은 가재울4구역내 사항임.

○ 변경 사유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도로(소로3-11)	도로연장 5m 감소	인접 공동주택의 보행로 확보

나) 공원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공원	근린공원	북가좌동 115-97 일원	5,064.00	-
기정	공원	어린이공원1	남가좌동 123 일원	9,385.00	-
기정	공원	어린이공원2	남가좌동 274-26 일원	1,643.20	-
기정	공원	소공원1	남가좌동 152-19 일원	1,049.00	-

다) 녹지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녹지	완충녹지1	남가좌동 76-145일원	1,108.00	-
기정	녹지	완충녹지2	남가좌동 115-34일원	418.00	-
기정	녹지	완충녹지3	남가좌동 124-215일원	1,346.00	-

라) 공공공지 결정조서 (변경)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공공공지	공공공지1	남가좌동 378 일원	1,056.40	
기정		공공공지2	남가좌동 378 일원	330.00	
신설		공공공지3	남가좌동 116-4일원	25.75	

○ 변경 사유

결정구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공공공지3	소로3-11연장 일부 축소하고 연결하여 공공공지 설치	인접 공동주택의 보행로 확보

마) 학교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학교	초등학교	남가좌동 164-1 일원	11,167.00	-

바) 공공청사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공공청사	동사무소	남가좌동 119-17 일원	935.00	-
기정	공공청사	지역아동센터 및 노유자시설	남가좌동 130-10 일원	1,030.00	-

사)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폐기물 처리 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북가좌동 115-97 일원	5,064.00	-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시설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법적근거	면적(㎡)	비고
기정	근린생활시설	가재울4 재정비 촉진구역내	• 세대당 6㎡ 이하 • $4,300 \times 6 = 25,800$	13,859.248	적합
기정	관리사무소		• 50세대이상 설치 • $10 + (4,300 - 50) \times 0.05 = 222.5$ 이상	638.703	적합
기정	어린이놀이터		• 100세대이상 설치 • $300 + (4,300 - 100) \times 1 = 4,500$	5,835.000	적합
기정	주민운동시설		• 500세대이상 설치 • $300 + ((4,300 - 500) / 200) \times 150 = 2,729.25$	3,110.000	적합
기정	경로당		• 100세대이상 설치 • $40 + (4,300 - 150) \times 0.1 = 455$	689.490	적합
기정	주민공동시설		• 300세대이상 설치 • $50 + (4,300 - 300) \times 0.1 = 450$	6,664.240	적합
기정	보육시설		• 500세대이상 설치 • $4.29\text{인} \times 40\text{인} = 171.6$	573.188	적합
기정	문고시설		• 300세대이상 설치 • 33㎡이상	326.171	적합

(5)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계획(변경없음)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없음)

결정 구분	지구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가재울4 재정비 촉진구역	283,401.7	-	-	서대문구 남가좌동 155번지 일대	1,636	1	-	1,635	-	-

나) 건축시설계획 : 변경없음

결정 구분	구역구분		획지 구분	위 치	면적(㎡)	건 축 계 획					
	명칭	면적(㎡)				건폐율 (%)	상한용적률 (%)	층수 / 높이 (평균층수)	연면적(㎡)	주된용도	
기정	가 재 올 제 4 재 정 비 축 진 구 역	283,401.7	택지1	남가좌동 124-425	114,242.8	30이하	250이하	33층이하 102m이하	460,000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기정			택지2	남가좌동 243-2	61,138.0	"	230이하	29층이하 평균17층이하 89m이하	250,000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기정			택지3	남가좌동 76-134	14,612.8	"	195이하		60,000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기정			택지4	남가좌동 289-73	8,346.0	40이하	185이하		30,000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기정			택지5	남가좌동 274-1	3,307.0	"	190이하		20,000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기정			합계			201,646.6	30이하	235이하	-	760,000이하	-
기정			택지6	남가좌동 258-8	623.0	해당용도지역에 부합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적용					종교부지
기정			택지7	남가좌동 288-29	457.0	"					종교부지
기정			택지8	남가좌동 141-16	555.0	"					보류지5
기정			택지9	남가좌동 124-139	2,065.0	"					종교부지
기정			택지10	남가좌동 76-159	551.0	"					종교부지
기정			택지11	남가좌동 80-55	1,101.0	"					종교부지
기정			택지12	남가좌동 80-26	408.0	"					주유소
기정			택지13	남가좌동 152-54	1,108.2	"					유치원
기정			택지14	남가좌동 150-19	788.0	"					보류지1
기정			택지15	남가좌동 141-12	626.0	"					보류지2
기정			택지16	남가좌동 185-2	451.0	"					보류지3
기정			택지17	남가좌동 185-2	187.0	"					보류지4
기정			택지18	남가좌동 124-272	800.0	"					종교부지
기정			택지19	남가좌동 80-26	412.0	"					보류지6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기정)			○ 건설비율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80%이상 : 87.27% 적용								
			구분		전용면적		세대수		비율		
			합계		-		4,300		100.00%		
			전용면적 85㎡이하		39㎡		726		16.88%		
					49㎡		16		0.37%		
					59㎡		489		11.37%		
					84㎡		2,522		58.65%		
			전용면적 85㎡초과		120㎡		423		9.84%		
151㎡		64			1.49%						
176㎡		60			1.40%						
			- 임대주택 전체세대수의 17%이상 : 17.44%적용								
비 고			○ 상가건축계획(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은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수립된 사항이므로, 그 효력은 사업시행인가 후 발효됨.								

(6)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없음)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주택재개발사업	-	가재울뉴타운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

(7)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건립위치	부지면적 (㎡)	동수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	비고
가재울 4구역내	-	-	726세대(전체 16.88%)	(96.80%)	40㎡이하	
			16세대(전체 0.37%)	(2.13%)	40㎡~50㎡이하	
			8세대(전체 0.19%)	(1.07%)	50㎡~60㎡이하	
			전체 : 750세대(17.44%)		-	

마. 가재울5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바. 가재울6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사.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아. 가재울8 재정비촉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 변경없음

17)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변경)

가.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명칭	유형	위치	면적(㎡)	비고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서대문구 남가좌동·북가좌동 일대	1,077,769.39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계		1,077,769.39	100.0	
주거지역	소계	1,051,329.39	97.5	
	제1종일반주거지역	21,439.00	2.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39,120.80	12.9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406,518.84	37.7	
	제3종일반주거지역	441,817.35	41.0	
	준주거지역	42,433.40	3.9	
상업지역	소계	26,440.00	2.5	
	중심상업지역	-	-	
	일반상업지역	26,440.00	2.5	
	근린상업지역	-	-	
	유통상업지역	-	-	

다.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분	지구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미관지구	서대문구 남가좌동·북가좌동 일대	54,900	-

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기정	가재울 지구단위계획구역	서대문구 남가좌동104, 105번지 일대	58,318.0	서고제1997-25호 (1997.2.5)

마.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변경)

시 설 명		개소	규모	위치	비고
도로	대로3류	1	폭 : 25m, 연장 : 444m	성산동2-20~홍은동3-17	가재울 재정비 촉진 지구내
	중로1류	2	폭 : 20~27m, 연장 : 2,293m	모래내~응암로	
	중로2류	6	폭 : 15m, 연장 : 2,631m	수색로~북가좌동115-103	
	중로3류	1	폭 : 12~12.5m, 연장 : 380m	중로2류5~수색로	
	소로1류	1	폭 : 10~13m, 연장 : 158m	중로1류-1~남가좌동377-5	
	소로2류	10	폭 : 7~14m, 연장 : 1,649m	남가좌동152-58~남가좌동152-59	
	기정 변경	소로3류 6	폭 : 4~6m, 연장 : 362m 폭 : 4~6m, 연장 : 357m	중로1류-3~소로2류-7	
공원 · 녹지	근린공원	1	15,421.2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어린이공원	6	34,596.8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가재울4구역)	
	소공원	1	1,049.0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가재울4구역)	
	경관녹지	6	5,987.1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가재울4구역)	
	완충녹지	4	7,352.6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학교	초등학교	2	18,605.0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중학교	1	7,256.1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고등학교	1	7,488.6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 시설	공공청사복합화 (동사무소)	2	1,939.7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지역아동센터 및 노유자시설	1	1,030.0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가재울4구역)	
	도서관	1	3,486.8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3	2,200.0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정 변경	공공공지 2 3	1,386.40㎡ 1,412.15㎡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가재울4구역)	

○ 변경 사유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도로(소로3-11)	도로연장 5m 감소	인접 공동주택의 보행로 확보

(1) 교통시설 (변경)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변경)

구분	등급	구 모 류별	번호	폭원(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대로	3	1	25	보조간선 도로	444	성산동 2-20	홍은동 3-17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1	1	20~26	보조간선 도로	1,313	남가좌동 105-47	북가좌동 362-7	일반도로	-	서고2007-74 (2007.3.22)	
기정	중로	1	2	20~27	집산도로	1,207	수색로	남가좌동 352-27	일반도로	-	서고2007-74 (2007.3.22)	
기정	중로	1	62	20	집산도로	2,750 (115)	연희동 3-17	신사동	일반도로	-	건고2493 (96.6.21)	
기정	중로	2	1	20~21	집산도로	401	모래내길	남가좌동 275-32	일반도로	-	서고2007-102 (2007.4.12)	
기정	중로	2	4	15	집산도로	77	수색로	중로(뉴) (2류-2)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2	5	21	집산도로	706	남가좌동 275-43	북가좌동 421	일반도로	-	서고2007-74 (2007.3.22)	
기정	중로	2	6	15	집산도로	521	북가좌동 108-1	북가좌동 82-1	일반도로	-	서고2005-243 (2005.8.11)	
기정	중로	2	7	15	집산도로	160	남가좌동 169-2	남가좌동 235-345	일반도로	-	서고2008-374 (2008.10.23)	
기정	중로	3	1	12	국지도로	240	북가좌동 144-53	북가좌동 149-23	일반도로	-	서고2007-74 (2007.3.22)	
기정	중로	3	1	12~12.5	집산도로	435 (38)	남가좌동 268-33	남가좌동 142-2	일반도로	-	서고2007-102 (2007.4.12)	
기정	중로	3	2	12	집산도로	216 (43)	남가좌동 293-94	남가좌동 288-8	일반도로	-	서고2007-102 (2007.4.12)	
기정	소로	1	1	10~13	국지도로	128 (105)	남가좌동 268-3	남가좌동 288-4	일반도로	-	서고2007-102 (2007.4.12)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171 (14)	남가좌동 152-59	남가좌동 152-58	일반도로	-	서고2007-102 (2007.4.12)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199	남가좌동 267-1	남가좌동 산33-2	일반도로	-	서고2007-74 (2007.3.22)	
기정	소로	2	4	10	국지도로	150	남가좌동 256-21	남가좌동 260-410	일반도로	-	서고2007-102 (2007.4.12)	
기정	소로	2	5	11	집산도로	118	남가좌동 164-12	남가좌동 155-45	일반도로	-	서고2007-102 (2007.4.12)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191	북가좌동 75-89	북가좌동 361-9	일반도로	-	서고3 (69.1.18)	
기정	소로	2	7	8	국지도로	194	북가좌동 417	북가좌동 418	일반도로	-	서고2007-74 (2007.3.22)	
기정	소로	2	8	8	국지도로	280	중로(뉴) (1류-3)	북가좌동 362-2도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9	8	국지도로	36	남가좌동 262-241	남가좌동 262-449	일반도로	-	서고2007-74 (2007.3.22)	
기정	소로	2		8	국지도로	288	북가좌동 304-37	북가좌동 301-2	일반도로	-	서고2012-144 (2012.6.7)	
기정	소로	3	245	6~8	국지도로	138	남가좌동 188	남가좌동 214-2	일반도로	-	서고3 (69.1.18)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142	중로(뉴) (1류-3)	소로(뉴) (2류-7)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40	북가좌동 362-2도	응암로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4	6	국지도로	84	남가좌동 115-60	남가좌동 137-5	일반도로	-	서고2007-102 (2007.4.12)	
기정	소로	3		6	국지도로	73	북가좌동 100-336	북가좌동 303-40	일반도로	-	서고3 (69.1.18)	
기정 변경	소로	3	11	4	국지도로	15 10	남가좌동 76-19	남가좌동 116-4	일반도로	-	서고2015-305 (2015.10.1)	-
기정	소로	3	12	4	국지도로	19	남가좌동 124-607	남가좌동 124-609	일반도로	-	서고2015-305 (2015.10.1)	-

※ ()안의 사항은 가재울4구역내 사항임.

(2) 공간시설(변경없음)

가)공원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공원	근린공원	북가좌동 105-8 일원	15,421.20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 : 10,357.2㎡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 5,064.0㎡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 중복결정 5,064.0㎡)
기정	공원	어린이공원	남가좌동 175-5 일원	10,500.30	가재울2 재정비촉진구역 : 114.0㎡ 가재울5 재정비촉진구역 : 2,987.8㎡ 가재울6 재정비촉진구역 : 5,854.7㎡ 존치구역(삼성APT기부채납) : 1,543.8㎡
기정	공원	어린이공원	북가좌동 168-32 일원	6,652.80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기정	공원	어린이공원	남가좌동 379-3 일원	1,175.50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 : 274.6㎡ 삼성레미안APT(존치) : 900.9㎡
기정	공원	어린이공원	남가좌동 123 일원	9,385.00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기정	공원	어린이공원	북가좌동 75-126 일원	5,240.00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기정	공원	어린이공원	남가좌동 274-26 일원	1,643.20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기정	공원	소공원	남가좌동 152-19 일원	1,049.00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나) 녹지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녹지	완충녹지	북가좌동 149-60 일대	4,480.60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기정	녹지	완충녹지	남가좌동 124-215 일대	1,346.00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기정	녹지	완충녹지	남가좌동 115-34 일대	418.00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기정	녹지	완충녹지	남가좌동 76-145 일대	1,108.00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기정	녹지	경관녹지	북가좌동 362-3 일대	1,318.30	존치구역 : 1,318.3㎡
기정	녹지	경관녹지	북가좌동 100-45 일대	1,221.90	가재울1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기정	녹지	경관녹지	남가좌동 237-250 일대	681.40	가재울2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기정	녹지	경관녹지	남가좌동 241-49 일대	374.00	가재울2 재정비촉진구역 : 308㎡ 가재울5 재정비촉진구역 : 66㎡
기정	녹지	경관녹지	남가좌동 380-1 일대	936.00	가재울5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기정	녹지	경관녹지	북가좌동 74-3 일대	1,455.00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다)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변경)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공공공지	공공공지1	남가좌동378 일원	1,056.40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공공공지2	남가좌동378 일원	330.00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신설		공공공지3	남가좌동116-4일원	25.75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가) 학교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학교	초등학교	북가좌동 80-110 일원	7,438.00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기정	학교	초등학교	남가좌동 164-1 일원	11,167.00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기정	학교	중학교	북가좌동 145-106 일원	7,256.10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기정	학교	고등학교	북가좌동 144-706 일원	7,488.60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나)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공공청사	동사무소	북가좌동 144-343 일원	1,004.70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기정	공공청사	동사무소	남가좌동 119-17 일원	935.00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기정	공공청사	지역아동센터 및 노유자시설	남가좌동 130-10 일원	1,030.00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다) 도서관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도서관	공공도서관	북가좌동 119-3 일원	3,486.80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라)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복지시설	-	남가좌동 138-3잡 일원	1,601.00	동방사회복지회
기정	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남가좌동 184-6 일원	599.00	가재울5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기정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남가좌동 289-54 일원	-	가재울8구역 건축물내 공공시설(기부채납) - 용도 : 어린이집 - 면적 : 500㎡이상(전용면적+공용면적)

(4) 환경기초시설 (변경없음)

가)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폐기물 처리시설	중간 처분시설	북가좌동 115-97 일원	5,064.0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근린공원 지하에 중복결정

5. 지형도면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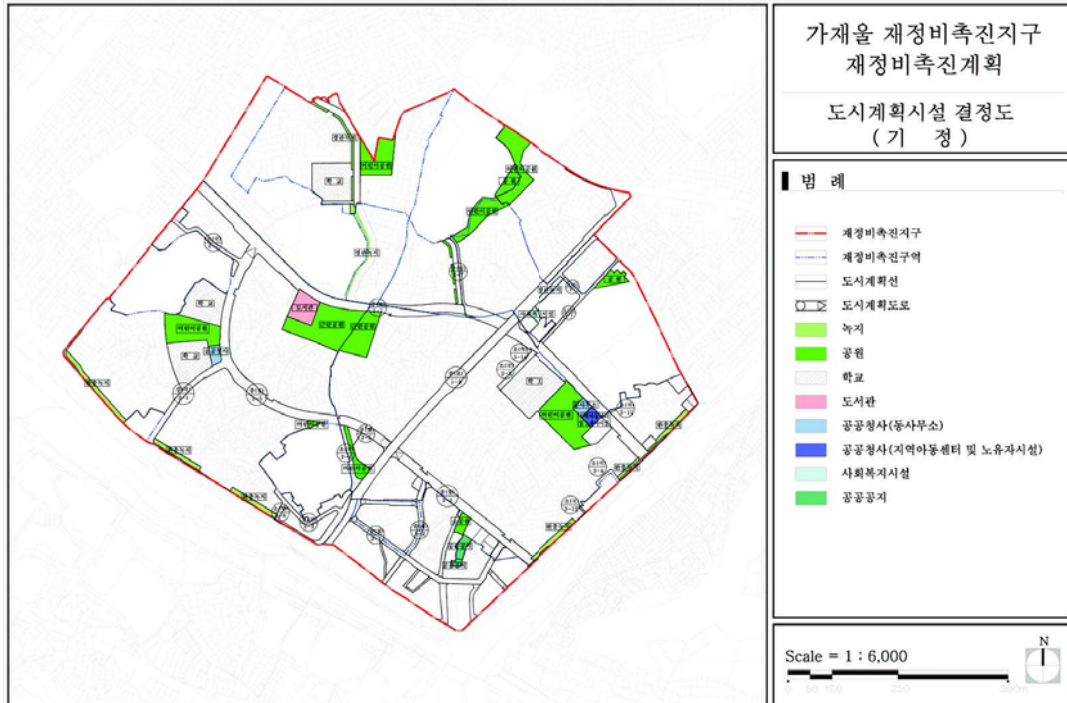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관계 도서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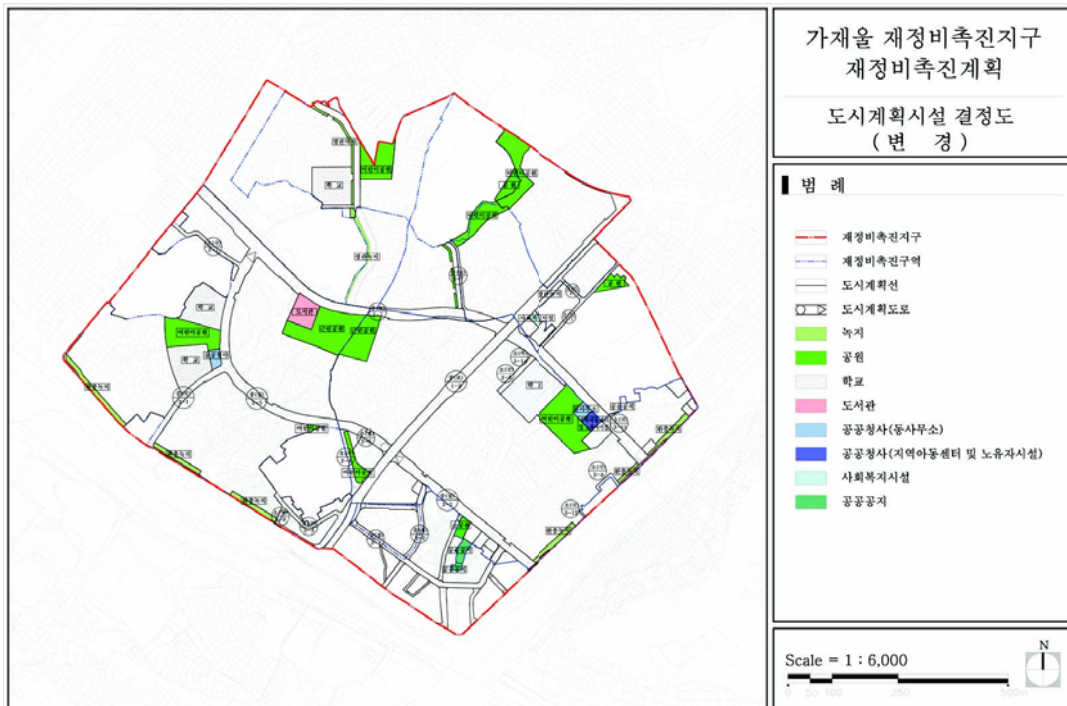
6. 관계서류

○ 고시 관련 세부내용은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2133-7227) 및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330-1633)에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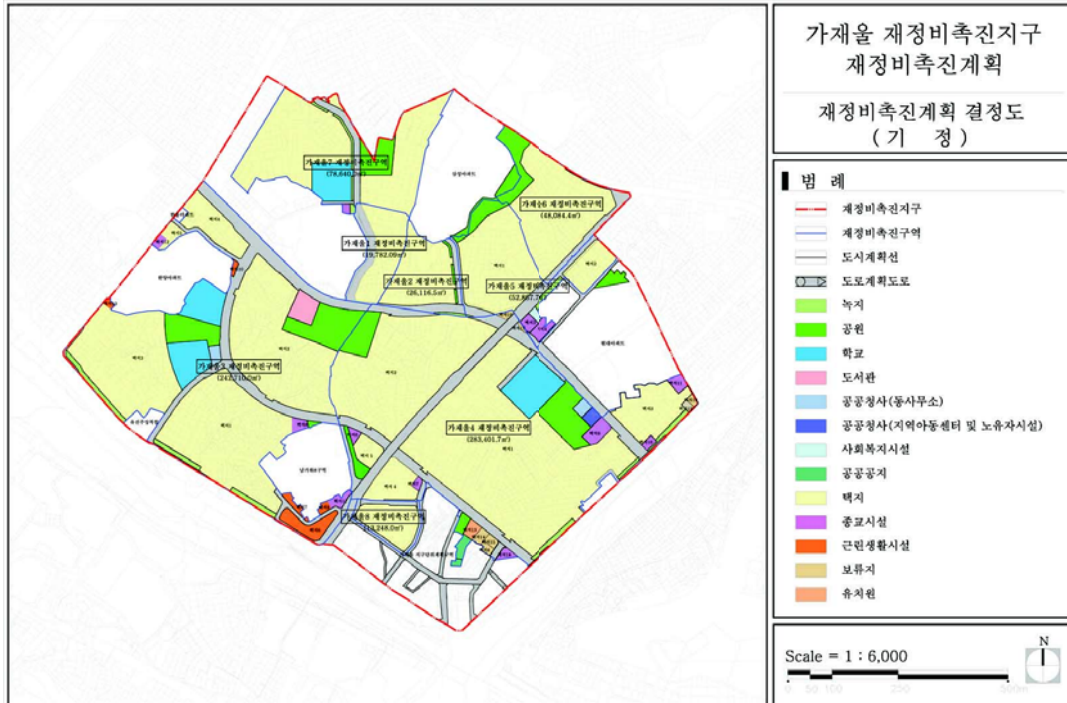
■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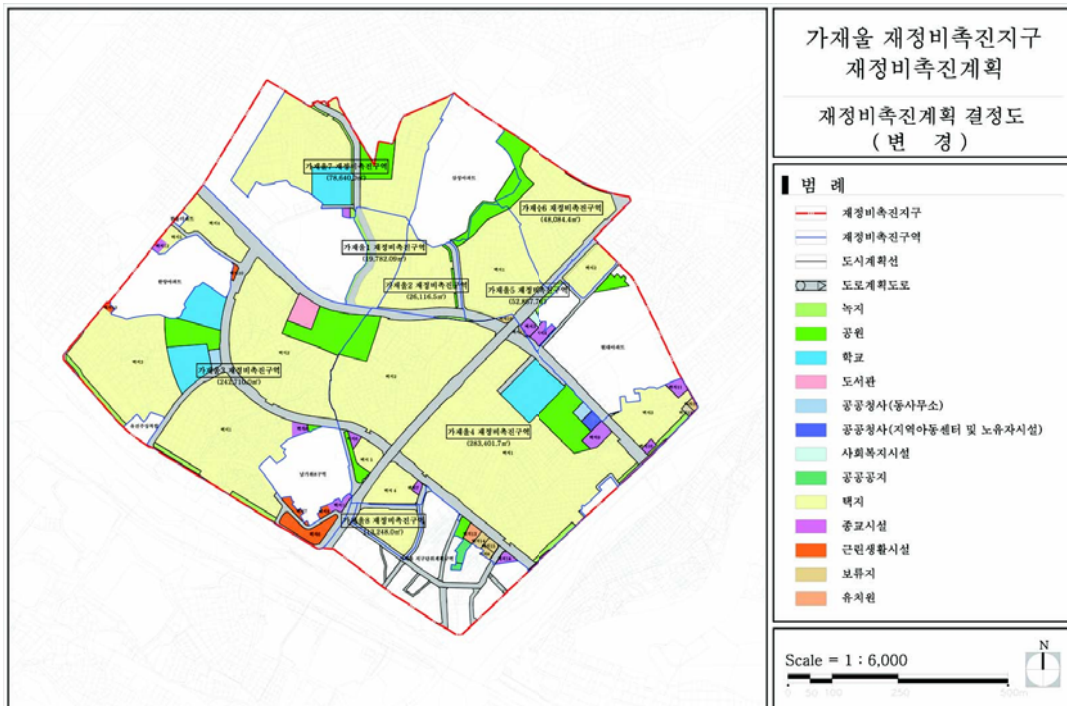
■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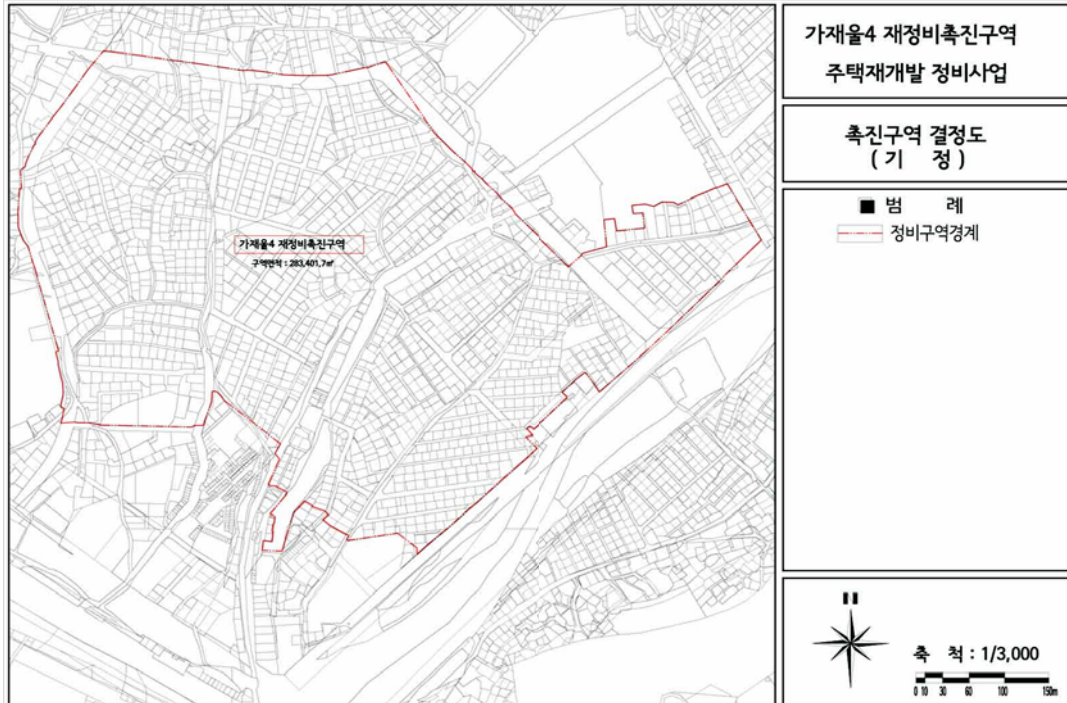
■ 가재울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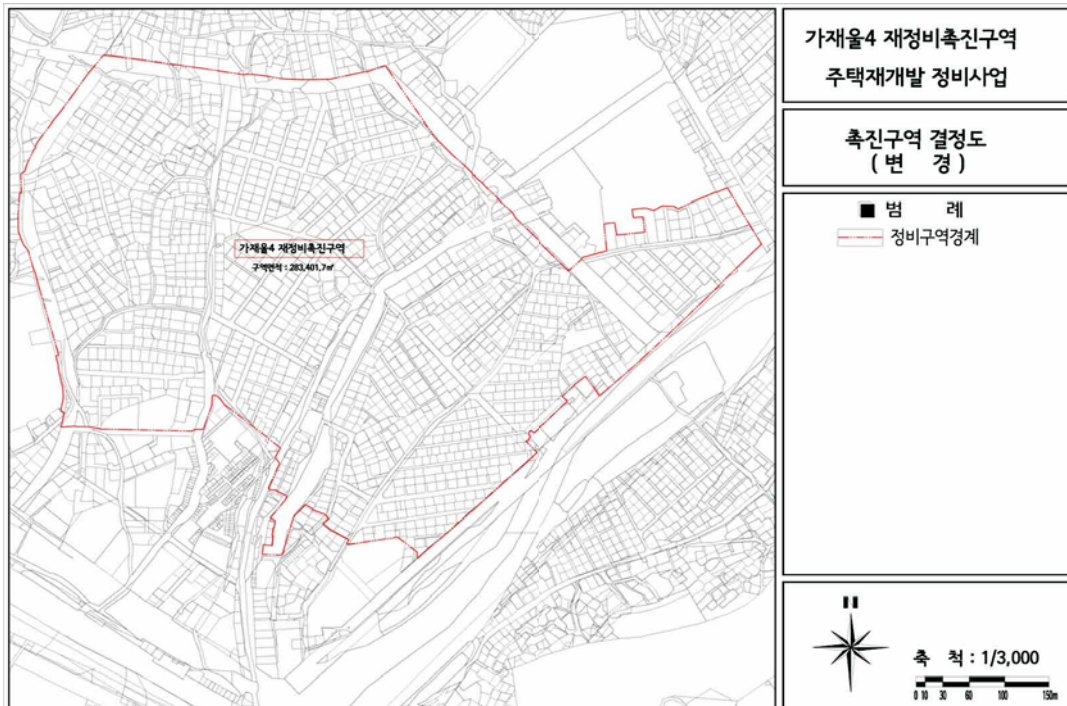
■ 가재울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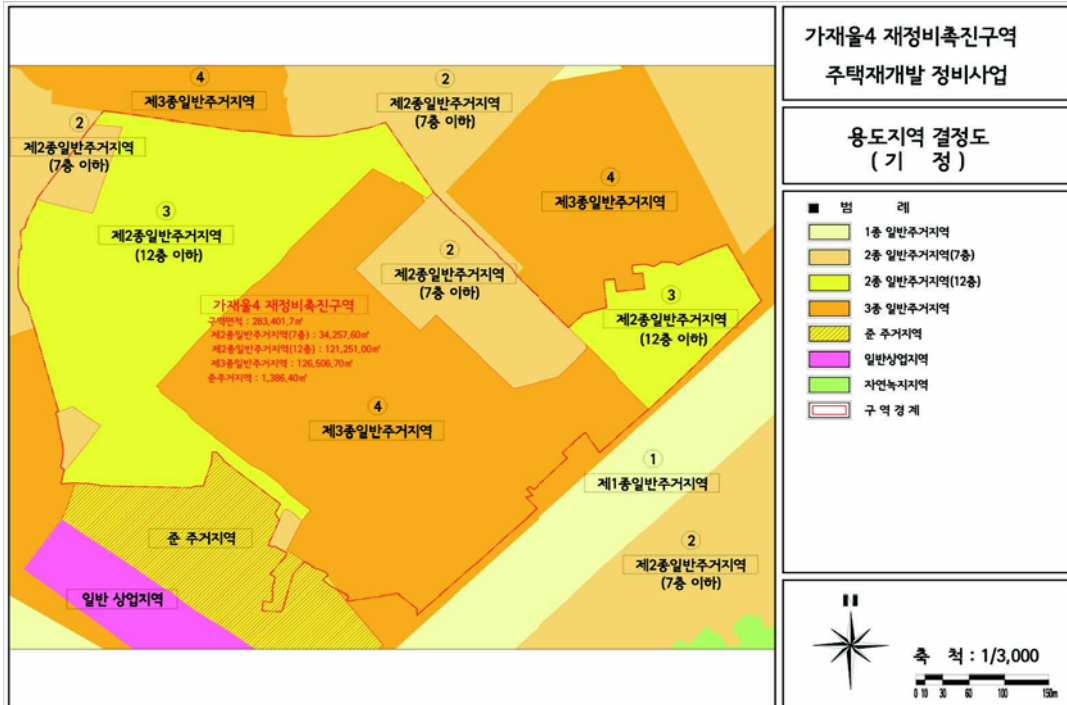
■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촉진구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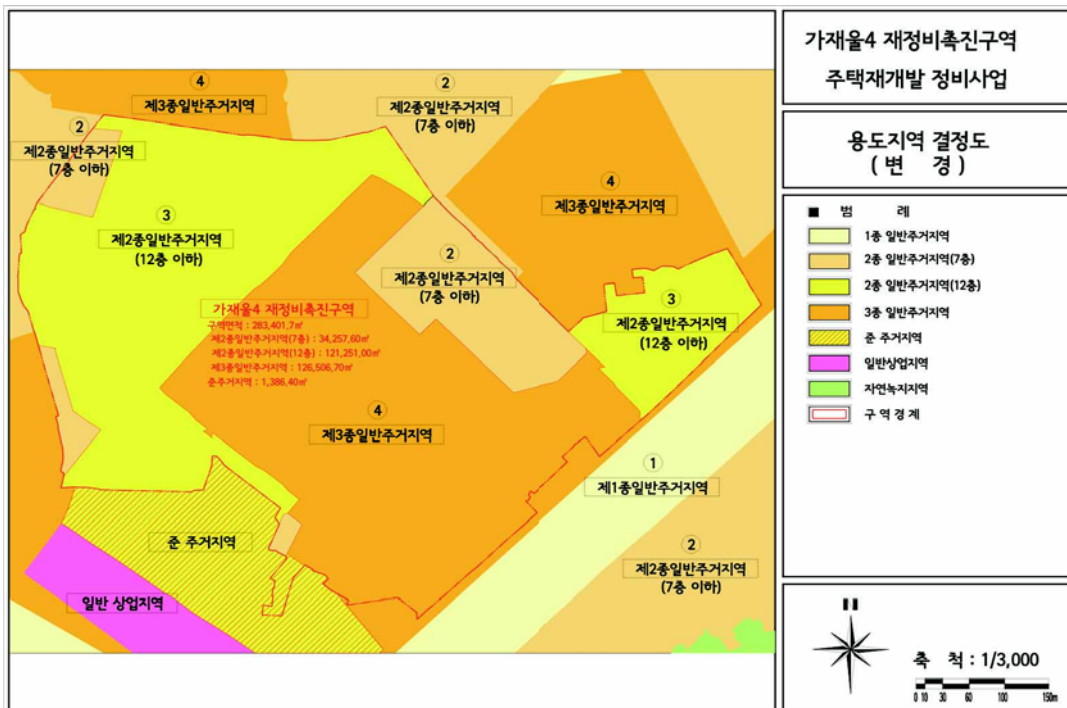
■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촉진구역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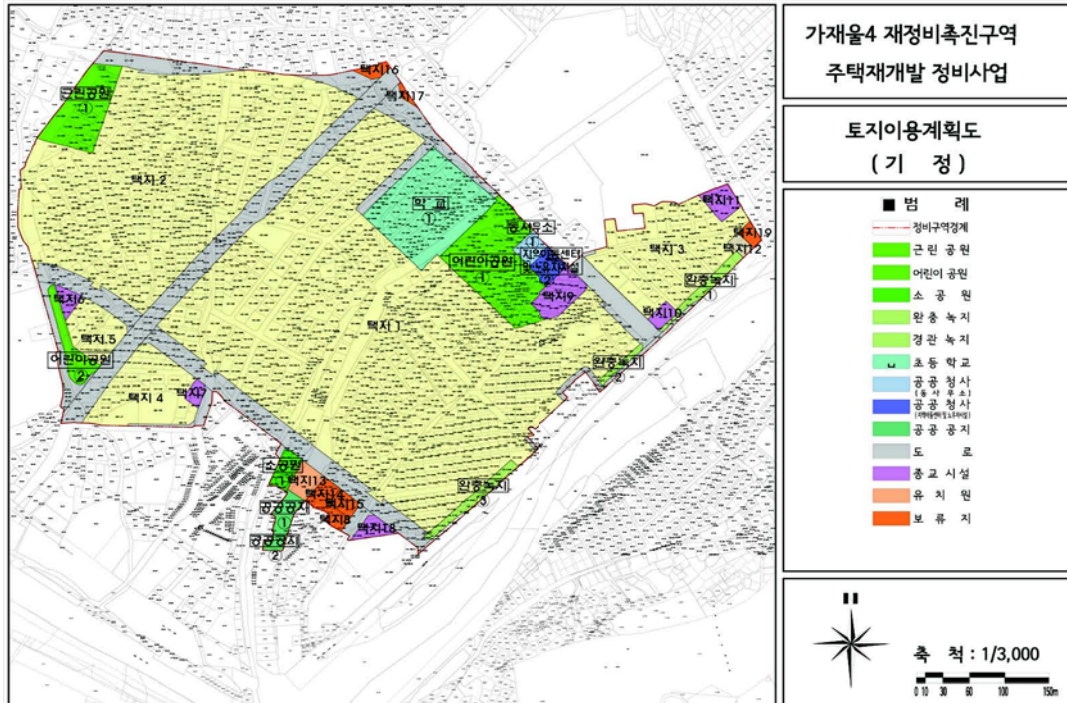
■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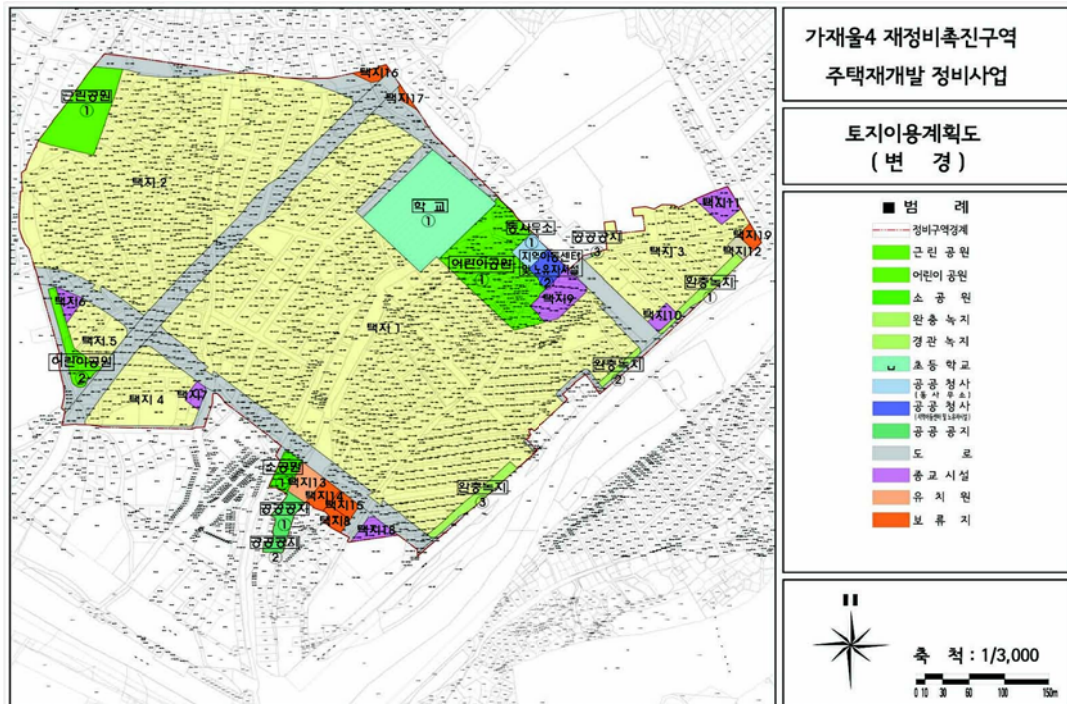
■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용도지역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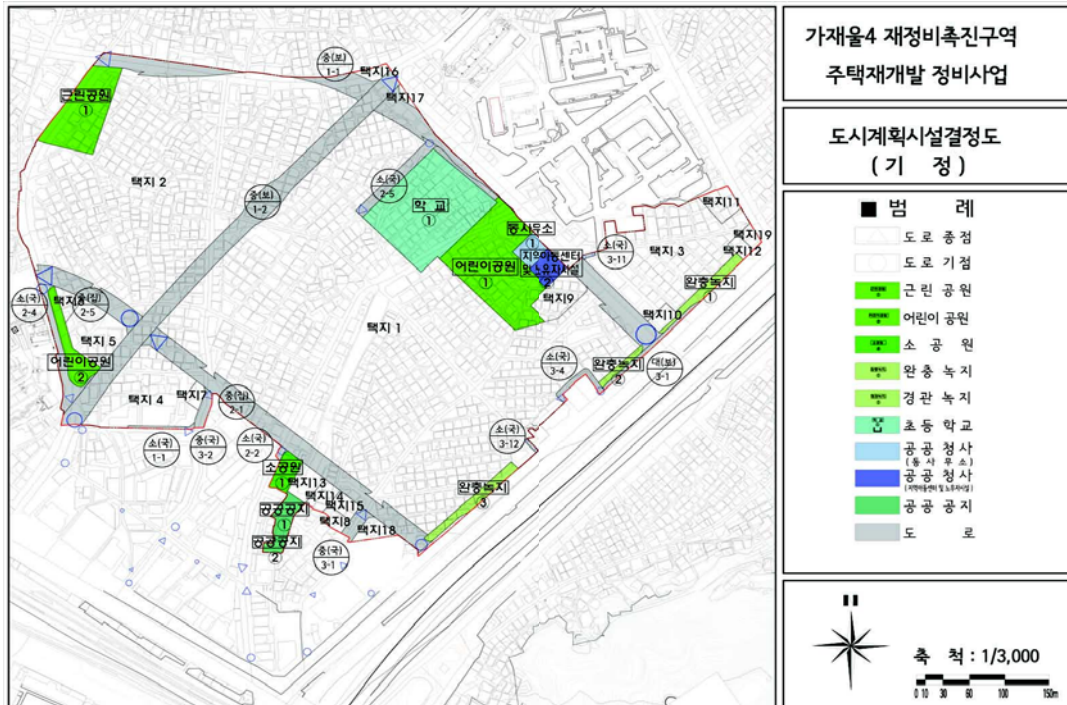
■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토지이용계획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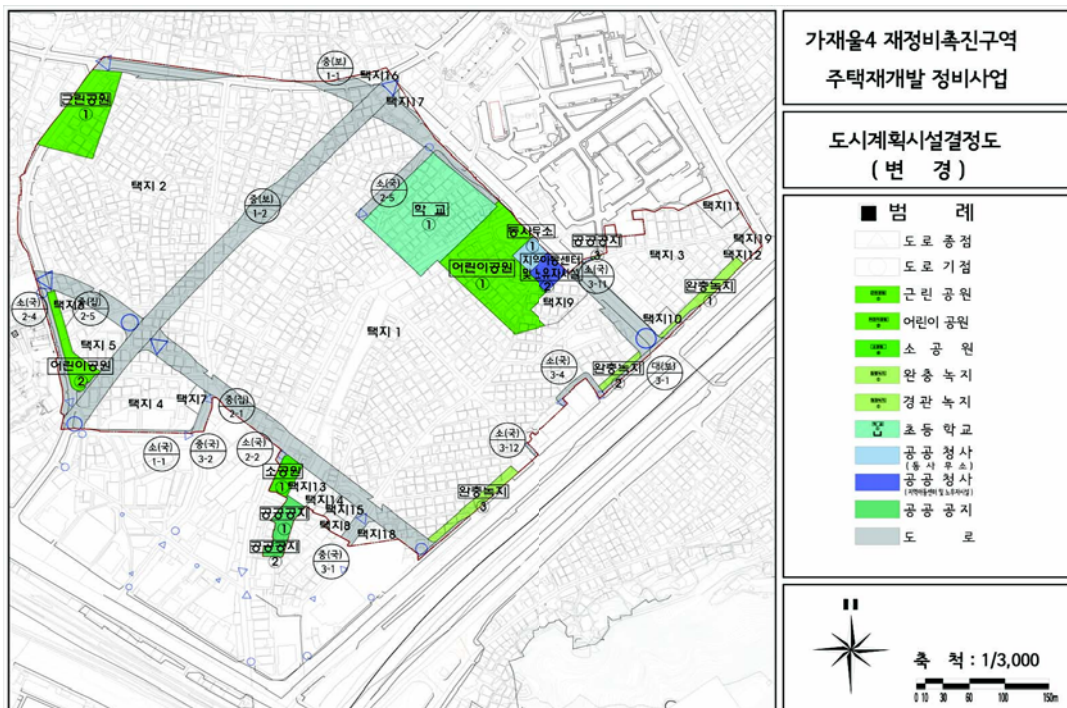
■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토지이용계획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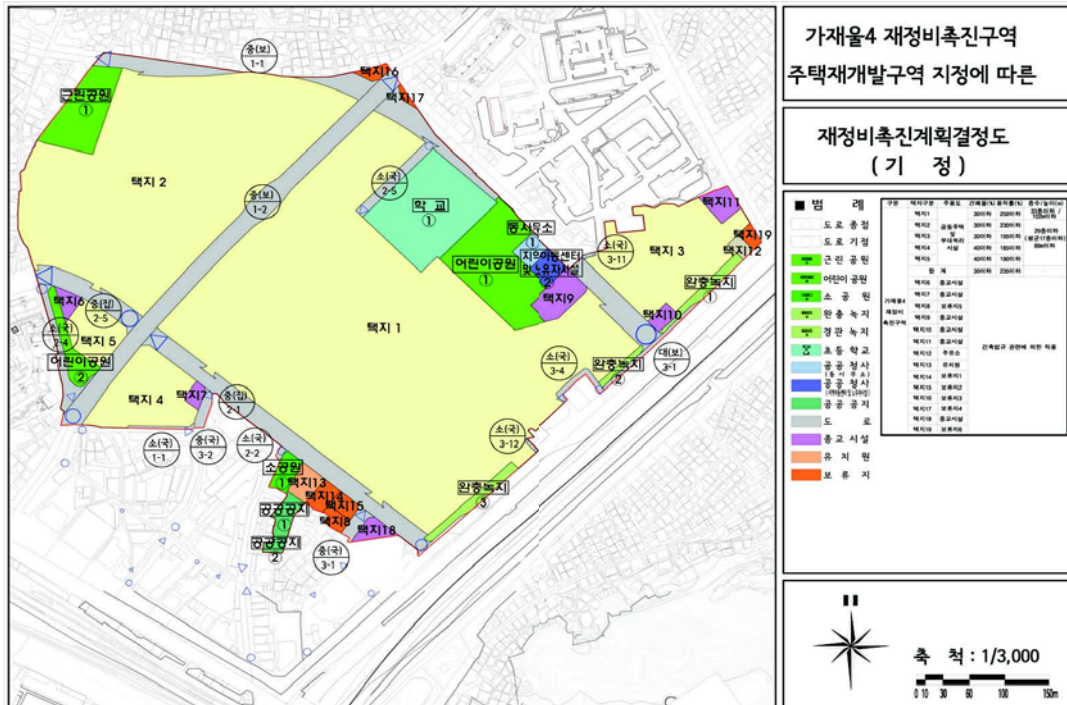
■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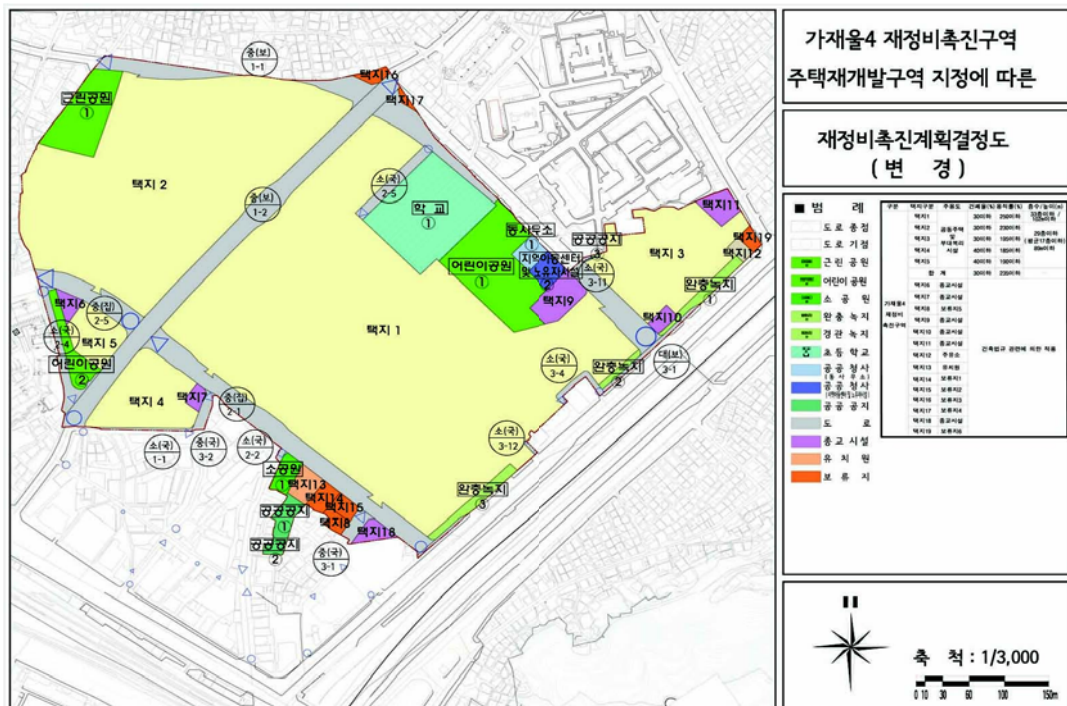
■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 가재울4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기정)



■ 가재울4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56호

수락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7.9)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172호(2002.5.10)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수락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수락산도시자연공원(당고개지구)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산림 내 산재된 부적합 배드민턴장을 정비하고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실내배드민턴장을 건립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체육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51-1번지 일대

3. 면 적 : 6,692,795㎡(당고개지구 48,668㎡)

4.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2133-2070) 및 노원구 공원녹지과(☎2116-3943)에서 관련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수락산도지사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공 원 시 설 구 별	계	6,692,795	53,336	1	365	365		6,692,795	54,657	2	1,627	1,915	143	중)1,321㎡	
	소	606,268	53,336		365	365		606,268	54,657	2	1,627	1,915	143	중)1,321㎡	
	수락계곡지구	342,860	8,941		126	126		342,860	8,941		126	126			
	노원골지구	83,250	9,144		22	22		83,250	9,144		22	22			
	동막골지구	131,490	25,472		168	168		131,490	25,472		168	168			
	당고개지구	48,668	9,779	1	49	49	129	48,668	11,100	2	1,311	1,599	143	중)1,321㎡	
시 설 지 구 외		6,086,527						6,086,527							
시 설 지 구 울 (법정 20%이하)							(606,268/6,692,795) * 100 = 9.05%					(606,268/6,692,795) * 100 = 9.05%			
시 설 울 (법정 20%)							(53,336/6,692,795) * 100 = 0.79%					(54,657/6,692,795) * 100 = 0.81%			
건 폐 울 (법정 4%)							(365/6,692,795) * 100 = 0.01%					(1,627/6,692,795) * 100 = 0.02%			

■ 당고개지구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13번지 일대
가. 총괄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공작물 (기)								
				동수(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기본 시설	계	48,668	9,779	1	49	49	129	48,668	11,100	2	1,311	1,599	143	중)1,321㎡							
	소 계	4,656	4,656					5,682	5,682					중)1,026㎡							
	도 로	1,320	1,320					1,706	1,706					중)386㎡							
	광 장	3,336	3,336					3,976	3,976					중)640㎡							
조 경 시 설		480	480				6	480	480				6								
휴 양 시 설							38						53								
유 회 시 설		726	726				4	726	726				4								
운 동 시 설		3,457	3,457				12	3,752	3,752	1	1,262	1,550	11	중)295㎡							
교 양 시 설		346	346					346	346												
편 익 시 설																					
관 리 시 설		114	114	1	49	49	69	114	114	1	49	49	69								
녹지 및 기타		38,889						37,568						합)1,321㎡							
시 설 율 (법정 40%)		(9,779/48,668) * 100 = 20.09%						(11,100/48,668) * 100 = 22.80%													
건 폐 율 (법정 10%)		(49/48,668) * 100 = 0.1%						(1,311/48,668) * 100 = 2.69%													

나. 시설조서

구	분	변경			전경			변경			후경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기반 시설	합계			48,668	9,779			49	49	129				48,668	11,100			1,311	1,599	143	증)1,321㎡	
	소계			4,656	4,656									5,682	5,682						증)1,026㎡	
	도로			1,320	1,320									1,706	1,706						증)386㎡	
	광장	가		3,336	3,336						가			3,976	3,976						증)640㎡	
		가-1	산152-30임 114전	(2,581)	(2,581)							가-1	산151-1공	(2,581)	(2,581)							
		가-2	산152-30임	(198)	(198)							가-2	산151-1공	(198)	(198)							
		가-3	산152-30임 114전	(252)	(252)							가-3	산151-1공	(252)	(252)							
조경 시설	가-4	산152-30임	(206)	(206)							가-4	산151-1공	(206)	(206)								
	가-5	산152-30임	(85)	(85)							가-5	산151-1공	(85)	(85)								
	가-6	산152-30임	(14)	(14)							가-6	산151-1공	(14)	(14)								
											가-7	산151-1공	(302)	(302)							신설	
휴양 시설	소계			480	480					6			480	480							6	신설
	소복포	나	산152-30임	66	66						나	산151-1공	66	66								신설
	연못	다	산152-30임 113전	223	223						다	산151-1공 113전	223	223								신설
	장외자	①	산152-30임 113전	33	33					(5)	①	산151-1공	33	33							(5)	
	조형파고라	②	산152-30임	158	158					(1)	②	산151-1공	158	158							(1)	
	소계									38											53	
	평의자	③	산152-30임							(8)	③	산151-1공									(17)	목재
등의자	④	산152-30임 114전							(30)	④	산151-1공 114전									(30)		
없음	파고라										㉑	산151-1공									(1)	목재
	사각의자										㉒	산151-1공									(4)	목재
	앞음벽										㉓	산151-1공									(1)	목재

구분	부호	위치	변경			전			부호	위치	변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비대면적 연면적 (㎡)	건축물 (기)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비대면적 연면적 (㎡)	건축물 (기)	공작물 (기)	
유형 시설	소계			726				4				726				4	
	라			726					라			726					
	라-1	산152-30임		(116)					라-1	산151-1공		(116)					
	라-2	산152-30임 113전		(220)					라-2	산151-1공 113전		(220)					
	라-3	산152-30임 113전		(390)					라-3	산151-1공 113전		(390)					
	⑤	산152-30임						(1)	⑤	산151-1공						(1)	
	⑥	산152-30임 113전						(1)	⑥	산151-1공 113전						(1)	
	⑦	113전						(1)	⑦	산151-1공 113전						(1)	
	⑧	산152-30임 113전						(1)	⑧	산151-1공 113전						(1)	
	계		3,457	3,457				12			3,752	3,752		1,262	1,550	11	증) 295㎡ 감) 920㎡
통용 시설	배드민턴장	마	산152-30임 114전	1,520					마	산151-1공		600					
	인공암벽	바	산152-30임	925				(2)	바	산151-1공		925				(2)	
	농구장	사	산152-30임	737					사	산151-1공		737					감) 47㎡
		아		275					아			228					
		아-1	산152-30임	(16)													
		아-2	산152-30임 115-3전	(31)													
	체력단련장	아-3	산152-30임	(61)					아-3	산151-1공		(61)					
		아-4	산152-30임	(55)					아-4	산151-1공		(55)					
		아-5	산152-30임	(53)					아-5	산151-1공		(53)					
		아-6	산152-30임	(59)					아-6	산151-1공		(59)					
	관형대	⑨	산152-30임					(3)	⑨	산151-1공						(3)	
	윗몸일으키기	⑩	산152-30임					(2)	⑩	산151-1공						(2)	
	철봉	⑪	산152-30임					(1)	⑪	산151-1공						(1)	
	평행봉	⑫	산152-30임					(1)	⑫	산151-1공						(1)	
	링체조	⑬	산152-30임					(1)	⑬	산151-1공						(1)	
	레더	⑭	산152-30임					(1)	⑭	산151-1공						(1)	
	팔굽혀펴기	⑮	산152-30임					(1)									폐지
	실내 배드민턴장								2	산151-1공		1,262	철골조 지상 2층	(1,262)	(1,550)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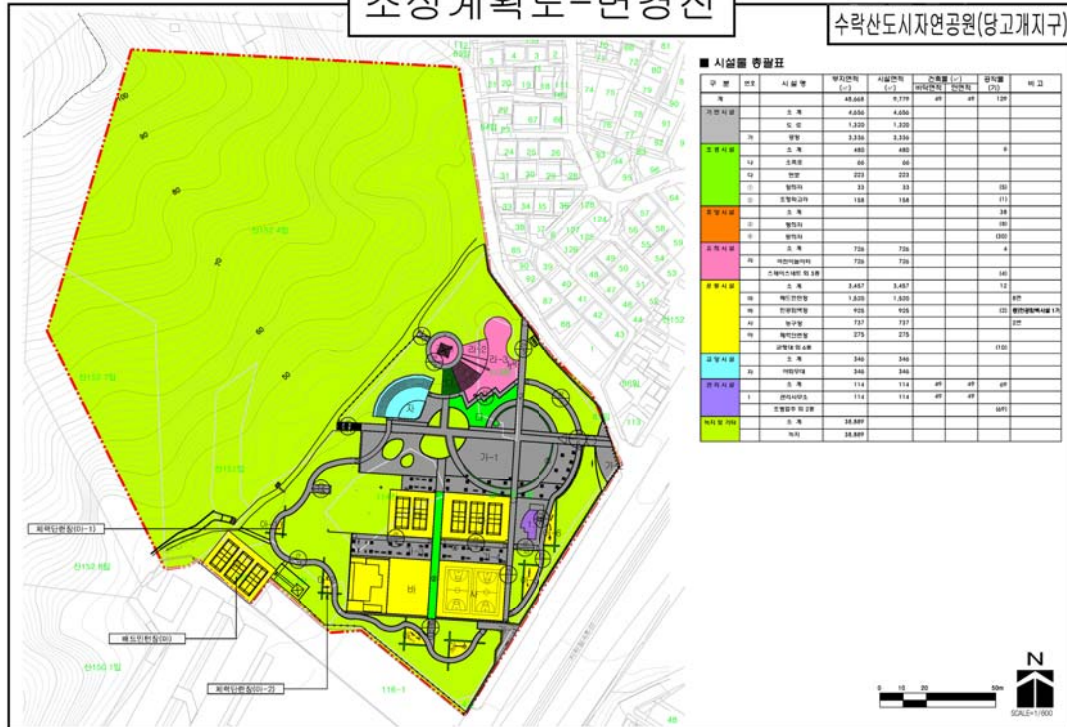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 연면적	공작물 (기)
교양 시설	계			346	346							346	346						
	아와무대	자	산152-30임	346	346						자	산151-1공	346	346					
관리 시설	소계			114	114			49	49	69			114	114			49	49	69
	관리사무소	1	산152-30임	114	114			49	49		1	산151-1공	114	114			49	49	
	조명열주	⑩	산152-30임							(24)	⑩	산151-1공							(24)
	공원등	⑪	산152-30임 114전							(44)	⑪	산151-1공							(44)
	종합안내도	⑫	산152-30임							(1)	⑫	산151-1공							(1)
녹지 및 기타	소계			38,889									37,568						감)1,321㎡
	녹지		전지역	38,889								전지역	37,568						감)1,321㎡

다.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2)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계				620	1,320				
변경					726	1,706				
당초	산책로	계			620	1,320				
변경					726	1,706				
당초	산책로	1	1.8	4	7	시설연결로	산책로 19	산책로2		
당초	산책로	2	1.8	45	81	"	산책로2	산책로2		
당초	산책로	3	2.5	34	85	"	112-91	중심광장 가-1		
당초	산책로	4	1.5	50	75	"	산책로3	야외무대		
당초	산책로	5	2.0	37	74	산책로	산책로6	산책로3		
당초	산책로	6	4.8	15	72	시설연결로	진입광장 가-2	중심광장 가-1		
당초	산책로	7	2.0	81	162	산책로	산책로6	산책로11		
당초	산책로	8	2.0	36	72	시설연결로	114전	조형파고라		
당초	산책로	9	2.0	29	58	"	조형파고라	산책로11		
당초	산책로	10	2.0	12	24	"	산책로11	산책로7		
당초	산책로	11	2.5	54	135	"	중심광장 가-1	진입광장 가-5		
당초	산책로	12	2.0	195	392	산책로	진입광장 가-5	중심광장 가-1		
변경	산책로	12	2.5	99	236	산책로	진입광장 가-5	광장 가-7		
당초	산책로	13	3.0	12	36	시설연결로	산책로 12	조형파고라		
당초	산책로	14	3.0	6	18	"	산책로 19	중심광장 가-1		
당초	산책로	15	1.3	2	3	"	관리사무소	산책로7		
당초	산책로	16	3.3	8	26	"	배드민턴장	산책로12		
변경	산책로	16	2.5	41	103	산책로	광장 가-7	중심광장 가-1		
신설	산책로	17	2.5	9	21	산책로	산책로 18	산책로 16		
신설	산책로	18	3.2	116	370	산책로	산152-4임	산책로 19		
신설	산책로	19	1.7	44	74	산책로	산152-4임	산책로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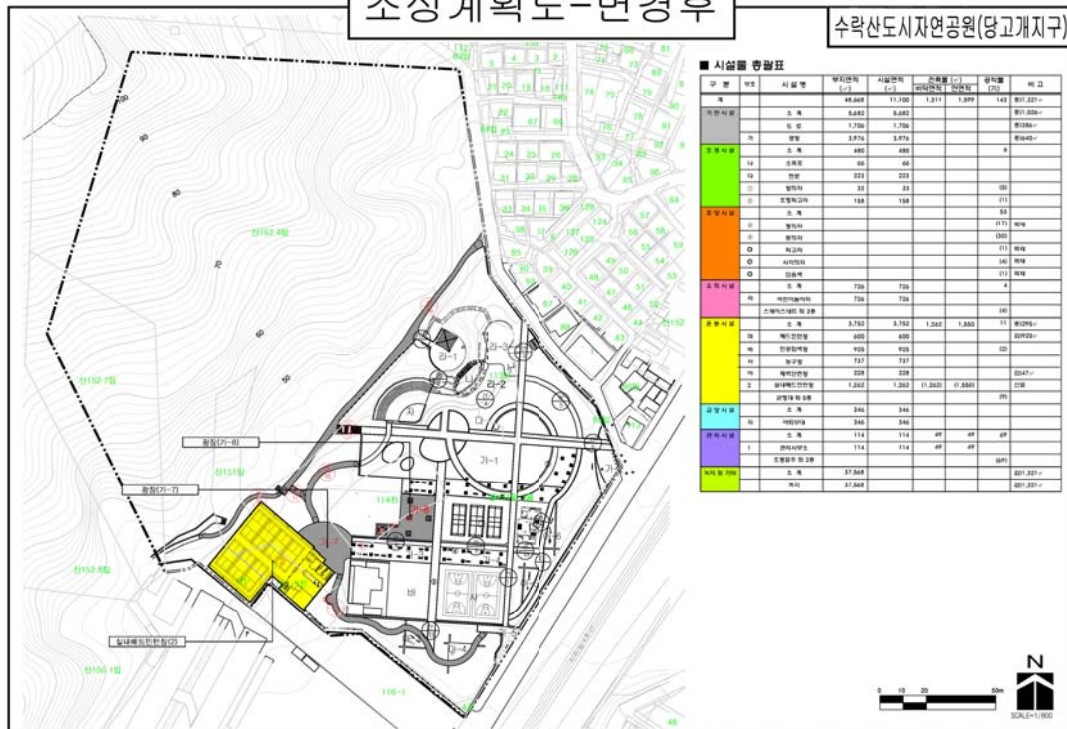
조성계획도-변경전

수락산도시자연공원(당고개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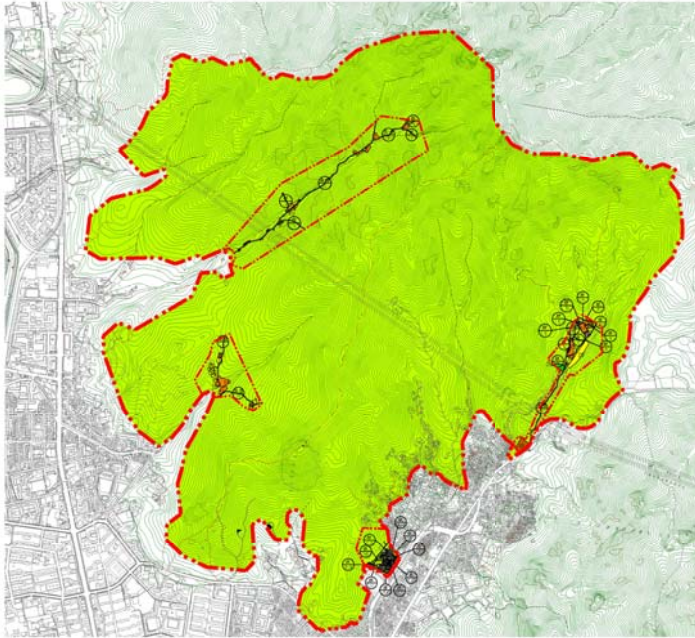
조성계획도-변경후

수락산도시자연공원(당고개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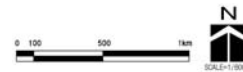


조성계획도-변경전

수락산도시자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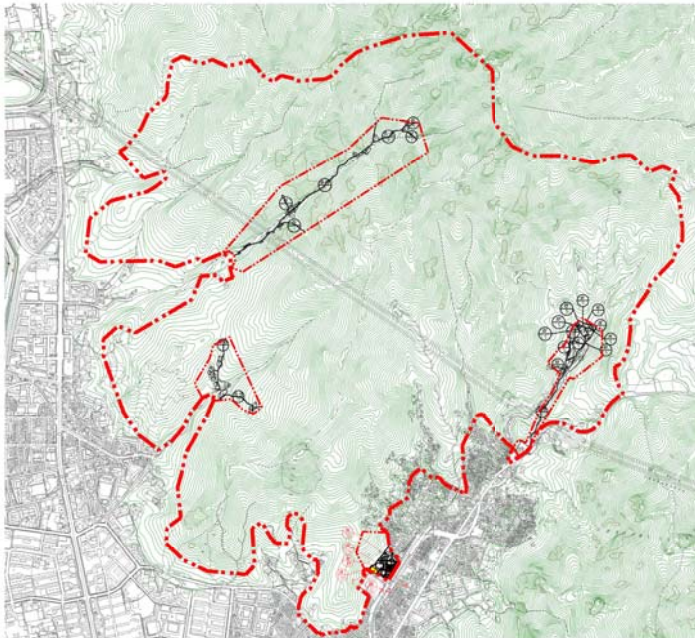


序 号		要 素 值					
		旱灾指数(x_1)	中灾指数(x_2)	总指数		等级	
				旱灾(x_3)	涝灾(x_4)		
旱灾指数	1	0.047,779	0.3,336	1	360	360	120
	2	0.06,336	0.3,336		360	360	
	3	0.06,336	0.3,336		360	360	
	4	0.06,336	0.3,336		360	360	
	5	0.06,336	0.3,336		360	360	
	6	0.06,336	0.3,336		360	360	
	7	0.06,336	0.3,336		360	360	
	8	0.06,336	0.3,336		360	360	
	9	0.06,336	0.3,336		360	360	
	10	0.06,336	0.3,336		360	360	
旱灾指数(平均)		0.06,336	0.3,336	1	400	400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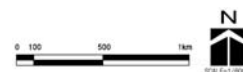


조성계획도-변경후

수락산도시자연공원



序 号		测 量 数 据					
		平均测速 v_1	向应测速 v_2	时 间			测速时间 t_3
				测速时间 t_1	测速时间 t_2	测速时间 t_3	
1	测 速	6.872,775	34.637	2	1627	1913	145
2	主 测	656.268	34.637		1627	1913	
3	平均测速 v_1	342.860	8.941		126	126	
4	主测测速 v_2	83.250	9.344		22	22	
5	测速测速 v_3	131.490	25.472		168	168	
6	测速测速 v_4	68.668	11.500	2	1311	1099	145
7	测速测速 v_5	6.896,637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57호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82호(2008.12.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68호(2009.11.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45호(2011.2.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92호(2011.4.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39호(2012.5.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50호(2013.10.17.)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400호(2015.12.17.)등으로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천호4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천호·성내재정비촉진계획(천호4재정비촉진구역)을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장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변경없음)

명칭	유형	위치	면적(㎡)			지정목적
			기정	증감	변경	
천호·성내 재정비 촉진지구	중심지형	강동구 천호동 453번지 일대	275,505.5	-	275,505.5	도시정비체계 및 기반시설 재정비로 지역중심의 개발여건을 마련하고 상업·업무·문화기능 등의 복합 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환경의 적극적인 개선을 도모하고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나.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변경없음)

- 기준연도 : 2006년
- 목표연도 : 2020년

다.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2015.12.)」 참조

2)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

구 분			기존 세대수	계획세대수				인구수
				소계	일반분양	임대주택	기존세대	
합계		기정	2,851	3,474	1,300	47	2,127	8,580
		변경	2,851	3,593	1,295	171	-	8,878
재정 비축 지구 구역	천호1	기정	-	-	-	-	-	-
	천호2	기정	-	-	-	-	-	-
	천호3	기정	48	116	116	-	-	290
	천호4	기정	360	551	504	47	-	1,378
		변경	360	670	499	171	-	1,675
	성내1	기정	44	180	180	-	-	450
	성내2	기정	-	-	-	-	-	-
	성내3	기정	76	160	160	-	-	400
	성내4	기정	-	-	-	-	-	-
	성내5	기정	-	144	144	-	-	360
	소계	기정	528	1,151	1,104	47	-	2,877
		변경	528	1,270	1,099	171	-	3,175
준치 정비 구역	천호1	기정	-	-	-	-	-	-
	천호2	기정	-	-	-	-	-	-
	천호3	기정	-	-	-	-	-	-
	천호4	기정	-	-	-	-	-	-
	천호5	기정	-	-	-	-	-	-
	천호7	기정	-	-	-	-	-	-
	천호8	기정	196	196	196	-	-	490
	천호9	기정	-	-	-	-	-	-
	성내3	기정	-	-	-	-	-	-
	소계	기정	196	196	196	-	-	490
준치관리구역		기정	2,127	2,127	-	-	2,127	5,213

3)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2015.12.)」 참조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존계획(변경없음)

-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2015.12.)」 참조

5) 교통계획(변경없음)

-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2015.12.)」 참조

6) 경관계획(변경없음)

-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2015.12.)」 참조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가) 정비예정구역(변경)

지구명	구역명	구분	위치	면적(㎡)	정비수법	비고
천호 성내 재정비 촉진 지구	천호1촉진구역	기정	천호동455-8번지일대	10,557	전면개발	-
	천호3촉진구역	기정	천호동409-3번지일대	5,227	전면개발	-
	천호4촉진구역	기정	천호동410-100번지일대	17,394.9	전면개발	착오에 따른 면적정정
		변경	천호동410-100번지일대	17,394.2	전면개발	
	성내1촉진구역	기정	성내동49-14번지일대	6,299	전면개발	-
	성내3촉진구역	기정	성내동48-6번지일대	6,729	전면개발	-
	성내5촉진구역	기정	성내동15번지일대	7,096	전면개발	-

※ 변경사유 : 천호4재정비촉진구역 단순 착오에 따른 면적정정 (17,394.9㎡→17,394.2㎡, 0.7㎡감소)

나) 구역별 계획(변경)

구역명		위치	면적 (㎡)	주된 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 (m)	사업방식
						기준	최대		
천호1 촉진구역	기정	천호동455-8번 지일대	10,577	판매	60%이하	714	810	140	도시환경 정비사업
천호3 촉진구역	기정	천호동409-3번 지일대	5,277	업무,판매	60%이하	600	790	120	도시환경 정비사업
천호4 촉진구역	기정	천호동410- 100번지일대	17,394.9	주거, 근린생활	60%이하	591	793	120	도시환경 정비사업
	변경	천호동410- 100번지일대	17,394.2	주거, 근린생활	60%이하	591	793	120	도시환경 정비사업
성내1 촉진구역	기정	성내동49-1번 지일대	6,299	업무,판매	60%이하	600	785	140	도시환경 정비사업
성내3 촉진구역	기정	성내동48-6번 지일대	6,729	업무,판매, 주거,근린	60%이하	610	800	140	도시환경 정비사업
성내5 촉진구역	기정	성내동15 번지일대	7,096	업무,판매	60%이하	500	650	140	도시환경 정비사업

※ 변경사유 : 천호4재정비촉진구역 단순 착오에 따른 면적정정 (17,394.9㎡→17,394.2㎡, 0.7㎡감소)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변경)

가) 재정비촉진구역(변경)

구분		사업구역 면적 (㎡)	용도지역	필지수	건물수	비고
천호1 촉진구역	기정	10,577	일반상업	30	8	—
천호3 촉진구역	기정	5,277	일반상업	109	53	—
천호4 촉진구역	기정	17,394.9	일반상업	23	10	착오에 따른 면적정정
	변경	17,394.2	일반상업	23	10	
성내1 촉진구역	기정	6,299	일반상업	18	8	—
성내3 촉진구역	기정	6,729	준주거, 일반상업	45	29	—
성내5 촉진구역	기정	7,096	근린상업	4	5	—
계	기정	53,302.9	—	229	113	—
	변경	53,302.2	—	229	113	—

※ 변경사유 : 천호4재정비촉진구역 단순 착오에 따른 면적정정 (17,394.9㎡→17,394.2㎡, 0.7㎡감소)

나) 존치구역(변경없음)

—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2015.12.)」 참조

9)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없음)

—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2015.12.)」 참조

10) 용도지구 결정계획(변경없음)

—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2015.12.)」 참조

11) 촉진사업별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

가)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 계획(변경없음)

—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2015.12.)」 참조

나) 용적률계획(변경)

구분			면적 (㎡)	획지면적 (㎡)	순부담면적(㎡)			기준 용적률 (%)	최대 용적률 (%)
					계	부지	입체 기부채납		
촉진 구역	천호1	기정	10,557	8,977	1,217	1,217	—	714	810
	천호3	기정	5,227	4,098	956	956	274*	600	780
	천호4	기정	17,394.9	13,756.7	3,618.9	3,618.9	—	591	793
		변경	17,394.2	13,756.7	3,618.2	3,618.2	—	591	793
	성내1	기정	6,299	5,083	1,216	1,216	—	600	785
	성내3	기정	6,729	5,037	1,285	1,285	—	610	800
	성내5	기정	7,096	5,711	1,385	1,385	—	500	650
존치 정비 구역	천호8	기정	7,613	5,433	1,378	1,378	—	520	700

※ 변경사유 : 천호4재정비촉진구역 단순 착오에 따른 면적정정 (17,394.9㎡→17,394.2㎡, 0.7㎡감소)

* 천호3촉진구역의 순부담면적은 기반시설부지의 기부채납과 공공시설의 건축물 기부채납(대지지분 포함)을 포함한 면적으로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부지면적은 274㎡임

다) 건축계획(변경없음)

■ 건축물의 높이계획, 건축배치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2015.12.)」 참조

12)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변경)

구분			사업면적 (㎡)	획지면적 (㎡)	기반시설(㎡)				국공유지(㎡)		순부담 면적(㎡)	순 부담률 (%)
					계	도로	공원광장 공공공지 녹지	문화 시설	계획 기반 시설내	기존 기반 시설내		
민 간 부 문	천호1촉진	기정	10,557	8,977	1,580	1,249	331	—	—	363	1,217	11.5
	천호3촉진	기정	5,227	4,098	1,129	1,058	71	—	172	275	956*	18.3
	천호4촉진	기정	17,394.9	13,756.7	3,638.2	2,504.2	1,134	—	19.3	—	3,618.9	20.8
		변경	17,394.2	13,756.7	3,637.5	2,503.5	1,134	—	19.3	—	3,618.2	20.8
	성내1촉진	기정	6,299	5,083	1,216	440	776	—	—	—	1,216	19.3
	성내3촉진	기정	6,729	5,037	1,692	625	1,067	—	134	273	1,285	19.1
	성내5촉진	기정	7,096	5,711	1,385	890	495	—	—	—	1,385	19.5
	천호8정비	기정	7,613	5,433	2,180	1,308	872	—	355	447	1,378	18.1
	계	기정	60,915.9	48,095.7	12,820.2	8,074.2	4,746.0	—	680.3	1,358.0	11,055.9	18.3
		변경	60,915.2	48,095.7	12,819.5	8,073.5	4,746.0	—	680.3	1,358.0	11,055.2	18.1

※ 변경사유 : 천호4재정비촉진구역 단순 착오에 따른 면적정정 (17,394.9㎡→17,394.2㎡, 0.7㎡감소)

* 천호3촉진구역의 순부담면적은 기반시설부지의 기부채납과 공공시설의 건축물 기부채납(대지지분 포함)을 포함한 면적으로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부지면적은 274㎡임

※ 공공부문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 : 변경없음

-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2015.12.)」 참조

13)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

구분	구역명	계획세대수		임대주택(세대)		
				계	전용60㎡이하	전용60~85이하㎡
합 계		기정	1,347	47	47	－
		변경	1,466	171	129	42
재정비 촉진구역	천호3	기정	116	－	－	－
	천호4	기정	551	47	47	－
		변경	670	171	129	42
	성내1	기정	180	－	－	－
	성내3	기정	160	－	－	－
	성내5	기정	144	－	－	－
존치 정비구역	천호8	기정	196	－	－	－

14)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2015.12.)」 참조

15) 촉진구역별 정비계획(변경)

가) 천호1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2015.12.)」 참조

나) 천호3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2015.12.)」 참조

다) 천호4재정비촉진구역(변경)

■ 재정비촉진구역 결정조서(변경)

재정비촉진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천호4 재정비촉진구역	천호동 410-100번지 일대	17,394.9	감) 0.7	17,394.2	-

○ 결정(변경) 사유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천호동 410-100번지 일대	· 촉진구역의 변경사항 없음 · 단순착오에 따른 면적 정정 17,394.9㎡→17,394.2㎡, 0.7㎡감소	· 천호4구역 편입면적에 대하여 단순 착오로 인한 면적오기로 금회 정정

■ 용도지역결정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천호4 재정비촉진구역	일반상업지역	17,394.9	감) 0.7	17,394.2	100.0	단순착오에 따른 면적정정

○ 결정(변경) 사유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천호동 410-100번지 일대	· 용도지역 변경없음 · 단순착오에 따른 면적 정정 17,394.9㎡ → 17,394.2㎡, 0.7㎡감소	· 천호4구역 편입면적에 대하여 단순 착오로 인한 면적오기로 금회 정정

■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17,394.9	감) 0.7	17,394.2	100.0	-
택 지 (획 지)	소 계	13,756.7	-	13,756.7	79.1	-
	획 지	13,756.7	-	13,756.7	79.1	-
정 비 기 반 시설등	소 계	3,638.2	감) 0.7	3,637.5	20.9	단순착오에 따른 면적정정
	도 로	2,504.2	감) 0.7	2,503.5	14.4	
	공 원	1,134.0	-	1,134.0	6.5	-

○ 결정(변경) 사유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천호동 410-100번지 일대	·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 단순착오에 따른 면적 정정 17,394.9㎡ → 17,394.2㎡, 0.7㎡감소	· 천호4구역 편입면적에 대하여 단순 착오로 인한 면적오기로 금회 정정

■ 도시계획(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 도로결정조서(변경없음)

-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2015.12.)」 참조

○ 공원결정조서(변경없음)

-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2015.12.)」 참조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름

■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천호4 재정비 촉진구역	17,394.9	-	13,756.7	천호동 410-100 번지 일대	10	-	-	10	-	단순 착오에 따른 면적 정정
변경	천호4 재정비 촉진구역	17,394.2	-	13,756.7	천호동 410-100 번지 일대	10	-	-	10	-	

○ 건축시설 등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연면적 (㎡)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명 칭	면 적 (㎡)	명칭	면 적 (㎡)						
기정	천호4 촉진구역	17,394.9	-	13,756.7	천호동 410-100 번지 일대	109,090.60 이하	주거 근린생활시설	60 이하	793 이하	120 이하
변경	천호4 촉진구역	17,394.2	-	13,756.7		110,045.81 이하	변경 없음	변경 없음	변경 없음	변경 없음
건축물 용도별 연면적		기정	○주거 : 54,545.30㎡ 이하 ○상업 : 21,818.13㎡ 이하 ○업무 : 32,727.17㎡ 이하 ※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거비율은 60% 이하 - 준공공임대(7.5%), 장기전세주택(2.5%)도입 시 주거 10% 상향 가능							
		변경	○주거 : 65,194.91㎡(60% 이하) ○업무(오피스텔) : 10,994.70㎡(10% 이하) ○업무(오피스) 및 상업 : 33,856.20㎡(30% 이상) ※ 준공공임대(7.5%), 장기전세주택(2.5%) 도입 : 오피스텔포함 주거비율 70% 이하 ※ 용적률 793% 이하 범위내에서 건축계획 가능 ※ 경로당, 어린이집은 용적률 완화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기정	○건립규모 - 전용면적 85㎡ 이하(일반분양) : 216세대 - 전용면적 60㎡ 이하(일반분양) : 288세대 - 전용면적 60㎡ 이하(임대주택) : 47세대 ○건설비율(세대수) - 일반분양 : 91.5% 미만 - 임대주택 : 8.5% 이상 ○건립예정세대수 : 551세대							
		변경	○건립규모 - 전용면적 85㎡ 이하(일반분양) : 206세대 - 전용면적 60㎡ 이하(일반분양) : 293세대 - 전용면적 85㎡ 이하(임대주택) : 42세대(준공공임대+장기전세) - 전용면적 60㎡ 이하(임대주택) : 129세대(공공임대+준공공임대+장기전세) ○건설비율(세대수) - 일반분양 : 74.5% 미만 - 임대주택 : 25.5% 이상(준공공임대+장기전세주택 포함) ○건립예정 세대수 : 670세대							

※ 건축물 용도별 연면적 및 주택의 규모는 사업시행 인가시 관련 법규상의 세부건축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재정비촉진지구내 서울시 주거비율 완화 반영(2014.12.4. 주택정책실)

-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주거비율 10% 상향조정
·상향된 10% ⇒ 7.5% 준공공임대주택 + 2.5% 장기전세주택

구 분	당초방침	변경방침
상업지역 주거군비율	60%이하 (주거50% + 오피스텔 10%)	70%이하 (주거60% + 오피스텔10%)
	-	10%상향 7.5%(준공공임대)+2.5%(장기전세)

<주거비율 완화에 따른 용도비율 및 세대수 변경>

구분		기정	변경(안)	비고
용도별 비율	계	109,090.60㎡(100.0%)	110,045.81㎡(100.0%)	주거군 비율상향 (60%⇒70%이하)
	주거군	소계	65,454.36㎡(60.0%)	76,189.61㎡(70%이하)
		주거	54,545.30㎡(50.0%)	65,194.91㎡(60%이하)
		오피스텔	10,909.06㎡(10.0%)	10,994.70㎡(10%이하)
	비주거군	소계	43,636.24㎡(40.0%)	33,856.20㎡(30%이상)
		오피스	21,818.11㎡(20.0%)	21,727.73㎡(19.8%)
		상업	21,818.13㎡(20.0%)	12,128.47㎡(11.0%)
세대수	계	551세대	670세대	증) 119세대
	분양	504세대	499세대	감) 5세대
	임대	47세대	171세대	증) 124세대

※ 용적률 793%이하 범위내에서 건축계획 가능

※ 건축물 용도별 연면적 및 주택의 규모는 사업시행 인가시 관련 법규상의 세부건축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용적률계획(변경없음)

○ 기준용적률

용도지역	획지면적(㎡)		용적률 적용기준(%)	비 고
	기 정	변 경		
일반상업지역	13,756.7	13,756.7	800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 상한용적률

구 분	산정내용	비 고
개발가능(상한) 용적률 산정	· 기준용적률 : 591%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 이내 + $[1.3 \times (\text{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times \text{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 / \text{기반시설 부지 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이내 · 개발가능용적률 : $591\% + [1.3 \times 3,618.2\text{m}^2 \times 591\%] / 13,756.7\text{m}^2 = 793.1\%$ · 상한용적률 = 793%이하	서울시 도시재정비촉 진을 위한 조례8조 1항1호

■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2015.12.)」 참조

■ 정비사업의 시행계획(변경)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기정	변경		
도시환경 정비사업	2017년	조합	167	286	이상없음	-

■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 보호 가능한 수목 없음

■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가 구	면적(㎡)	획 지		면 적(㎡)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	13,756.7	-	천호동 410-100번지일대	13,756.7	-	13,756.7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 임대주택 산정
 - 임대주택 건립비율 기준
- 해당구역에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퍼센트 또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의 10퍼센트 × 해당 구역에 건설하는 전체 건축물연면적에 대한 주거용 건축물연면적 비율로 산정된 비율 이상으로 한다.
 - ▶ 산식 : 총 세대수 × 임대주택비율(17%) × 구역별 주거용 건축연면적 비율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8조)

○ 임대주택 세대수

-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임대주택의 건설규모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상

▶ 계획 : 670세대 × 17% × 59.3% = 67.5세대 (계획 68세대)

건립위치	동수	세대수		세대규모(전용)	비고
		기정	변경		
천호4 재정비촉진구역	-	47	68	60㎡ 이하	일반분양과 별개의 동(棟)으로 구분하지 않음

■ 준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산정

- 주거용도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7.5%는 준공공임대주택, 2.5%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건립(재정비촉진지구 상업 및 준주거지역 주거비율 운영기준, 2014.12)

구분	기준	계획	세대수	비고
계	110,045.81㎡ × 10% = 11,004.5㎡ 이하	10,247.17㎡	103	전체연면적의 10%
준공공임대		7,725.42㎡	80	7.5% 이하
장기전세		2,521.75㎡	23	2.5% 이하

※ 용적률 793% 이하 범위내에서 건축계획 가능

※ 건축물 용도별 연면적 및 주택의 규모는 사업시행 인가시 관련 법규상의 세부건축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성내1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2015.12.)」 참조

마) 성내3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2015.12.)」 참조

바) 성내5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2015.12.)」 참조

16)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변경없음)

-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2015.12.)」 참조

17) 광고물 관리계획(변경없음)

-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2015.12.)」 참조

18)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2015.12.)」 참조

19) 방재계획(변경없음)

-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2015.12.)」 참조

20) 정보화계획(변경없음)

-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2015.12.)」 참조

21) 에너지 순환계획(변경없음)

-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2015.12.)」 참조

22) 특성화 계획(변경없음)

-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2015.12.)」 참조

23)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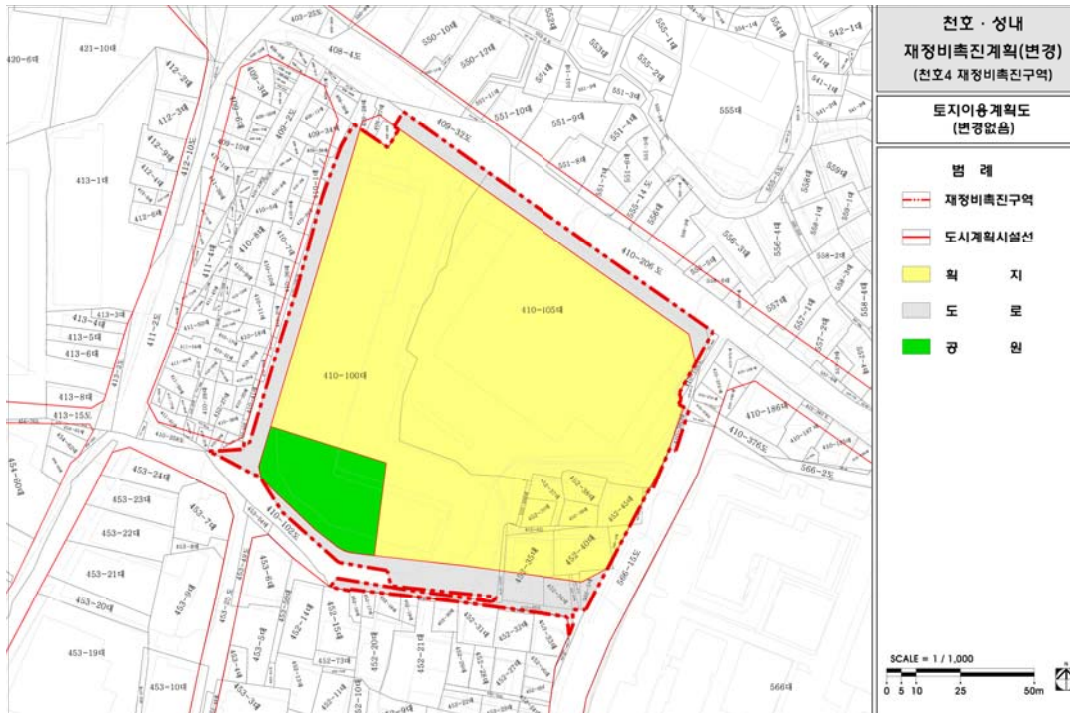
-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2015.12.)」 참조

라.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사항은 「천호4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도서」에 명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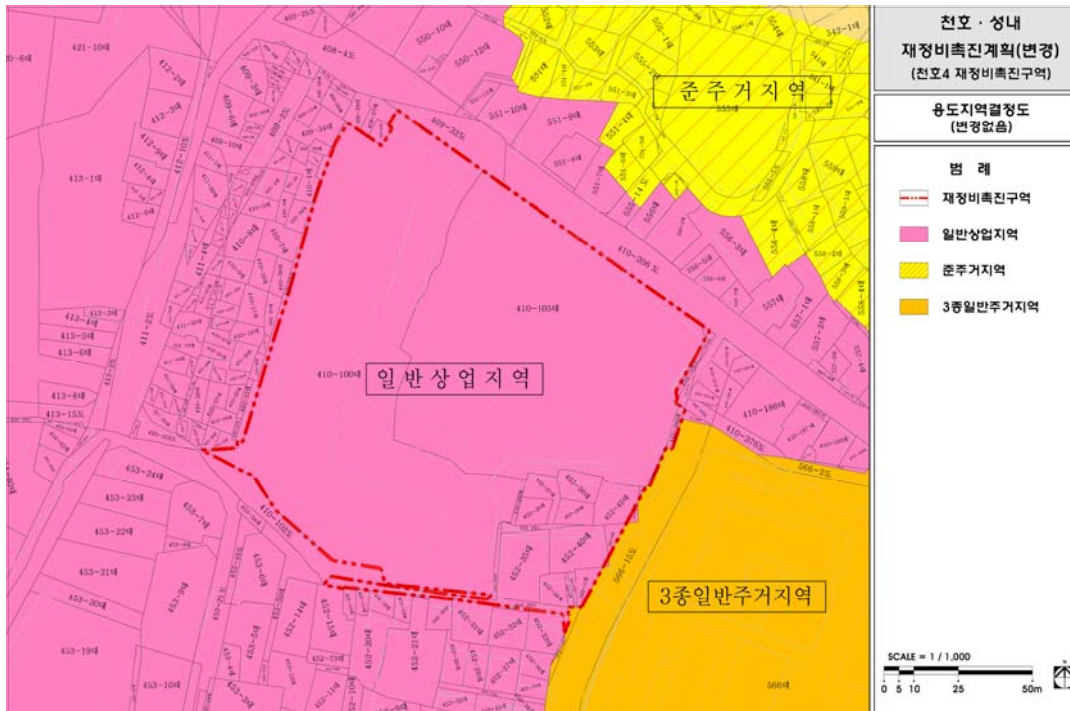
마.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천호4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도서」 참조 : 생략
(비치한 도서와 같음)

바.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02-2133-7222) 및
강동구청 도시계획과(☎02-3425-6054)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변경없음)>



<용도지역결정도(변경없음)>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5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666호(1978.12.15.)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적승인 되고, 성북구고시 제2016-80호(2016.7.7.)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고시한 【성북동길 확장사업 (성북동 236-6 ~ 237- 13외 1개소)】 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사항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

가. 사업시행자의 위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성북구 236-6 ~ 237-13, 109-8 ~ 243-26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2) 명칭 : 성북동길 확장사업(성북동 236-6~237-13외 1개소)

다. 사업규모(변경없음)

사업의 위치	사업의 규모	비고
성북동 236-6 ~ 237-13	B = 12m → 30m, L = 56m	
성북동 109-8 ~ 243-26	B = 12m → 30m, L = 52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당 초		변 경		비고
사업시행자	주 소	사업시행자	주 소	
성북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서울특별시시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일로부터 2017.12.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변경없음) : 따로붙임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도로계획과(☎ 2133-8084) 및 성북구청 도로과(☎ 2241-35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청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사업의 명칭 : 성북동길 확장공사(236-6 ~ 237-13외 1개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권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자의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성북구 성북동 236-6	대	7.0	7.0	배재두	성북구 성북로 146-1(성북동)	유니온백양회 공업주식회사	서울 중구 소공동 50-5	근저당권	
2	성북구 성북동 236-7	대	17.0	17.0	오은서	강북구 삼각산로 143-1, 13동 804호 (수유동, 수유백산아파트)				236-1 에서 분할
3	성북구 성북동 237-11	대	58.0	58.0	오성환	성북구 성북로 144 (성북동)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2가)	근저당권	237-1 에서 분할
4	성북구 성북동 237-12	대	68.0	68.0	김성순	성북구 성북로 144 (성북동)				237-2 에서 분할
5	성북구 성북동 237-13	대	104.0	104.0	서현자	서울 송파구 동남로18길 44, 5동 905호 (가락동, 가락프라자아파트)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송파개통역지점)	근저당권	237-3 에서 분할
6	성북구 성북동 109-8	대	2.0	2.0	이장호	종로구 창경궁로35가길 11 (해회동)				109-1 에서 분할
					이재호	종로구 창경궁로35가길 11 (해회동)				
7	성북구 성북동 243-25	대	37.0	37.0	이장보	서초구 남부순환로323길 56-18, 101동 1005호 (서초동, 경남아너스빌)	스마트자산관리 주식회사	성북구 대사관로 134-25 (성북동)	가등기권	243-9 에서 분할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2가)	근저당권	
8	성북구 성북동 243-26	대	56.0	56.0	이장호	종로구 창경궁로35가길 11 (해회동)	종로세무서장		근저당권	243-12 에서 분할
							종로세무서장		근저당권	

별첨 제 2 호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사업의 명칭 : 성북동길 확장공사(236-6 ~ 237-13외 1개소)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성북구 성북동 236-1	건물	목조	5.0		이명순	도봉구 해동로 50, 315동 1101호 (창동, 주공아파트)					
2	성북구 성북동 237-1	건물	세멘연외조	42.0		오성환	성북구 성북로 144 (성북동)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2가) (성북동지점)	근저당권	
3	성북구 성북동 237-3	건물	목조심벽세멘벽돌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1층 : 84.0 2층 : 2.0 합계 1식 느티나무 1주		서현자	서울 송파구 동남로18길 44, 5동 905호 (가락동, 가락프라자아파트)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송파계통역지점)	근저당권	
4	성북구 성북동 243-9	건물	연외조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대문 1식 담장 1식 수목 1식		이장보	서초구 남부순환로323길 56-18, 101동 1005호 (서초동, 경남아너스빌)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2가)	근저당권	
5	성북구 성북동 243-12	건물	연외조스라브	130.0 수목 1식		박인순	홍북 청원군 강서면 비하리 408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59호

서울특별시 지적 조사사업 종합계획(2차)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특별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지적 조사사업 종합계획(2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 장

I. 종합계획 수립배경

- 지적(땅)은 국민과 함께 국가구성의 3대 요소 중 하나로 토지등록·토지평가·토지거래 및 과세기준의 기초임에도
- 100년 전 작성한 종이 지적도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토지경계가 불일치하는 등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경계분쟁 해소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디지털 지적구현

① 지적의 변화

- 토지조사사업(1910~1918) 및 임야조사사업(1916~1924)을 통해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 작성 및 토지소유권 확립
- 『지적법』 제정(1950)으로 모든 토지를 등록하는 근대적 지적제도 확립
- 토지(임야)대장 전산화(1991) 및 지적(임야)도 전산화(2005)로 온라인체제 구축 및 행정정보 공동 활용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11.9.16) 및 시행('12. 3.17)
- 『제1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립 ('13. 2. 27) 시행
- 『제2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립 ('16. 3. 25) 시행

② 지적재조사 필요성

- 국가기초 정보로서 동경원점 중심의 지적도면에서 세계적 기준의 지적도면 작성으로 새로운 국토정보 구축 필요
- 토지 소유권보호와 국토개발의 국가 기초정보 및 시민행복맞춤형 새로운 변화 필요
- 지적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지적정보 구축 및 다양한 분야의 공유를 통한 비용절감과 새 가치창출 기반 마련
- 재조사측량과 세계측지계 변환을 통한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여 도시경쟁력 확보

③ 지적재조사 단계별 추진



□ 서울시 그간 추진현황

- 측량기준점 정비 및 활용대책 구축사업('07~'09)
 - 지적삼각점 세계측지계 변환 완료
 - 네트워크 RTK 시스템 구축(GPS 측량시스템 도입) 완료
-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08~'10) : 강서구 화곡동 일대
 -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전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 실시
- 『제1차 지적재조사사업 종합계획수립 ('13. 9. 16)
- 『제2차 지적재조사사업 종합계획수립 ('16. 7. 11)
 -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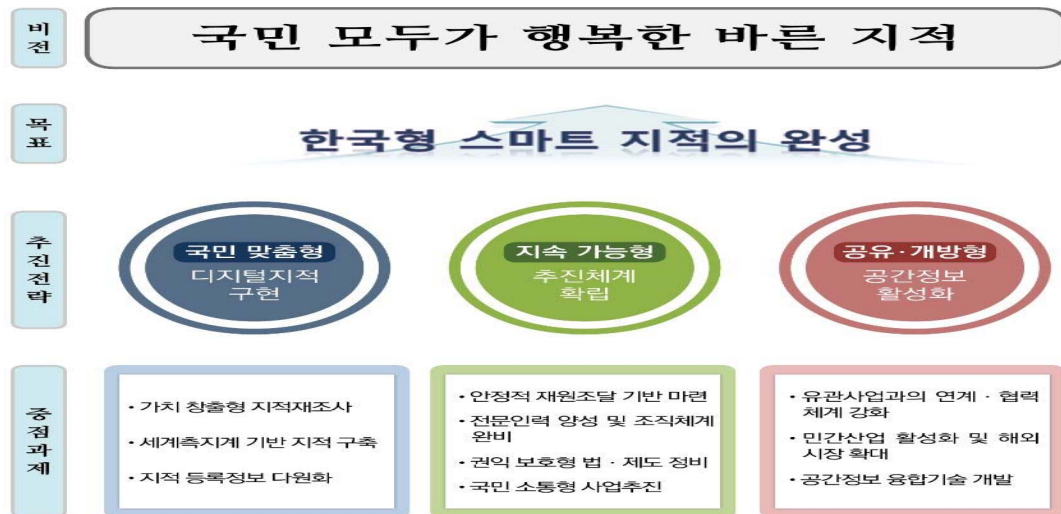
구 분	면적(천㎡)	필지수	소유자 수	고시일	추진사항
성북구 종암지구	17	115	130	`13. 1.17	`14.12.31사업완료
은평구 산새마을1지구	10	106	168	`13. 1.17	`14. 7 사업완료
동작구 상도1지구	46	244	170	`13. 5. 2	경계 조정중
중랑구 상봉1지구	85	81	66	`14. 3.12	경계 조정중
은평구 산새마을2지구	54	305	252	`14.11. 6	`16.6 경계확정
중구 황학1지구	17	210	190	`14.11. 6	`16.7 경계확정
성북구 성북지구	11	64	86	`15.12. 24	동의서 징구중

II. 종합계획 수립방향

① 종합계획의 개요

- (근거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제2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립(국토교통부 고시 '16. 3. 25)
- (역할)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을 구체화한 서울시 종합계획(2단계: '16~'20)
 -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25개 자치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지구지정, 연도별 추산액, 예산의 배분, 지도·감독, 기술·인력 등의 사업지원
- (주요내용) 지적재조사 업무지침 제3조
 -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지정의 세부기준
 -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연도별 추산액 및 자치구 배분계획
 -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 계획
 - 지적재조사사업의 사업시행자 지도·감독·교육·성과검사 지원
 -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홍보 등

② 비전 및 목표



③ 기본방향

- 대도시의 특성(고밀도, 고지가)을 반영하여 지적불부합지 해소보다는 일반지역의 세계측 지계 변환 중점 추진 및 선도적 역할 수행
- 지적불부합지역은 대도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시행이 용이한 지역과 주민동의 및 경제조정이 양호한 지역 우선 추진
- 서울시 네트워크 RTK 시스템을 활용한 확정측량지역 디지털 지적 고도화 추진
-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기반조성 마련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안정적 환경구축

- (종합계획) 총 사업기간 19년('12~'30)간 국고보조금 약 283억 원의 국가재정을 지원받아 서울시 전체 993,395필지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

* 2020년까지(2단계)

- ▶ 지적불부합지 해소(37,469필), 일반지역 세계측지계 변환(132,000필), 지적확정측량 지역 디지털 지적 구축(15,493필)으로
- ▶ 총 191,174필 고품질 디지털 지적구축 으로 서울시 전체 토지의 약 19% 사업완료 예상(국토교통부 제출 기준)

- 각 자치구의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과 부합하고, 서울시의 지리적 특수성(대도시, 고밀도, 고지가 등)을 반영하는 계획
 - 기본계획의 단계별 추진전략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추진

III. 세부추진 계획

① 고품질의 디지털 지적구축 분야

■ 지적재조사 방법 및 절차

- 지적재조사는 재조사측량지역, 좌표변환지역(일반지역, 확정측량)구분 추진
- ① 재조사측량 : 지적불부합지역(10%)
- ② 좌표변환 : 지적공부와 실제현황이 대부분 일치하는 지역(77%)
- ③ 확정측량 : 도시개발사업 등 완료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지역(13%)
- 지적재조사 추진절차도



1-1. 지적재조사 특별법으로 불합지 해소

- (사업대상) 총 993,395필지 중 149,968필지(15%)를 대상으로 GPS 등을 이용한 직접측량 방식으로 현실경계와 지적공부 일치화
- * 149,968필지는 지적도상의 경계가 현실 경계와 불일치하는 10필지 이상의 집단지에 대한 단순조사 결과로 변동될 수 있음

** 세계측지계 변환 대상 중 변환과정에서 개별불부합지(10필지 미만)로 분류될 경우 지적불부합지 필지수는 변동될 수 있음

***사업지구 내 공공용지는 사업시행 이전에 합병하여 예산 절감

- (추진방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구지정, 주민협의회, 재조사측량, 경계결정, 조정금 산정 등 추진
- (사업주체)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지적소관청에서 사업시행
- (일필지 조사측량) 새로운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경계를 확정하고 지상·지하 건축물의 위치와 현황을 병행하여 일필지조사서 작성
- (경계설정의 기준) 토지소유자가 점유한 현실경계, 등록 당시 측량기록상 경계, 지방 관습에 의한 경계순으로 설정
 - 소유자 간 합의한 경우 그 경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 (경계점 설치) 경계설정기준에 따라 임시경계점 표지를 반드시 설치하여 재조사측량 경계 확정 시에는 경계점표지등록부 작성

1-2. 일반지역 세계측지계 변환

- (시행기준)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 시행계획
 - 지적재조사 기본계획('13.2.27고시)에 따라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추진
 - * 일반지역(지적확정측량, 기타지역)은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으로 디지털지적 구축
- (기본방향)
 - (구)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측량의 기준)
 - * 법률 제6조(측량의 기준) 및 부칙 제5조에 따라 2021년부터 위치는 세계측지계에 따라 측정한 지리학적 경·위도와 높이를 표시하도록 함
- 지적측량 기준(지역측지계 → 세계측지계)의 변경
 - 지역측지계(동경기준 : Bessel/1841 타원체)를 GPS 기준의 세계측지계(지구중심 기준 : GRS/1980 타원체)로 변경

1-3. 지적확정측량지역 디지털 지적구축

- (사업대상) 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한 지적확정측량지역 디지털 지적 구축
 -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재개발·재건축 등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세계측지계 전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비 예산)
- (추진방법) 지적확정측량 규정에 의거 세계측지좌표 동시 산출
 - 사업 인·허가 협의 시 확정측량 대상임을 명시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GNSS상시관측소(위성기준점)에 의한 실시간 위치측량 실시

② 사업기반 환경조성 분야

2-1. 지적재조사 조직 구성·운영

- (근거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지적재조사사업의 지도·감독, 기술·인력 및 예산 등의 지원을 위하여 시·도에 **지적재조사지원단**을, 실시계획의 입안,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지적재조사추진단**을 둘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설치 완료('12.4.26)
 - 1단 2팀 : 기본계획 입안, 사업의 지도·감독, 예산지원 등을 수행
- (서울시) 종합계획의 입안, 사업의 지도·감독, 기술·인력 및 예산 지원,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등을 수행을 위한 전담팀 구성(1팀, 5명)
 - 지적재조사는 중·장기 국책사업으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보호를 위해 특별법이 정한 지적재조사 지원팀 신설
- (지적소관청) 사업시행자인 자치구에 추진팀을 설치하여 실시계획 입안, 사업시행,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지적재조사·경계결정 위원회 운영 등을 수행할 추진 전담팀 신설 추진

2-2. 최첨단 측량교육으로 전문가 양성

- (지적재조사교육 의무화) 지적재조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재조사 교육의무화 및 서울시 인재개발원 재조사 과목 신설
 - 서울시 자체 직장교육을 통한 지적재조사 내용 지속전파 및 세계측지계 변환 전문가 양성(직장교육 프로그램 병행 추진)
 - GPS측량(네트워크 RTK 측량) 수행능력 및 검사능력 향상 교육 추진 등
- (공무원 교육) 지적재조사 측량방법에 따른 검사요령과 토지소유권 분쟁의 조정자 역할이 가능하도록 전문교육 실시
 - 서울시 인재개발원, 국토교통부인재개발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교육원 등의 위탁교육생 선발 시 지적재조사 담당공무원 우선기회 부여
 - 서울시 인재개발원 지적전문과정제 재조사 과목을 신설하여 전문교육 강화
- (대행자 교육) 국토교통부, 국토정보교육원 지적재조사 교육과정 등을 이용한 재조사측량, 세계측지계 변환, 일필지조사, 경계점표지등록부 작성 등 교육
 - 지적재조사 측량대행자와 사업시행자간 워크숍, 점검회의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 방안 마련

2-3. 시민과 소통하는 홍보전략 마련

- ① 추진방향
 - 대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단계별 내실 있는 전략적 홍보추진
 - 사업초기 단계이고 대도시 특성상(고 지가, 소유자 미거주 등) 토지소유자의 참여가 저조함에 따라 내실 있는 홍보 추진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지지 기반조성
 - 사업의 필요성, 미래편익, 사업가치 등을 중심으로 공감대 확산
 -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등의 참여 유도를 위한 현장홍보

- 사업의 수혜자인 토지소유자 등의 사업이해도 제고 및 자발적 참여 유도

② 추진방법

- 지적재조사사업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 시민홍보
 - 『지적재조사 홍보 웹사이트』를 활용한 동영상 홍보(국토교통부 제작 중)
 - 공공청사 전광판, 모니터, 반상회보 등을 활용한 홍보(영상, 자막 표출 등)
 - 산, 학, 연 등과 지적재조사사업의 정책공유를 통한 소통강화 등
-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등의 참여 유도를 위한 현장홍보
 - 사업지구 주민설명회 개최 시 홍보 동영상, 리플릿, PPT 등 적극 활용
 - 사업지구 주민과의 간담회 등을 통한 현장행정으로 소통강화 등
- 사업지구 생활주변 공간 등을 활용한 주민밀착형 홍보
 - 지자체 간행 홍보물, 안내문, 고지서 이면 등 활용 홍보
 - 지역 행사(축제 등)시 홍보프로그램(이벤트, 부스 등) 운영 등
- 지적재조사사업 홍보콘텐츠 등을 활용한 홍보
 - 사업 인지도 향상, 사업필요성의 공감대 형성
 - TV, 신문, 라디오, 홍보전광판, 인터넷, SNS 등
 - 홍보 동영상, 리플릿 등 활용(국토교통부 제작배포)

③ 효율적인 사업관리

3-1. 합리적인 사업지구 선정·관리 운영

① 사업지구 선정

- 사업지구 선정은 특별법 제7조에 의한 조건충족 여부와 예산금액 및 사업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기준 마련
- 재조사사업 시행이 용이한 지역과 시행 효과가 큰 지역 기준을 세분화하여 지구선정 및 사업비 배분 기준으로 지구 선정
- (착안사항) 서울시의 높은 지가, 경계합의 문제, 대도시만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블록 별, 동별 대단위 사업추진과 세계측지계 전환 업무 우선 고려
- (추진절차 개선시행) 당해 연도에 예산집행과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교부 및 집행절차와 일하는 방식 개선
 -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 교부 전에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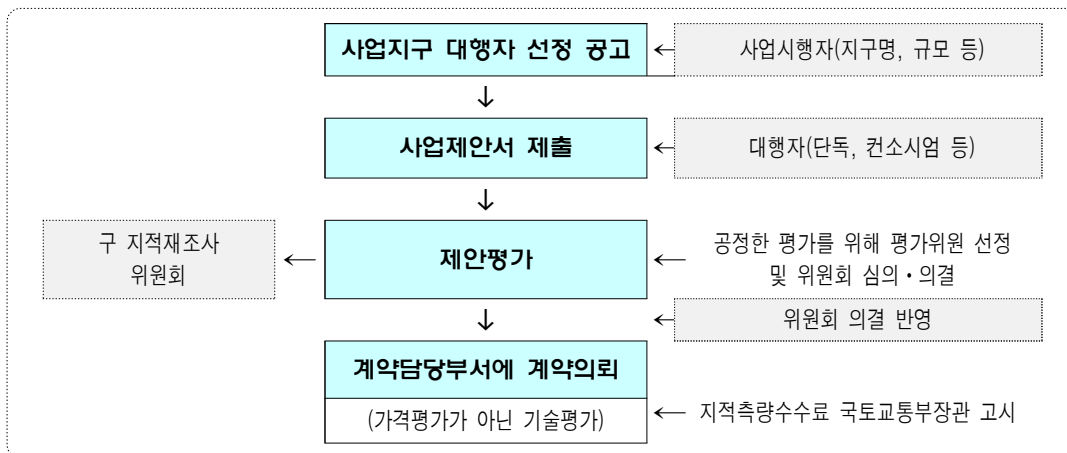
② 선정기준

-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선정기준으로 서울시의 특성에 맞는 기준 마련
- (평가항목) 선정기준 세분화 및 계량화 ⇒ 300점 만점
 - ① 평가항목 B0 : 소유자 총수 3/4 이상 동의 → 우선선정(평가무관)
 - ② 평가항목 B1 : 사업시행의 효과가 큰 지역(총점 80점)
 - ③ 평가항목 B2 : 사업시행이 용이한 지역(총점 200점)
 - ④ 평가항목 B3 : 토지이동이 빈번하고 복잡한 도해지역(총점 5점)
 - ⑤ 평가항목 B4 : 원점·축척 등의 혼재한 지역 (총점 15점)
- (평가방법)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기준 표

구 분	세부기준	세부항목	배점	비 고
총점			300점	
B0	토지소유자 총수 3/4 이상 동의	동의서 징구율	-	우선선정
B1	사업효과가 큰 지역	5분류(14항목)	80점	
B2	사업시행이 용이한 지역	3분류(3항목)	200점	
B3	토지이동 빈번, 복잡한 도해지역	1분류(1항목)	5점	
B4	측량원점·지적도면 축척 혼재지역	1분류(1항목)	15점	

③ 사업지구 지정

- (지정신청) 지적소관청은 특별법 제7조의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서울시에 지구지정 신청
 - (지구지정) 지적소관청의 지구지정이 있는 경우 사업지구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서울시 지적재조사 위원회에서 지구지정(붙임5)
 - 전체 사업지구 취합 후, 배점기준 우선순위 부여 관리
 - 매년 국고보조금 교부 규모에 따라 사업시행 지역선정
 - (대행자 선정)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재조사·측량 대행
 - 대행자 선정 시 대행자 선정기준에 따라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 선정절차



④ 사업지구 관리

- (관리카드) 사업지구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진도율 등 사업지구 관리

⑤ 사업지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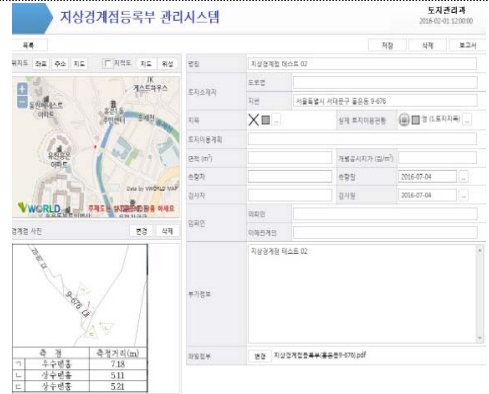
- (근거법률)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측량성과검사)
- (기준점관측) 위성측량방법으로 재조사 측량시 지상장애가 있거나 위성신호를 수신 할 수 없는 경우에 기준점 관측 사용
- (성과검사) 측량계획도 작성유무 및 위성측량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기준점 성과검사 시행
 - 기준점 측량성과와 검사결과 연결교차가 ± 0.03 미터 이내인 경우 인정
 - 일 필지 측량을 할 경우 반드시 기준점 측량성과 검사를 완료한 기준점만 사용
- (세부측량 검사) 위성측량으로 현지 검사측량시 연결교차가 ± 0.07 미터이내
 - 경계설정 방법에 따른 경계점표지설치·작성여부, 일필지조사서 작성, 재조사측량 성과부 등 납품목록 확인 후 최종 성과검사 시행(시·구 합동검사)

<지상경계점 관리시스템 자체개발 운영>

- (작성·관리) 시민들 누구나 자신의 땅에 대한 경계 확인이 가능하도록 경계점표지등록 부 작성 및 관리시스템에 탑재하여 측량정보 제공 및 활용
 - 지상경계점 관리시스템(<http://boundary.fieldm.net/>)



지상경계점등록부 관리시스템 메인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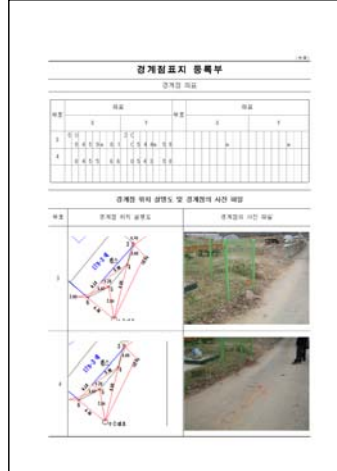


자료입력화면

※ 지상경계점좌표 등록부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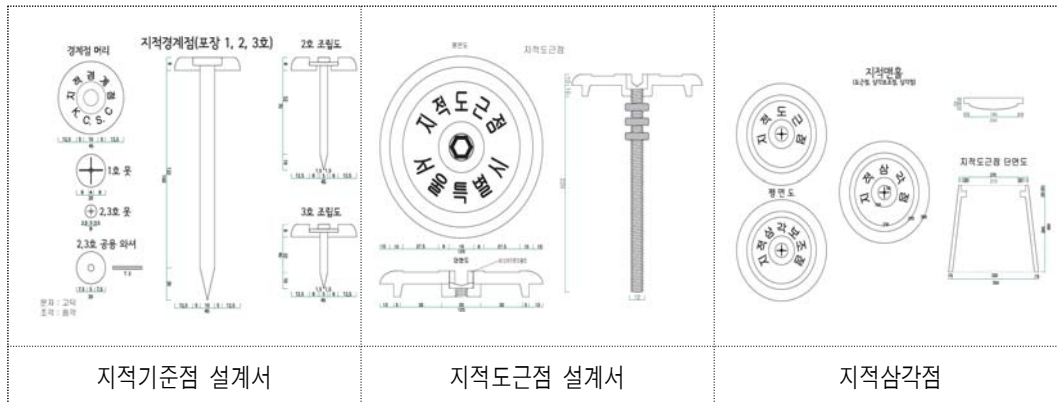




- (경계점표지) 대도시 지역의 특성 상 견고하고 영구적인 경계점표지 모델개선 필요 (평면)



(경계점 및 기준점 설계서)



*경계점표지 모델개선(안)은 지적소관청 의견 수렴 및 국토교통부 협의(논의) 후 도입 검토

3-2. 효율적이고 정확한 사업예산 집행

① 지적재조사 사업비

- (사업비 성격) 지적업무는 국가사무로 지적재조사 추진에 필요한 경상적 보조금(국고보조금)을 중앙정부로부터 교부 받아 추진
- (국고보조금) 지적불부합(집단·개별)지역에 대한 재조사측량비용, 세계측지계 변환비, 기준점 관측비, 일반운영비 등 교부신청
- (지방비 확보) 조정금, 운영비 등 지방비(구비) 적극 확보
 - *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 자산취득비, 조정금, 감정평가수수료 등
 - 지적소관청은 경계확정에 따른 지적공부상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산정하여 (6개월→1년 이내) 조정금 지급·징수(특별법 제20조)
 -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예산 반영(구비)
 - *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특별법 제20조 제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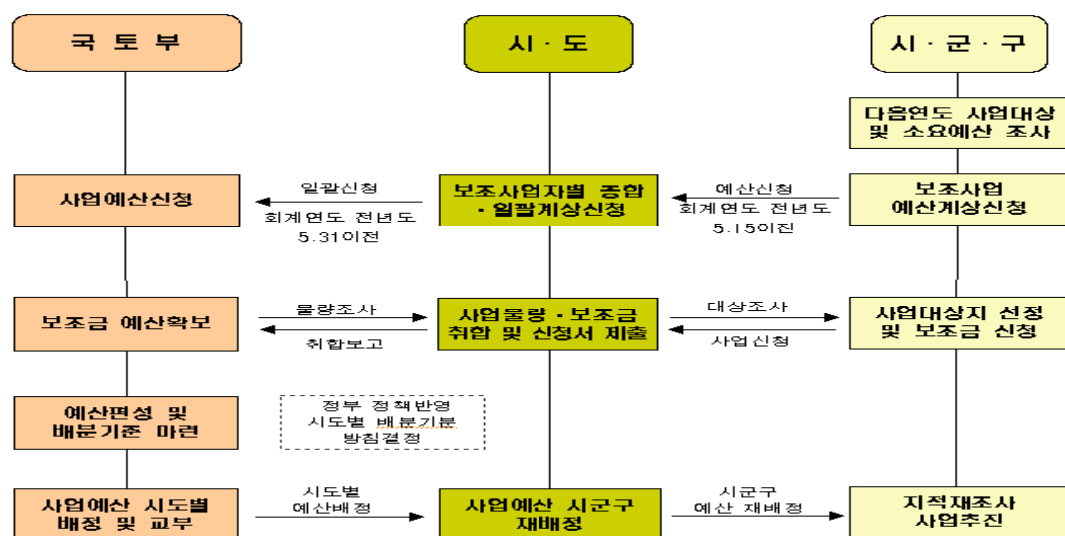
②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 추산액

내용 \ 년도	2014		2015		2016 ~		필지수 합 계	예산 합계
	필지수	예산액 (천원)	필지수	예산액 (천원)	필지수	예산액 (천원)		
특별법에 의한 지적불합지역	1,654	373,477	4,558	1,029,208	37,469	2,637,825	43,681	4,040,510 (2020년도)
일반지역 세계측지계변환 지역	20,074	102,577	76,502	390,920	35,424	284,000	132,000	777,497
도시개발등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지역	7,778	-	6,027	-	1,688	-	15,493	-
총 합계	29,506	476,054	87,087	1,420,128	74,581	2,921,825	191,174	4,818,007

*추산액은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규정』 등을 적용함(예산편성기준 및 사업물량 조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③ 자치구별 사업비 배분

- (기준) 객관성 있는 예산배분을 위하여 사업신청 지구별 특성과 전년도 자치구별 추진사항 등을 평가하여 배분
- 사업신청 현황, 전년도 추진실적, 사업규모, 예산집행실적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선정
- 지적재조사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책 반영
 - 토지소유자의 동의율, 기관장의 관심도, 사업 조직과 인력 등이 확보되어 안정적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지구 우선 배분
- (예산 배분절차)



④ 사업예산 관리

- 국고보조금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따라 성실하고, 투명하게 예산관리 및 다른 용도 사용금지
- 보조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업의 내용·소요예산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후 변경
- 보조사업자는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분기별로 익월 10일까지 사업수행상황보고서를 제출
- 국고보조사업의 완료, 폐지가 승인, 회계연도 종료 시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류 3개월 내 제출

3-3. 新 공부 작성으로 소통시스템 구축

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으로 토지 소유권보호

- 사업완료 공고되면 기존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여 시민의 소유권보호를 위해 등기촉탁 시행
 -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토지표시사항과 소유권사항을 일치시켜 공적장부의 신뢰성 확보

새로운 지적공부 등록



낡은 지적도



다목적 디지털 지적도

- 새로운 공부의 관리범위를 확대하는 지적공부 형식 개편
 - (지상) 건물, 송전선로, 고가도로 ⇒ 지상권, 구분소유권, 선(線)하지보상 등
 - (지표) 경계, 기준점, 도로, 하천 ⇒ 소유권, 지역권, 지상권, 입목권 등
 - (지하) 지하철, 쇼핑물, 터널 ⇒ 구분지상권, 지하권, 선하지보상 등
- ②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 구축
 - 새로운 지적공부 등록·관리와 지적재조사사업 정보를 인터넷 등으로 실시간 열람 할 수 있도록 공개시스템 구축·운영
 - *법 제24조(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 영 제27조(공개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 지적재조사 사업관리 및 행정정보 공동 활용체계 마련과 사업 추진사항 공개를 위해 특

화된 독립시스템 구축

*사업지구 지정부터 경계결정 등 일련의 업무를 국민에게 실시간 서비스 제공

○ 지적재조사 자료 연계시스템 구축 및 자료공유 체계 마련

*KLIS 등의 타 국가공간정보 관련 시스템과 연계 및 자료 공유



* PPLIS(Public Participation Land Information System)

- 대국민 맞춤형 토지관련 정보제공을 통해 기존 국가주도·민간순응 방식에서 → 민·관 협력적 국민소통형 공개시스템 마련

○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인 참여로 사용자 입장에서 시스템이 개발될 수 있도록 시스템 분석 및 요구자료 적극제출

IV. 사업효과

- ☐ 지적재조사 기반조성으로 안정적 사업추진 토대 마련
 -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중점추진으로 디지털 지적 구축
 - 대도시의 특성에 맞는 지적재조사사업 환경 구축
 - 고지가, 경계합의 등의 사업추진 저해요인 해결방안 제시
- ☐ 토지 활용성 개선으로 이용가치 증대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
 - 모양이 불규칙한 토지경계를 직선으로 정리하여 토지이용성 제고
 -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를 현실경계로 조정하여 토지가치 증대
 - 필지 단위 지표, 지상, 지하정보를 통합관리로 운용 방안 고도화
 - 장기간 방치, 미활용 되는 국공유지의 파악 및 활용도 개선
- ☐ 정확한 토지정보로 국민재산권 보호 및 편익 개선
 - 디지털지적전환을 통한 시민의 재산권보호 및 경계분쟁 방지
 - 누구나 경계점표지등록부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경계위치 확인
 - 첨단 디지털 정보제공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토지정보 확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60호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명칭 :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사업
2. 시 행 자 : 은평구청장
3. 사업지구 :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237-400반지 일대 20,439㎡
4. 지 정 일 : 2016. 08. 25.
5. 지정목적 :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
6. 관 리 청 : 서울특별시(토지관리과)
7. 토지조서 : 붙임1(요약) / 붙임2(지번별 조서)
8. 지정도면 : 생략(서울시청 및 해당 구청에 비치)
9. 시 행 일 : 고시한 날부터 시행.

[붙임 1] 2016년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요약)

○ 사업지구(요약)

지구현황		실시계획 수립일자	사업지구 소유자수 (A)	제외 (공시송달) (B)	사업지구 소유자수 (C)=(A-B)	동의서 징구 현황		사업지구 지정신청	
지구명	불부합 유형					동의 (D)	비율 (D/C)	면적 (㎡)	필지수
신사동제3차 지적재조사사 업지구	도시 /불규칙	2016. 3.14.	83	9	74	51	68.92%	20,439	101

※ 토지면적 기준 동의를 : 20,439㎡ 중 15,873㎡ 동의(77.66%)

[붙임 2] 2015년 서울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지번별 조서)

토지의 지번별조서							
토 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 유 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주소
은평구 신사동	237-342	대	90	개인	유*금	64.04.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가길 **
은평구 신사동	237-343	대	92	개인	지*자	48.02.01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가길 15-*
은평구 신사동	237-344	대	92	개인	박*례	49.07.08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가길 1*
은평구 신사동	237-345	대	89	개인	신*식	42.04.15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가길 1*
은평구 신사동	237-346	대	92	개인	홍*윤	49.09.13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11길 2*
은평구 신사동	237-347	대	89	개인	한*희	48.05.06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11길 25-*
은평구 신사동	237-348	대	89	개인	김*림	38.10.15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11길 27-*
은평구 신사동	237-348	대	89	개인	신*경	56.05.20	경기도 광주시 철골길 53-*
은평구 신사동	237-348	대	89	개인	신*향	59.08.15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11길 27-*
은평구 신사동	237-348	대	89	개인	신*훈	74.12.12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11길 27-*
은평구 신사동	237-349	대	145	개인	송*길	69.08.09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11길 27-*
은평구 신사동	237-349	대	145	개인	진*영	71.12.02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11길 27-*
은평구 신사동	237-351	대	132	개인	장*운	39.11.22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11길 27-*
은평구 신사동	237-352	대	109	개인	김*순	42.04.04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11길 2*
은평구 신사동	237-353	대	89	개인	나*옥	43.11.22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11길 2*
은평구 신사동	237-353	대	89	개인	전*표	55.05.07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3길 22-*
은평구 신사동	237-353	대	89	개인	전*희	74.09.17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12길 12, ***

토 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 유 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주소
은평구 신사동	237-354	대	89	개인	박*옥	47.01.12	
은평구 신사동	237-354	대	89	개인	송*칠	34.02.26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11길 29-*
은평구 신사동	237-354	대	89	개인	전*자	63.07.03	경기도 양주시 일영로 777-**
은평구 신사동	237-355	대	93	구유지	은평구	1118	
은평구 신사동	237-356	대	89	구유지	은평구	1118	
은평구 신사동	237-357	대	89	개인	여*경	68.12.05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 309-*, ***
은평구 신사동	237-357	대	89	개인	여*백	65.07.29	서울특별시은평구가좌로11길24-**, *층
은평구 신사동	237-358	대	89	개인	선*이	67.01.16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5길 16-*, *- ***
은평구 신사동	237-358	대	89	개인	이*진	71.07.07	경기도 화성시 발안남로 66, ***- ****
은평구 신사동	237-358	대	89	개인	이*숙	63.03.15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11길 29-*, ***
은평구 신사동	237-359	대	89	개인	서*화	46.02.10	강원도 평창군 상안미옛길 136-**
은평구 신사동	237-360	대	89	개인	김*기	46.10.04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11길 **
은평구 신사동	237-360	대	89	개인	이*순	73.02.2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77길 45, ***- ***
은평구 신사동	237-360	대	89	개인	정*도	37.09.25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11길 **, 층
은평구 신사동	237-360	대	89	개인	홍*비	43.01.23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11길 **
은평구 신사동	237-361	대	89	개인	진*기	70.09.03	경상남도 진주시 순환로 425-61, ***- ***
은평구 신사동	237-362	대	89	개인		46.11.21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11길 31-*
은평구 신사동	237-363	대	116	구유지	은평구	1118	

토 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 유 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주소
은평구 신사동	237-364	대	132	개인	모*표	58.06.15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11길 31-4
은평구 신사동	237-365	대	96	개인	홍8리	84.04.27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62, 311- 601
은평구 신사동	237-366	대	89	개인	안*순	41.08.09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11길 33 (신사동)
은평구 신사동	237-367	대	99	개인	양*일	65.01.16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11길 33-1 (신사동)
은평구 신사동	237-368	대	152	구유지	은평구	1118	
은평구 신사동	237-369	대	142	개인	임*명	70.05.16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11길 33-*
은평구 신사동	237-398	대	99	개인		76.02.27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가길 1*
은평구 신사동	237-400	대	89	개인	송*순		
은평구 신사동	237-401	대	89	개인	전*식	40.08.14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가길 9-*
은평구 신사동	237-402	대	89	개인		37.06.04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터널로127-*,지층
은평구 신사동	237-403	대	155	개인	이*례	37.03.23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가길 *-**
은평구 신사동	237-403	대	155	개인	함*기	84.10.13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가길 *-**
은평구 신사동	237-404	대	93	구유지	은평구	1118	
은평구 신사동	237-405	대	99	개인	김*남	54.06.18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가길 *-*
은평구 신사동	237-406	대	145	개인	임*순	61.04.15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가길 *
은평구 신사동	237-408	대	161	개인	김*예	50.10.11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길 ***-**, 102
은평구 신사동	237-408	대	161	개인	박*현	55.03.15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7길 37, *층 ***
은평구 신사동	237-408	대	161	개인	서*의	83.06.25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18가길 **-*
은평구 신사동	237-408	대	161	개인	오*민	80.11.13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길 **-**, *층 ***
은평구 신사동	237-408	대	161	개인	이*석	74.01.31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천길 ***, 403

토 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 유 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주소
은평구 신사동	237-408	대	161	개인	최*순	60.02.2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1나길 *
은평구 신사동	237-408	대	161	개인	한*자	61.10.12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길 ***-**, 지 층 ***
은평구 신사동	237-409	대	89	개인	박*영	31.12.02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가길 *
은평구 신사동	237-410	대	89	개인	윤*중		
은평구 신사동	237-411	대	89	개인	윤*효	42.01.03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가길 *
은평구 신사동	237-412	대	89	개인	박*복	62.02.01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길 ***-*
은평구 신사동	237-413	대	89	개인	신*철	55.08.18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11길 **
은평구 신사동	237-414	대	92	개인	이*미	65.08.16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 ***, 101- ****
은평구 신사동	237-415	대	96	개인	김*현		
은평구 신사동	237-416	대	89	개인	손*숙	67.05.11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길 1*
은평구 신사동	237-417	대	92	개인	이*순	41.03.26	전라남도 보성군 칠읍길 18-*
은평구 신사동	237-418	대	89	개인	김*정	69.02.25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길 **
은평구 신사동	237-419	대	89	개인	김*학	29.07.25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길 20-*
은평구 신사동	237-420	대	89	개인	정*욱	65.10.15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길 18-*
은평구 신사동	237-420	대	89	개인	조*경	65.12.22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길 18-*
은평구 신사동	237-421	대	89	개인	김*배	57.02.25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길 18-*
은평구 신사동	237-422	대	89	개인	김*영	67.06.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길 20-*
은평구 신사동	237-422	대	89	개인	김*기	68.10.03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길 20-*

토 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 유 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주소
은평구 신사동	237-423	대	89	개인	장*순	58.12.12	
은평구 신사동	237-424	대	89	개인	강*중	46.01.23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길 18-*
은평구 신사동	237-425	대	89	개인	손*숙	80.12.0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77-*
은평구 신사동	237-426	대	89	개인	노*순	41.01.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길 ***-**
은평구 신사동	237-427	대	89	개인	전*윤	52.03.20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길 ***-**
은평구 신사동	237-428	대	89	개인	하*	39.0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길 ***-**
은평구 신사동	237-429	대	93	개인	정*순	52.07.22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가길 ***-**
은평구 신사동	237-430	대	89	개인	김*금	44.10.27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가길 ***-**
은평구 신사동	237-431	대	89	개인	박*자	45.10.26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가길 ***-**
은평구 신사동	237-432	대	92	개인	남*순	48.09.28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가길 ***-**
은평구 신사동	237-432	대	92	개인	남*순	48.09.28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가길 ***-**
은평구 신사동	237-432	대	92	개인	안*광	73.07.21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가길 ***-**
은평구 신사동	237-432	대	92	개인	안*영	77.03.09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 ***- ***
은평구 신사동	237-433	대	89	구유지	은평구	1118	
은평구 신사동	237-434	대	89	개인	양*식	71.09.21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 ** ***-****
은평구 신사동	237-435	대	89	개인	김*연	44.05.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길 ***-**
은평구 신사동	237-436	대	89	개인	박*삼	63.02.14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길 ***-*
은평구 신사동	237-437	대	89	개인	박*현	78.01.05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 ***, ***-****

토 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 유 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주소
은평구 신사동	237-438	대	89	개인	양*식	71.09.21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 ***, ***-****
은평구 신사동	237-439	대	89	개인	양*식	71.09.21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 ***, ***-****
은평구 신사동	237-440	대	89	개인	유*석	79.01.01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길 **, *- ***
은평구 신사동	237-441	대	89	개인	정*조	42.01.28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남로 *** *-**
은평구 신사동	237-442	대	89	개인	문*선	60.06.08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길 ***-
은평구 신사동	237-443	대	89	개인	박*식	66.03.29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길 ***-
은평구 신사동	237-444	대	89	개인	박*삼	63.02.14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길 ***-
은평구 신사동	237-445	대	89	개인	김*옥	63.04.28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터널로9길**, *층
은평구 신사동	237-446	대	643	개인	강*희	68.03.23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길 11-2, 가 - 204
은평구 신사동	237-446	대	643	개인	국**산 신탁주 식회사	11011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
은평구 신사동	237-446	대	643	개인	권*녀	43.02.15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길 11-2, 가 - 401
은평구 신사동	237-446	대	643	개인	권*혁	59.01.12	강원도 삼척시 강원남부로 1826-20
은평구 신사동	237-446	대	643	개인	김*록	68.11.27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길 ***-, *층 ***
은평구 신사동	237-446	대	643	개인	김*용	04.06.22	
은평구 신사동	237-446	대	643	개인	김*아	66.09.12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길 ***-, *층 ***
은평구 신사동	237-446	대	643	개인	김*일	71.10.14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 107, ***-****
은평구 신사동	237-446	대	643	개인	김*남	58.06.06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20길 *-*, ***
은평구 신사동	237-446	대	643	개인	김*년	48.01.24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길 ***-, 2층 203

토 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 유 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주소
은평구 신사동	237-446	대	643	개인	김*철	57.06.17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길 ***-, 가 - 202
은평구 신사동	237-446	대	643	개인	김*규	73.06.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길 ***-, 가 - 304
은평구 신사동	237-446	대	643	개인	김*석	60.10.13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4로 **, 805- 401
은평구 신사동	237-446	대	643	개인	오*록	58.05.27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길 ***-, 가 - 302
은평구 신사동	237-446	대	643	개인	임*묵	67.01.12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길 ***-, 가 - 404
은평구 신사동	237-446	대	643	개인	정*례	65.07.08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4로 **, 805- 401
은평구 신사동	237-446	대	643	개인	허*경	73.12.21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길 ***-, 가 - 404
은평구 신사동	237-446	대	643	개인	홍*배	70.02.18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7가길 **, 401
은평구 신사동	237-453	대	267	개인	김*경	67.12.07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길 ***-, 나 - 202
은평구 신사동	237-453	대	267	개인	민*기	57.03.0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82번길 ***-, 가- 101
은평구 신사동	237-453	대	267	개인	박*권	57.03.17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길 ***-, 나 - B102
은평구 신사동	237-453	대	267	개인	유*영	73.01.07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995, ***- ****
은평구 신사동	237-453	대	267	개인	이*화	50.04.15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길 ***-, 나 - ***
은평구 신사동	237-453	대	267	개인	이*기	77.03.0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168번길 ***-, ***
은평구 신사동	237-453	대	267	개인	정*희	42.10.30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길 ***-, 나 - ***
은평구 신사동	237-453	대	267	개인	정*배	64.10.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길 ***-, 나 - ***
은평구 신사동	237-456	대	89	개인	남*호	67.01.0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19길 *, ***
은평구 신사동	237-457	대	298	개인	강*자	65.09.20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5길 ***-, 3- ***

토 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 유 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주소
은평구 신사동	237-457	대	298	개인	김*수	42.04.21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길 ***-*, 다 - ***
은평구 신사동	237-457	대	298	개인	김*자	56.10.20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길 ***-*, 다 -***
은평구 신사동	237-457	대	298	개인	김*길	68.03.16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길 ***-*, 다 - ***
은평구 신사동	237-457	대	298	개인	민*태	75.03.16	경기도 광명시 철산로 57,****- ****
은평구 신사동	237-457	대	298	개인	박*수	61.02.17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로9길 ***-*, 다- ***
은평구 신사동	237-457	대	298	개인	양*희	75.04.25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길 ***-*, 다 동 지층 102
은평구 신사동	237-457	대	298	개인	이*삼	75.11.01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길 ***-*, 다 동 지층 ***
은평구 신사동	237-457	대	298	개인	임*호	63.01.16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5길 ***-*, 3- ***
은평구 신사동	237-457	대	298	개인	임*순	59.11.11	경기도 오산시 현충로 9, ***- ***
은평구 신사동	237-460	대	233	개인	김*록	74.11.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응암로 33,***-***
은평구 신사동	237-460	대	233	개인	박*진	78.02.16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길 ***-*, 101
은평구 신사동	237-460	대	233	개인	최*은	43.12.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22마길 28, ***
은평구 신사동	237-460	대	233	개인	최*희	54.01.26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3길 ***-*, 101- 702
은평구 신사동	237-462	대	92	개인	백*찬	65.08.0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104번길 ***-*, *층
은평구 신사동	237-463	대	188	구유지	은평구	1118	
은평구 신사동	237-464	대	308	개인	배*임	61.10.28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길 ***-*, * - ***
은평구 신사동	237-464	대	308	개인	우*하	59.05.25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길 ***-*, * - ***
은평구 신사동	237-464	대	308	개인	이*숙	60.03.25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길 ***-*, *층 ***

토 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 유 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주소
은평구 신사동	237-464	대	308	개인	이*건	69.08.29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 ***- ***
은평구 신사동	237-464	대	308	개인	임*철	62.07.17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길 **-* , 마 - ***
은평구 신사동	237-464	대	308	개인	임*자	49.10.07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길 **-* 마- ***
은평구 신사동	237-464	대	308	개인	장*식	64.08.15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길 **-* , 마 - ***
은평구 신사동	237-464	대	308	개인	최*자	63.07.0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7길 ***-*, ***
은평구 신사동	237-467	대	89	개인	박*옥	55.09.23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길 **-*
은평구 신사동	237-468	대	89	개인	류*순	70.11.04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터널로9길**-* , 2층
은평구 신사동	237-469	대	92	개인	배*영	76.03.10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12길 **-* , ***
은평구 신사동	237-469	대	92	개인	배*진	79.12.31	서울특별시 송파구 토성로7길 *
은평구 신사동	237-469	대	92	개인	배*현	77.09.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선수촌로 ***, ***- ***
은평구 신사동	237-469	대	92	개인	배*현	82.02.28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 2613
은평구 신사동	237-469	대	92	개인	황*숙	47.11.10	서울특별시 송파구 토성로7길 *
은평구 신사동	237-474	대	89	개인	윤*섭	41.09.20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가길 *-*
은평구 신사동	237-485	임야	574	시유지	서울특 별시	411	
은평구 신사동	237-486	대	835	개인	강*희	48.05.04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가길 **-* , *- ***
은평구 신사동	237-486	대	835	개인	김*규	65.03.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가길 **-* , *- ***
은평구 신사동	237-486	대	835	개인	김*애	53.09.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가길 **-* , *- ***
은평구 신사동	237-486	대	835	개인	김*수	57.12.17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가길 **-* , *- ***

토 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 유 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주소
은평구 신사동	237-486	대	835	개인	김*곤	48.01.27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가길 ***-, *- ***
은평구 신사동	237-486	대	835	개인	류*현	83.02.02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 ***- ***
은평구 신사동	237-486	대	835	개인	박*기	64.12.26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
은평구 신사동	237-486	대	835	개인	박8레	44.0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가길 ***-, *- ***
은평구 신사동	237-486	대	835	개인	박*흥	62.03.17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가길 ***-, *- ***
은평구 신사동	237-486	대	835	개인	석*옥	67.03.26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51길 **
은평구 신사동	237-486	대	835	개인	송*영	82.07.16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가길 ***-, *- ***
은평구 신사동	237-486	대	835	개인	신*자	50.02.13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 105- 301
은평구 신사동	237-486	대	835	개인	엄*희	68.02.27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1길 ***-, 102- 203
은평구 신사동	237-486	대	835	개인	오*권	61.08.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가길 ***-, *- ***
은평구 신사동	237-486	대	835	개인	오*선	59.06.14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28가길*-*, 1층
은평구 신사동	237-486	대	835	개인	윤*호	53.02.21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21길 **, ***- ***
은평구 신사동	237-486	대	835	개인	윤8기	67.06.06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6길 **, *층
은평구 신사동	237-486	대	835	개인	윤*한	76.09.07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 501
은평구 신사동	237-486	대	835	개인	이*선	56.11.15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가길 11-1, B- 103
은평구 신사동	237-486	대	835	개인	이*순	56.09.13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가길 ***-, *- ***
은평구 신사동	237-486	대	835	개인	이*오	59.12.25	전라북도 순창군 구림로 462
은평구 신사동	237-486	대	835	개인	이*기	36.10.02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가길 ***-, *- ***

토 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 유 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주소
은평구 신사동	237-486	대	835	개인	이*순	63.09.01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5가길 13-1, 3층 301
은평구 신사동	237-486	대	835	개인	임*문		
은평구 신사동	237-486	대	835	개인	정*오	62.01.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16길 34-5 지층
은평구 신사동	237-486	대	835	개인	정**자	40.02.12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가길 ***-, *- ***
은평구 신사동	237-486	대	835	개인	정*규	55.06.30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가길 ***-, *- ***
은평구 신사동	237-486	대	835	개인	정*길	61.10.26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가길 ***-, *- ***
은평구 신사동	237-486	대	835	개인	정*석	62.01.14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51길 **
은평구 신사동	237-486	대	835	개인	최*정	73.11.02	충청남도 부여군 토동로19번길 ***-***
은평구 신사동	237-486	대	835	개인	최*주	34.01.16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가길 ***-, *- ***
은평구 신사동	237-486	대	835	개인	홍*희	74.01.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13길 **, ***-***
은평구 신사동	237-486	대	835	개인	황*주	49.01.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가길 ***-, *- ***
은평구 신사동	237-487	대	494	개인	강*희	48.05.04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가길 ***-, *- ***
은평구 신사동	237-487	대	494	개인	김*규	65.03.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가길 ***-, *- ***
은평구 신사동	237-487	대	494	개인	김*애	53.09.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가길 ***-, *- ***
은평구 신사동	237-487	대	494	개인	김*수	57.12.17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가길 ***-, *- ***
은평구 신사동	237-487	대	494	개인	김*곤	48.01.27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가길 ***-, *- ***
은평구 신사동	237-487	대	494	개인	류*현	83.02.02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35, 210- 303

토 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 유 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주소
은평구 신사동	237-487	대	494	개인	박*기	64.12.26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775-11
은평구 신사동	237-487	대	494	개인	박*레	44.0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가길 ****, *- ***
은평구 신사동	237-487	대	494	개인	박*흥	62.03.17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가길 ****, *- ***
은평구 신사동	237-487	대	494	개인	석*옥	67.03.26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51길 13
은평구 신사동	237-487	대	494	개인	송*영	82.07.16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가길 ****, *- ***
은평구 신사동	237-487	대	494	개인	신*자	50.02.13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 105- 301
은평구 신사동	237-487	대	494	개인	엄*희	68.02.27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1길 ***-, 102- 203
은평구 신사동	237-487	대	494	개인	오*권	61.08.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가길 ****, *- ***
은평구 신사동	237-487	대	494	개인	오*선	59.06.14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28가길 6-7,1층
은평구 신사동	237-487	대	494	개인	윤*호	53.02.21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21길 **, 102- 704
은평구 신사동	237-487	대	494	개인	윤*기	67.06.06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6길 **, 3층
은평구 신사동	237-487	대	494	개인	윤*한	76.09.07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 501
은평구 신사동	237-487	대	494	개인	이*선	56.11.15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가길 ***-, *- ***
은평구 신사동	237-487	대	494	개인	이*순	56.09.13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가길 ***-, *- ***
은평구 신사동	237-487	대	494	개인	이*오	59.12.25	전라북도 순창군 구림로 ***
은평구 신사동	237-487	대	494	개인	이*기	36.10.02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가길 ***-, *- ***
은평구 신사동	237-487	대	494	개인	이*순	63.09.01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5가길 ***-, 3층 301
은평구 신사동	237-487	대	494	개인	임*문		

토 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 유 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주소
은평구 신사동	237-487	대	494	개인	정8오	62.01.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16길 *** 지층
은평구 신사동	237-487	대	494	개인	정**자	40.02.12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가길 ***-*, *- ***
은평구 신사동	237-487	대	494	개인	정*규	55.06.30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가길 ***-*, *- ***
은평구 신사동	237-487	대	494	개인	정*길	61.10.26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가길 ***-*, *- ***
은평구 신사동	237-487	대	494	개인	정*석	62.01.14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51길 **
은평구 신사동	237-487	대	494	개인	최*정	73.11.02	충청남도 부여군 토동로19번길 ***-**
은평구 신사동	237-487	대	494	개인	최*주	34.01.16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가길 ***-*, *- ***
은평구 신사동	237-487	대	494	개인	홍*희	74.01.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13길 **, 101- 603
은평구 신사동	237-487	대	494	개인	황*주	49.01.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가길 ***-*, *- ***
은평구 신사동	237-489	도로	251	구유지	은평구	1118	
은평구 신사동	237-490	임야	34	시유지	서울특 별시	411	
은평구 신사동	237-491	임야	44	구유지	은평구	1118	
은평구 신사동	237-516	대	86	개인	이*열	61.02.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10길 **, ***
은평구 신사동	237-517	대	47	개인	김*근	53.01.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길 *-*
은평구 신사동	237-520	대	10	시유지	서울특 별시	411	
은평구 신사동	237-530	도로	4841	구유지	은평구	1118	
은평구 신사동	산86-4	임야	1686	개인	김*서	40.12.17	서울특별시관악구 관악로12길 **, ***호
은평구 신사동	산86-10	임야	105	개인	최*연	68.05.27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99길 **, 101- 1204

토 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 유 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주소
은평구 신사동	산86-11	대	453	개인	김*숙	67.03.03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길 **, *- ***
은평구 신사동	산86-11	대	453	개인	김*아	78.07.18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길 **, *- ***
은평구 신사동	산86-11	대	453	개인	심*한	73.07.07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길 **, *- ***
은평구 신사동	산86-11	대	453	개인	안*준	67.09.19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길 **, *- ***
은평구 신사동	산86-11	대	453	개인	이*선	64.05.22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길 **, *- ***
은평구 신사동	산86-11	대	453	개인	이*주	73.02.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재울미래로 *, 122- 1101
은평구 신사동	산86-11	대	453	개인	정*주	76.02.01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길 **, *- ***
은평구 신사동	산86-11	대	453	개인	정*화	81.12.04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공원로**길 **, 302
은평구 신사동	산86-11	대	453	개인	정*한	79.11.27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11길 **, 302
은평구 신사동	산86-11	대	453	개인	최*남	52.08.04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길 **, *- ***
은평구 신사동	산86-11	대	453	개인	한*자	42.05.16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길 **, *- ***
은평구 신사동	산86-11	대	453	개인	허*수	74.12.12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9길 **, *- ***
은평구 신사동	산93-7	임야	713	시유지	서울 특별시	411	
은평구 신사동	산93-62	도로	648	시유지	서울 특별시	411	
은평구 신사동	산93-63	임야	70	시유지	서울 특별시	411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61호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도곡동, 일원동 일대의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변경) 취지

- 택지개발사업에 의해 조성된 택지에 대하여 주변 여건변화에 대해 효율적 대처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개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개포동 157번지 일대	20,070	
	개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개포동 1236-20번지 일대	25,070	
	개포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도곡동410, 개포동 660, 일원동 619번지 일대	3,937,263	
	개포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1-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개포동 1266번지 일대	219,759	
	개포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1-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도곡동 411번지 일대	499,298	
	계		4,701,460	
변경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 개포동 157번지 일대 - 도곡동 410번지 일대 - 일원동 619, 663번지 일대	5,268,557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사유서

구분	위치	면 적(㎡)	변 경 사 유
변경	개포동,도곡동,일원동, 대치동 일대	5,268,557	●구역명 변경 - 개포택지개발지구 구역 전체에 대한 합리적 관리를 위한 구역 변경 ●구역 면적 증가(567,097㎡) - 2-1지구 : 161,574㎡ - 2-2지구 : 31,512㎡ - 4지구 : 374,011㎡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4,701,460	567,097	5,268,557	100.0	
주거지역	4,682,246		5,112,790	97.0	
제1종일반주거지역	970,155	증)140,952	1,111,107	21.1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768,010	증)160,687	928,697	17.6	
제2종일반주거지역	1,499,804	증)113,742	1,613,546	30.6	
제3종일반주거지역	1,400,869	증)15,163	1,416,032	26.9	
준주거지역	43,408		43,408	0.8	
일반상업지역	19,214	증)136,553	155,767	3.0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구 분	위 치	용 도 지 역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제1종일반주거지역	- 도곡동 467-6번지 일원 - 개포동 171번지 일원 - 일원동 629번지 일원	970,155	1,111,107	구역편입 142,254㎡ 금회변경 감)1,302㎡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768,010	928,697	- 구역편입 159,385㎡ - 금회변경 증)1,302㎡
제2종일반주거지역		1,499,804	1,613,546	- 구역편입 113,742㎡
제3종일반주거지역		1,400,869	1,416,032	- 구역편입 15,163㎡
일반상업지역		19,214	155,767	- 구역편입 136,553㎡

2) 용도지구 결정조서

가) 미관지구

-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지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지구중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지)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1-1지구, 1-2지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4지구)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세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⑤	미관 지구	역사문화 미관지구	양재대로(양재I.C ~ 수서I.C) (개포동 1163-8~일원동645-13)	150,000 (6,987)	6,250 (583)	양측 12	서고시373호 (90.11. 7)	

주1) 괄호 내용은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 4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해당사항임.

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교통시설

가) 도 로

(1) 도로결정(변경)조서

-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지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지구중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지)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1-1지구, 1-2지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2-1지구)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m)								
기정	광로	3	19	40	주간선	35,306 (525.6)	삼전동 (광2-18)	방화동 (중1-239)	일반도로		건고503 (69.8.27)	
변경	광로	3	19	40	주간선	35,306 (525.6)	삼전동 (광2-18)	방화동 (중1-239)	일반도로		건고503 (69.8.27)	
신설	중로	1	242	20	집산 도로	504	광2-18	중1-239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260	15	국지 도로	105	광3-19	중1-242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261	15	국지 도로	171	중1-242	중2-253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26	8	국지 도로	68	중1-242	소3-404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27	8	국지 도로	68	중1-242	소3-405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28	8	국지 도로	59	중2-261	도곡동 467-23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404	4	특수 도로	35	광3-19	중2-26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405	4	특수 도로	38	원충녹지 16	중2-27	보행자 전용도로			

주1) 연장의 괄호 내용은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2-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해당사항임.

■ 도로변경 사유서 : (2-1지구)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광로 3-19	· 폭원 변경 - 폭원 40m → 48m - 연장 : 96m	•남부순환로 버스정류장 가변차로 확보 구간 도로 결정
-	중로 1-242	· 신설(중로 1류) - 폭원 : 20m - 연장 : 504m	•기개설된 현황 도로에 대하여 중로 1류로 신설
-	중로 2-260	· 신설(중로 2류) - 폭원 : 15m - 연장 : 105m	•기개설된 현황 도로에 대하여 중로 2류로 신설
-	중로 2-261	· 신설(중로 2류) - 폭원 : 15m - 연장 : 171m	
-	소로 2-26	· 신설(소로 2류) - 폭원 : 8m - 연장 : 68m	•기개설된 현황 도로에 대하여 소로 2류로 신설
-	소로 2-27	· 신설(소로 2류) - 폭원 : 8m - 연장 : 68m	
-	소로 2-28	· 신설(소로 2류) - 폭원 : 8m - 연장 : 59m	
-	소로 3-404	· 신설(소로 3류) - 폭원 : 4m - 연장 : 35m	•기개설된 현황 도로에 대하여 소로 3류로 신설
-	소로 3-405	· 신설(소로 3류) - 폭원 : 4m - 연장 : 38m	

-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2-2지구)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m)								
기정	소로	3	242	6	국지 도로	132	중1-239	산116	일반 도로		건고405 (81.12.24)	
변경	소로	3	242	6	국지 도로	132	중1-239	소3-248	일반 도로		건고405 (81.12.24)	
기정	소로	3	243	6	국지 도로	91	소3-242	소3-247	일반 도로		건고405 (81.12.24)	
기정	소로	3	245	6	국지 도로	130	소3-243	개포 산118	일반 도로		건고405 (81.12.24)	
변경	소로	3	245	6	국지 도로	130	소3-243	소3-248	일반 도로		건고405 (81.12.24)	
기정	소로	3	246	6	국지 도로	141	소3-243	개포 산122	일반 도로		건고405 (81.12.24)	
변경	소로	3	246	6	국지 도로	141	소3-243	소3-248	일반 도로		건고405 (81.12.24)	
기정	소로	3	247	6	국지 도로	201 (129)	중1-239	개포 산124	일반 도로		건고405 (81.12.24)	
변경	소로	3	247	6	국지 도로	201 (129)	중1-239	소3-248	일반 도로		건고405 (81.12.24)	
기정	소로	3	249	6	국지 도로	71	소3-247	소3-254	일반 도로		건고405 (81.12.24)	
기정	소로	3	250	6	국지 도로	72	소3-247	소3-254	일반 도로		건고405 (81.12.24)	
기정	소로	3	251	6	국지 도로	73	소3-247	소3-254	일반 도로		건고405 (81.12.24)	
기정	소로	3	252	6	국지 도로	74	소3-247	소3-254	일반 도로		건고405 (81.12.24)	

주1) 연장의 괄호 내용은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2-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해당사항임.

■ 도로변경 사유서 : (2-2지구)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3-242	소로 3-242	· 종점 변경 - 종점: 개포 산 116 → 소3-248	• 개포택지개발사업 당시 작성되었던 조서 오류 정정으로 인한 종점 변경
소로 3-245	소로 3-245	· 종점 변경 - 종점: 개포 산 118 → 소3-248	• 개포택지개발사업 당시 작성되었던 조서 오류 정정으로 인한 종점 변경
소로 3-246	소로 3-246	· 종점 변경 - 종점: 개포 산 122 → 소3-248	• 개포택지개발사업 당시 작성되었던 조서 오류 정정으로 인한 종점 변경
소로 3-247	소로 3-247	· 종점 변경 - 종점: 개포 산 124 → 소3-248	• 개포택지개발사업 당시 작성되었던 조서 오류 정정으로 인한 종점 변경

-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4지구)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m)								
기정	광로	1	28	50	주간선	13,250 (606)	천호동 103광장 (중1-232)	과천시 구역계 (대3-108)	일반도 로		서고406 (87.6.9)	
기정	대로	2	68	30	보조 간선	1,234 (592)	광2-172 (대3-108)	광2-73 (중1-232)	일반도 로		건고481 (81.12.24)	
기정	중로	1	232	20	보조 간선	549	광1-28	대2-68	일반도 로		건고405 (81.12.24)	
기정	중로	2	245	15	집산 도로	249	대2-68	중2-246	일반도 로		건고405 (81.12.24)	
기정	중로	2	246	15	집산 도로	587	대3-108	중1-232	일반도 로		건고405 (81.12.24)	
기정	소로	1	1	10	집산 도로	213	소2-1	중2-246	일반도 로		건고405 (81.12.24)	
기정	소로	1	2	10	집산 도로	239	소1-3	중2-246	일반도 로		건고405 (81.12.24)	
기정	소로	1	3	10	집산 도로	819	소1-1	소1-2	일반도 로		건고405 (81.12.24)	
기정	소로	1	4	10	집산 도로	267	중2-246	대2-68	일반도 로		건고405 (81.12.24)	
기정	소로	1	5	10	집산 도로	222	중2-246	소2-4	일반도 로		건고405 (81.12.24)	
기정	소로	1	6	10	국지 도로	58	중2-245	소1-5	일반도 로		건고405 (81.12.24)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383	소1-1	소1-1	일반도 로		건고405 (81.12.24)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514	소1-1	소1-2	일반도 로		건고405 (81.12.24)	
기정	소로	2	3	8	국지 도로	120	소1-4	중2-245	일반도 로		건고405 (81.12.24)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414	중2-246	소1-5	일반도 로		건고405 (81.12.24)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115	소2-1	소3-3	일반도 로		건고405 (81.12.24)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122	소2-1	소3-3	일반도 로		건고405 (81.12.24)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110	소2-1	소1-1	일반도 로		건고405 (81.12.24)	
기정	소로	3	4	6	국지 도로	159	소1-3	소1-3	일반도 로		건고405 (81.12.24)	
기정	소로	3	5	6	국지 도로	189	소2-2	소2-2	일반도 로		건고405 (81.12.24)	
기정	소로	3	6	6	국지 도로	165	소1-3	소1-3	일반도 로		건고405 (81.12.24)	
기정	소로	3	7	6	국지 도로	211	소2-2	소2-2	일반도 로		건고405 (81.12.24)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m)								
기정	소로	3	8	6	국지 도로	171	소1-3	소1-3	일반도로		건고405 (81.12.24)	
기정	소로	3	9	6	국지 도로	204	소1-3	소1-3	일반도로		건고405 (81.12.24)	
기정	소로	3	10	6	국지 도로	182	소1-3	소1-3	일반도로		건고405 (81.12.24)	
기정	소로	3	11	6	국지 도로	221	소1-3	소1-3	일반도로		건고405 (81.12.24)	
기정	소로	3	12	6	국지 도로	106	소2-3	소3-13	일반도로		건고405 (81.12.24)	
기정	소로	3	13	6	국지 도로	187	소2-3	소1-4	일반도로		건고405 (81.12.24)	
기정	소로	3	14	6	국지 도로	39	625-8대	소1-5	일반도로		건고405 (81.12.24)	
기정	소로	3	15	6	국지 도로	38	625-17대	소1-5	일반도로		건고405 (81.12.24)	
기정	소로	3	16	6	국지 도로	296	소2-4	소2-4	일반도로		건고405 (81.12.24)	
기정	소로	3	17	6	국지 도로	88	소3-16	소2-4	일반도로		건고405 (81.12.24)	
기정	소로	3	18	6	국지 도로	88	소3-16	소2-4	일반도로		건고405 (81.12.24)	
기정	소로	3	19	6	국지 도로	198	소3-20	소3-20	일반도로		건고405 (81.12.24)	
기정	소로	3	20	6	국지 도로	194	소1-5	소2-4	일반도로		건고405 (81.12.24)	
기정	기타	녹도	1	4	특수 도로	37	소3-13	중2-245	보행자 전용도로		건고405 (81.12.24)	
변경	소로	3	21	4	국지 도로	37	소3-13	중2-245	일반도로			
기정	기타	녹도	2	4	특수 도로	60	중2-245	소1-5	보행자 전용도로		건고405 (81.12.24)	
변경	소로	3	22	4	국지 도로	60	중2-245	소1-5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23	4	일반 도로	20	소2-4	대2-68	일반도로		서고94-81 (94.3.14)	
기정	소로	3	24	4	일반 도로	32	소2-4	중1-232	일반도로		서고94-81 (94.3.14)	
기정	기타	녹도	5	4	특수 도로	193	소1-5	소2-4	보행자 전용도로		건고405 (81.12.24)	
변경	소로	3	25	4	국지 도로	193	소1-5	소2-4	일반도로			
기정	기타	녹도	6	4	특수 도로	17	녹도5	소3-16	보행자 전용도로		건고405 (81.12.24)	
변경	소로	3	26	4	국지 도로	17	소로3-25	소3-16	일반도로			
기정	기타	녹도	7	4	특수 도로	17	소3-19	녹도5	보행자 전용도로		건고405 (81.12.24)	
변경	소로	3	27	4	국지 도로	17	소3-19	소로3-25	일반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종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m)								
기정	기타	녹도	8	4	특수 도로	17	녹도5	소3-16	보행자 전용도로		건고405 (81.12.24)	
변경	소로	3	28	4	국지 도로	17	소로3-25	소3-16	일반도로			
기정	기타	녹도	9	4	특수 도로	18	소3-19	녹도5	보행자 전용도로		건고405 (81.12.24)	
변경	소로	3	29	4	국지 도로	18	소3-19	소로3-25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30	4	일반 도로	32	소2-4	중1-232	일반도로		서고94-81 (94.3.14)	
기정	소로	3	31	4	일반 도로	36	중2-246	소3-20	일반도로		서고94-81 (94.3.14)	
기정	기타	녹도	12	4	특수 도로	20	대3-108	소2-1	보행자 전용도로		건고405 (81.12.24)	
변경	소로	3	32	4	국지 도로	20	대3-108	소2-1	일반도로			
기정	기타	녹도	13	4	특수 도로	20	대3-108	소2-1	보행자 전용도로		건고405 (81.12.24)	
변경	소로	3	33	4	국지 도로	20	대3-108	소2-1	일반도로			
기정	기타	녹도	14	4	특수 도로	37	소2-2	중2-246	보행자 전용도로		건고405 (81.12.24)	
변경	소로	3	34	4	국지 도로	37	소2-2	중2-246	일반도로			
기정	기타	녹도	15	4	특수 도로	101	녹도19	소2-2	보행자 전용도로		건고405 (81.12.24)	
변경	소로	3	35	4	국지 도로	101	소로3-39	소2-2	일반도로			
기정	기타	녹도	16	4	특수 도로	34	소1-1	소3-5	보행자 전용도로		건고405 (81.12.24)	
변경	소로	3	36	4	국지 도로	34	소1-1	소3-5	일반도로			
기정	기타	녹도	17	4	특수 도로	34	소1-1	소3-4	보행자 전용도로		건고405 (81.12.24)	
변경	소로	3	37	4	국지 도로	34	소1-1	소3-4	일반도로			
기정	기타	녹도	18	4	특수 도로	36	소3-4	소3-5	보행자 전용도로		건고405 (81.12.24)	
변경	소로	3	38	4	국지 도로	36	소3-4	소3-5	일반도로			
기정	기타	녹도	19	4	특수 도로	154	녹도18	소1-2	보행자 전용도로		건고405 (81.12.24)	
변경	소로	3	39	4	국지 도로	154	소로3-38	소1-2	일반도로			
기정	기타	녹도	20	4	특수 도로	16	녹도19	소3-5	보행자 전용도로		건고405 (81.12.24)	
변경	소로	3	40	4	국지 도로	16	소로3-39	소3-5	일반도로			
기정	기타	녹도	21	4	특수 도로	16	소3-4	녹도19	보행자 전용도로		건고405 (81.12.24)	
변경	소로	3	41	4	국지 도로	16	소3-4	소로3-39	일반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종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m)								
기정	기타	녹도	22	4	특수도로	16	녹도19	소3-7	보행자 전용도로		건고405 (81.12.24)	
변경	소로	3	42	4	국지도로	16	소로3-39	소3-7	일반도로			
기정	기타	녹도	23	4	특수도로	16	소3-6	녹도19	보행자 전용도로		건고405 (81.12.24)	
변경	소로	3	43	4	국지도로	16	소3-6	소로3-39	일반도로			
기정	기타	녹도	24	4	특수도로	16	녹도19	소3-7	보행자 전용도로		건고405 (81.12.24)	
변경	소로	3	44	4	국지도로	16	소로3-39	소3-7	일반도로			
기정	기타	녹도	25	4	특수도로	16	소3-6	녹도19	보행자 전용도로		건고405 (81.12.24)	
변경	소로	3	45	4	국지도로	16	소3-6	소로3-39	일반도로			
기정	기타	녹도	26	4	특수도로	32	소1-2	소3-9	보행자 전용도로		건고405 (81.12.24)	
변경	소로	3	46	4	국지도로	32	소1-2	소3-9	일반도로			
기정	기타	녹도	27	4	특수도로	32	소1-2	소3-8	보행자 전용도로		건고405 (81.12.24)	
변경	소로	3	47	4	국지도로	32	소1-2	소3-8	일반도로			
기정	기타	녹도	28	4	특수도로	40	소3-8	소3-9	보행자 전용도로		건고405 (81.12.24)	
변경	소로	3	48	4	국지도로	40	소3-8	소3-9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49	4	일반도로	36	소1-3	중2-246	일반도로		서고94-81 (94.3.14)	
기정	기타	녹도	30	4	특수도로	106	녹도31	소1-3	보행자 전용도로		건고405 (81.12.24)	
변경	소로	3	50	4	국지도로	106	소로3-51	소1-3	일반도로			
기정	기타	녹도	31	4	특수도로	83	공원8	녹도35	보행자 전용도로		건고405 (81.12.24)	
변경	소로	3	51	4	국지도로	83	공원8	소로3-55	일반도로			
기정	기타	녹도	32	4	특수도로	15	녹도31	소3-11	보행자 전용도로		건고405 (81.12.24)	
변경	소로	3	52	4	국지도로	15	소로3-51	소3-11	일반도로			
기정	기타	녹도	33	4	특수도로	16	소3-10	녹도31	보행자 전용도로		건고405 (81.12.24)	
변경	소로	3	53	4	국지도로	16	소3-10	소로3-51	일반도로			
기정	기타	녹도	34	3	특수도로	33	소3-11	소1-3	보행자 전용도로		건고405 (81.12.24)	
변경	소로	3	54	3	국지도로	33	소3-11	소1-3	일반도로			
기정	기타	녹도	35	4	특수도로	36	소3-10	소3-11	보행자 전용도로		건고405 (81.12.24)	
변경	소로	3	55	4	국지도로	36	소3-10	소3-11	일반도로			
기정	기타	녹도	36	4	특수도로	34	소3-10	소1-3	보행자 전용도로		건고405 (81.12.24)	
변경	소로	3	56	4	국지도로	34	소3-10	소1-3	일반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종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m)								
기정	소로	3	57	4	일반 도로	33	소1-3	중1-232	일반도로		서고94-81 (94.3.14)	
기정	기타	녹도	38	4	특수 도로	32	소1-3	중1-232	보행자 전용도로		건고405 (81.12.24)	
변경	소로	3	58	4	국지 도로	32	소1-3	중1-232	일반도로			
기정	기타	녹도	39	4	특수 도로	33	소1-3	중1-232	보행자 전용도로		건고405 (81.12.24)	
변경	소로	3	59	4	국지 도로	33	소1-3	중1-232	일반도로			
기정	기타	녹도	40	4	특수 도로	30	소1-3	광1-28	보행자 전용도로		건고405 (81.12.24)	
변경	소로	3	60	4	국지 도로	30	소1-3	광1-28	일반도로			
기정	기타	녹도	41	4	특수 도로	31	소1-3	광1-28	보행자 전용도로		건고405 (81.12.24)	
변경	소로	3	61	4	국지 도로	31	소1-3	광1-28	일반도로			

주1) 연장의 괄호 내용은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4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해당사항임.

■ 도로변경 사유서 : (4지구)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녹도	소로 3류	· 도로 규모 일괄변경 - 녹도 → 소로3류 · 사·종점 변경 - 녹도에서 소로로 변경에 따른 사·종점 변경	• 신축 시 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와의 접 도로 인한 건축허가 불허

2) 공간시설

가) 녹 지

-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지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지구중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지)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1-1지구, 1-2지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2-1지구)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⑩	녹지	완충녹지	광로3-19남측 (남부순환도로변)	25,500 (1,951)	-	25,500 (1,951)	88.12.21	

주1) ()는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2-1지구) 면적임

- 개포택지(단독주택지 4지구)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녹지	완충녹지	광로1-28북측	1,700	-	1,700	건고253 (85.6.11)	
변경	①	녹지	완충녹지	광로1-28북측	1,700 (5,806)	-	17,000 (5,806)	건고253 (85.6.11)	

주1) ()는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4지구) 면적임

■ 녹지 변경사유서 (4지구)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완충녹지	· 면적오류 정정 (조서상) - 면적 : 1,700 → 17,000㎡	· 개포 택지개발사업 당시 작성되었던 조서상의 오류정정으로 인한 면적 변경

나) 공 원

-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지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지구중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지)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1-1지구, 1-2지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2-2지구)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㉑	개포까치	어린이공원	개포동 169-3번지	1,690.2	-	1,690.2	건고296 (83.9.10)	

-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4지구)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㉓	대청	근린공원	일원동 621번지	14,092.2	-	14,092.2	건고148 (83.5.12)	
기정	㉔	일원목련	어린이공원	일원동 658번지	1,606.8	-	1,606.8	건고388 (84.9.28)	

3)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시 장

-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지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지구중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지)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1-1지구, 1-2지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4지구)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③	시장	대규모 점포	일원동647번지일원	1,422.4	-	1,422.4	건고388호 (84. 9. 28)	
기정	④	시장	대규모 점포	일원동679번지일원	1,359.0	-	1,359.0	건고388호 (84. 9. 28)	

주1) 향후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될 경우 공공기여 등을 검토하여 폐지

4)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학 교

-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지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지구중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지)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1-1지구, 1-2지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4지구)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영희초등 학교	초등학교	일원동 617번지	15,975.2	-	15,975.2	건고 388 (84.9.28)	4지구
기정	②	중동고등 학교	고등학교	일원동 618번지	21,701.8	-	21,701.8	건고 388 (84.9.28)	4지구

■ 건축범위 결정조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①	영희초등학교	30%이하	120%이하	5층이하
②	중동고등학교	30%이하	120%이하	5층이하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1) 최대개발규모 결정조서

-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지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지구중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지)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1-1지구, 1-2지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2-1지구, 2-2지구, 4지구)

구분	최대개발규모(㎡)	비 고
2-1지구	-	• 기존 필지규모가 초과하는 경우 예외 적용 • 상이한 제한을 받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합병하거나 공동개발하는 경우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필지의 최대 개발규모 적용
2-2지구	600	
4지구	800	

2) 가구 계획

-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지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지구중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지)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1-1지구, 1-2지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2-1지구)

도면표시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치	비고
C1	C1	14,000.4	도곡동 467-6대	
C2	C2	8,059.6	도곡동 467-7대 외 2필지	
C3	C3	8,269.2	도곡동 467-12대 외 4필지	
C4	C4	20,659.9	도곡동 467-4대 외 3필지	
C5	C5	17,341.6	도곡동 467-18대 외 6필지	
C6	C6	51,686.6	도곡동 467대 외 2필지	

-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2-2지구)

도면표시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치	비고
A1	A1	4,360.6	개포동 172-2대 외 10필지	
A2	A2	2,949.5	개포동 168-5대 외 10필지	
A3	A3	2,973.0	개포동 171대 외 14필지	
A4	A4	3,511.0	개포동 170-19대 외 25필지	
A5	A5	1,053.1	개포동 169대 외 5필지	
A6	A6	1,182.9	개포동 169-4대 외 5필지	
A7	A7	1,769.5	개포동 165대 외 8필지	
A8	A8	1,761.5	개포동 164대 외 9필지	
A9	A9	1,861.5	개포동 163대 외 9필지	
A10	A10	1,890.4	개포동 162대 외 9필지	
A11	A11	892.5	개포동 161대 외 5필지	

-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4지구)

도면표시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치	비고
B1	B1	2,1701.2	일원동 618학 외 1필지	
B2	B2	15,975.2	일원동 617학 외 1필지	
B3	B3	2,262.9	일원동 619대 외 6필지	
B4	B4	3,665.9	일원동 620대 외 17필지	
B5	B5	3,665.9	일원동 622대 외 17필지	
B6	B6	3,975.4	일원동 623대 외 19필지	
B7	B7	3249.4	일원동 624대 외 8필지	
B8	B8	2,644.5	일원동 639대 외 7필지	
B9	B9	5,872.6	일원동 625대 외 29필지	
B10	B10	3,873.1	일원동 629대 외 19필지	
B11	B11	2,758.9	일원동 630대 외 13필지	
B12	B12	2,795.6	일원동 631대 외 13필지	
B13	B13	2,768.3	일원동 632대 외 13필지	
B14	B14	1,920.9	일원동 633대 외 9필지	
B15	B15	3,871.5	일원동 638대 외 19필지	
B16	B16	3,647.2	일원동 640대 외 14필지	
B17	B17	5,796.2	일원동 626대	
B18	B18	2,213.6	일원동 628대 외 9필지	
B19	B19	1,925.1	일원동 634대 외 9필지	
B20	B20	4,146.1	일원동 635대 외 20필지	
B21	B21	3,183.9	일원동 627대 외 15필지	
B22	B22	3,640.7	일원동 636대 외 17필지	
B23	B23	2,141.0	일원동 637대 외 9필지	
B24	B24	3,224.1	일원동 641대 외 13필지	
B25	B25	4,948.8	일원동 683대 외 18필지	
B26	B26	3,100.0	일원동 684대 외 8필지	
B27	B27	3,700.0	일원동 682대 외 13필지	
B28	B28	3,544.9	일원동 685대 외 16필지	
B29	B29	3,745.3	일원동 686대 외 16필지	
B30	B30	3,973.8	일원동 681대 외 17필지	
B31	B31	2,792.0	일원동 687대 외 7필지	
B32	B32	3,425.7	일원동 677대 외 12필지	
B33	B33	3,397.8	일원동 663대 외 15필지	
B34	B34	2,263.5	일원동 678대 외 8필지	
B35	B35	1,358.9	일원동 679대	
B36	B36	2,300.3	일원동 676대 외 9필지	
B37	B37	574.3	일원동 675대 외 1필지	
B38	B38	573.3	일원동 674대 외 2필지	

도면표시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치	비고
B39	B39	1,575.4	일원동 671대 외 7필지	
B40	B40	1,627.7	일원동 671-1대 외 7필지	
B41	B41	2,651.7	일원동 670대 외 14필지	
B42	B42	570.5	일원동 669대 외 2필지	
B43	B43	572.4	일원동 668대 외 2필지	
B44	B44	3,624.1	일원동 664대 외 17필지	
B45	B45	1,906.0	일원동 680대 외 8필지	
B46	B46	1,815.9	일원동 673대 외 7필지	
B47	B47	2,896.7	일원동 672대 외 13필지	
B48	B48	1,898.8	일원동 667대 외 9필지	
B49	B49	2,811.9	일원동 665대 외 13필지	
B50	B50	3,983.4	일원동 666대 외 10필지	
B51	B51	3,269.9	일원동 656대 외 15필지	
B52	B52	5039.0	일원동 642대 외 22필지	
B53	B53	2563.0	일원동 662대 외 11필지	
B54	B54	1,288.8	일원동 661대 외 5필지	
B55	B55	2,534.2	일원동 657대 외 11필지	
B56	B56	1,708.7	일원동 655대 외 7필지	
B57	B57	1,727.3	일원동 654대 외 8필지	
B58	B58	3,111.3	일원동 649대 외 15필지	
B59	B59	615.0	일원동 650대 외 2필지	
B60	B60	659.0	일원동 651대 외 2필지	
B61	B61	2,960.4	일원동 648대 외 13필지	
B62	B62	1,422.4	일원동 647대	
B63	B63	3,772.5	일원동 643대 외 14필지	
B64	B64	2,082.0	일원동 660대 외 9필지	
B65	B65	2,008.5	일원동 659대 외 9필지	
B66	B66	3,311.5	일원동 653대 외 15필지	
B67	B67	2,481.2	일원동 652대 외 11필지	
B68	B68	2,196.2	일원동 646대 외 9필지	
B69	B69	3,017.4	일원동 644대 외 10필지	
B70	B70	4,897.2	일원동 645대 외 13필지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용도

가) 불허용도

-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지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지구중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지)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1-1지구, 1-2지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2-1지구, 2-2지구, 4지구)

구분		도면 표시	용 도	비고
불허 용도	전층	A	●공동주택(아파트),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기존 종교시설 제외) 등	●적용구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R1)
		B	●공동주택(아파트),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동식물 관련시설(화초·분재 등의 온실 제외)	●적용구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R2,R2-a)
		C	●공동주택(아파트),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동식물관련시설(화초·분재 등의 온실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	●적용구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R3)
		D	●공동주택(아파트),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동식물관련시설(화초·분재 등의 온실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	●적용구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이면부(R4)
		E	●공동주택(아파트), 공장,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동식물관련시설(화초·분재 등의 온실 제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적용구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간선부(R5)
		F	●단독주택, 공동주택(주상복합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의 집회장 중 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 공장,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적용구역 － 일반상업지역(C)
		1층	●중로이상 : 건자재, 수리점, 제조업소, 목공소 등 보행환경저해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불허용도 ●미관지구 내 불허용도	●적용구역 － 일반상업지역(C)을 제외한 전 구역
지하층		●주거	●적용구역 : 전 구역	

- 주) 1. 상이한 제한을 받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합병하거나 공동개발하는 경우, 가장 폭이 넓은 도로에 면한 필지의 규정 적용
 2.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복합건립시 근린생활시설은 지상1층이하, 연면적의 2/5 범위내에서 설치하여야 함

나) 권장용도

-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지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지구중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지)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1-1지구, 1-2지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2-1지구, 2-2지구, 4지구)

구분		도면 표시	용 도	비고
권장 용도	전층	1	●노유자시설중 아동관련시설	●적용구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R1)
		2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중 아동관련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등	●적용구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R2,R2-a)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R3) － 제3종일반주거지역 이면부(R4) － 제3종일반주거지역 간선부(R5)
		3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중 아동관련시설등	●적용구역 － 일반상업지역(C)
		1층	●근린생활시설 중 의류·구두·휴게음식점 등 신변잡화 용도, 출판사·서점 등 (단,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4'호 '샤'목~'아'목, '차'목~'타'목 제외)	

- 주) 1. 권장용도 인센티브 : 전층 권장용도는 건축물 연면적(부속시설 제외)의 20%이상, 1층 권장용도는 1층 연면적의 20%이상
 2. 상이한 제한을 받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합병하거나 공동개발하는 경우, 가장 폭이 넓은 도로에 면한 필지의 규정 적용

2) 건축물의 개발밀도

가) 건폐율 계획

-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지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지구중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지)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1-1지구, 1-2지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2-1지구, 2-2지구, 4지구)

도면표시	위치	계획내용	비고
R1	제1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적용구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R1)
R2, R2-a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적용구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R2,R2-a)
R3	제2종일반주거지역		●적용구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R3)
R4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면부)	50% 이하	●적용구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R4)
R5	제3종일반주거지역(간선부)		●적용구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R5)
C	일반상업지역	60% 이하	●적용구역 : 일반상업지역(C)

- 주) 상이한 제한을 받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합병하거나 공동개발하는 경우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필지의 규정 적용

나) 용적률 계획

(1) 용적률 적용

-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지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지구중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지)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1-1지구, 1-2지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2-1지구, 2-2지구, 4지구)

도면표시	위치	계획내용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R1	제1종일반주거지역	130% 이하	150% 이하	
R2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180% 이하	200% 이하	
R2-a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용도지역 상향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150% 이하	180% 이하	
R3	제2종일반주거지역	180% 이하	200% 이하	
R4	제3종일반주거지역 (이면부)	220% 이하	250% 이하	
R5	제3종일반주거지역 (간선부)			
C	일반상업지역	600% 이하	800% 이하	

주) 상이한 제한을 받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합병하거나 공동개발하는 경우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필지의 규정 적용

(2)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기준(공통사항)

- ①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의무형 인센티브는 100분의 20 이상, 규제형과 유도형 인센티브 합은 100분의 80 이내로 하고, 기준용적률과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의 합은 허용용적률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의무형 인센티브인 친환경 건축물 항목은 해당 인센티브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유도형과 규제형 인센티브 항목 준수를 통하여 부족한 의무형 인센티브의 대체 적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 ③ 유도형 인센티브 항목이 두가지 이상인 경우 한 항목의 유도형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해당 유도형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50이내에서 적용하도록 한다.
- ④ 규제형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해당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기준을 초과하여 계획용적률이 산출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도상의 규제사항은 건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권장용도의 면적은
 - 전층권장의 경우는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지상부 전체 연면적(주차장 제외)의 (해당면적) 이상일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 특정층(1층 등) 권장의 경우는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지상부 전체 연면적(주차장제외)의 (해당면적) 이상일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⑥ 미관지구내 건축선 보다 추가하여 건축한계선으로 결정된 부분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미관지구 내 건축선 후퇴부분은 제공면적 산정시 제외)
- ⑦ 조경면적 등 타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사항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없으며,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할수 있으나 중복하여 계산할 수 없다.
- ⑧ 환경친화적 건축물 항목은 본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동일하게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항 목	세분	산 정 방 식	비 고											
환경 친화적 건축물	자연지반 보존	기준용적률×(보존면적÷대지면적)×A	• A=(R1,R2,R3지역 : 0.2, R4,R5지역 : 0.25, C지역 : 0.2) 적용											
	옥상녹화	기준용적률×(녹화면적÷대지면적)×A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만 허용 •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 A=(R1,R2,R3지역 : 0.2, R4,R5지역 : 0.25, C지역 : 0.1) 적용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설치면적÷대지면적) × 0.05												
	중수도시설	기준용적률×0.04	• 총 사용수량의 10% 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 • 관련법상 의무시설은 제외											
	빗물관리시설설치 (저류·침투·이용)	기준용적률×0.04	•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설계침투량(ton/hr)의 합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이상되도록 설치											
	신재생에너지사용	기준용적률×0.05	• 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 부담											
	에너지 절약	기준용적률×α (1등급 α=0.08, 2등급 α=0.05)	<table border="1"> <tr> <th>구분</th><th>에너지 절감율</th><th>에너지 성능지표</th><th>친환경 건축물인증</th></tr> <tr> <td>1등급</td><td>33.5%이상</td><td>81점이상</td><td>85점 이상</td></tr> <tr> <td>2등급</td><td>23.5~33.5% 미만</td><td>74~81점미만</td><td>75~85점 미만</td></tr> </table>	구분	에너지 절감율	에너지 성능지표	친환경 건축물인증	1등급	33.5%이상	81점이상	85점 이상	2등급	23.5~33.5% 미만	74~81점미만
구분	에너지 절감율	에너지 성능지표	친환경 건축물인증											
1등급	33.5%이상	81점이상	85점 이상											
2등급	23.5~33.5% 미만	74~81점미만	75~85점 미만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제1종일반주거지역)(R1)

구 분	항 목	세 분	완화기준	비고
유도형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 기준용적률×(권장용도연면적/주차장제외연면적) ×0.35	—
규제형	건축한계선		• 인센티브 정량(10%) 부여	—
의무형	환경친화적 건축물		•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기준(공통사항) 참조	자연지반 대지면적 10%기준 옥상녹화 대지면적 20%기준

주) 상기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은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4-5-3 (1)의 내용에 근거하여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목적달성을 위한 인센티브 항목을 일부 정량화한 사항임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제2종일반주거지역)(R2,R3)

구 분	항 목	세 분	완화기준	비고
유도형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 기준용적률×(권장용도연면적/주차장제외연면적) ×0.15	—
	쌈지형/침상형 공지		•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 ×0.3	최소 25㎡ 기준
	공공보행통로/보차혼용통로		•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 ×0.05	—
규제형	건축한계선		• 인센티브 정량(10%) 부여	—
의무형	환경친화적 건축물		•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기준(공통사항) 참조	자연지반 대지면적 10%기준 옥상녹화 대지면적 20%기준

주) 상기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은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4-5-3 (1)의 내용에 근거하여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목적달성을 위한 인센티브 항목을 일부 정량화한 사항임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제3종일반주거지역)(R4,R5)

구 분	항 목	세 분	완화기준	비고
유도형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 기준용적률×(권장용도연면적/주차장제외연면적) ×0.15	—
	쌈지형/침상형 공지		•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 ×0.3	최소 25㎡ 기준
	공공보행통로/보차혼용통로		•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 ×0.15	—
규제형	건축한계선		• 인센티브 정량(15%) 부여	—
의무형	환경친화적 건축물		•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기준(공통사항) 참조	자연지반 대지면적 10%기준 옥상녹화 대지면적 20%기준

주) 상기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은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4-5-3 (1)의 내용에 근거하여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목적달성을 위한 인센티브 항목을 일부 정량화한 사항임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일반상업지역)(C)

구 분	항 목	세 분	완화기준	비고
유도형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 기준용적률×(권장용도연면적/주차장제외연면적) ×0.3	—
	공개공지		•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1.5
	쌈지형/침상형 공지		•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	×1.5
	공공보행통로/보차혼용통로		•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	×1.5
규제형	건축한계선		• 인센티브 정량(100%) 부여	—
의무형	환경친화적 건축물		•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기준(공통사항) 참조	—

주) 상기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은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4-5-3 (1)의 내용에 근거하여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목적달성을 위한 인센티브 항목을 일부 정량화한 사항임

다) 높이 계획

-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지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지구중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지)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1-1지구, 1-2지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2-1지구, 2-2지구, 4지구)

도면표시	위치	계획내용	비고
R1	제1종일반주거지역	●층수 : 4층 이하	
R2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층수 : 7층 이하	
R2-a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층수 : 4층 이하	수정가결 사항
R3	제2종일반주거지역	●층수 : 12층 이하	
R4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면부)	-	
R5	제3종일반주거지역(간선부)	-	
C	일반상업지역	-	

- 주) 1. 상이한 제한을 받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합병하거나 공동개발하는 경우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필지의 규정 적용
2. 도시계획시설은 건축범위결정을 따름

라) 건축물 배치에 관한 계획

-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지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지구중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지)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1-1지구, 1-2지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2-1지구, 2-2지구, 4지구)

구분		계획내용		비고
		위치	제어기준	
배치 (건축선)	건축 한계선	●일반상업지역내 간선도로변 및 대지내 통로 부분	●대지내 통로, 보행공간 및 녹지 공간 조성 - 폭원 5~10m	
		●일반상업지역내 내부 도로변 ●학교시설 전면도로변	●보행공간 조성 - 폭원 3m	
		●주요 이면도로변 - 개포로변, 일원로변, 선릉로변	●보행공간 조성 - 폭원 2m	
		●기타 이면도로변	●보행공간 조성 - 폭원 1m~2m	

다.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1) 대지내 공지 및 통로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지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지구중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지)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1-1지구, 1-2지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2-1지구, 2-2지구, 4지구)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위 치	제 어 기 준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일반상업지역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대지내 공지는 보행공간(확장), 보행로 변 휴식 공간, 선형의 녹지축 및 가로형 공원 조성 공간으로 조성 - 폭원 : 3m~5m	
		•일반주거지역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대지내 공지는 가로변 보행환경 제고를 목적으로 보행공간으로 조성 - 폭원 : 1m~3m	
	공개공지	•일반상업지역	•주요 경관 요소 및 기존 대규모 대지내 공지에 대하여 경관향상 및 오픈스페이스(녹지 공간)의 계속적 확보를 위하여 건축한계선 으로 지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공개공지 설치 공간 지정	
	쌈지형 공지	•주요 보행결절점	•주요 보행결절점에 쌈지형 공지 지정 - 25㎡이상 확보(최소폭 5m이상)	
대지내 통로	보차혼용 통로	•일반상업지역내 기존 통로	•기존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대지내의 구간에 대하여 보차혼용통로 를 지정, 보행의 안정성 확충	

2)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지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지구중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지)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1-1지구, 1-2지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2-1지구, 2-2지구, 4지구)

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위 치	제 어 기 준	
차량 동선	차량출입 불허구간	•일반상업지역 간선도로변 •일원로, 개포로변 일부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활성화를 위하여 간선도로 에서 개별 필지로의 직접 차량 진출입 불허	
주차 계획	필지별 주차출입	•2면 이상이 도로와 면한 필지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흐름 유지를 위하여 폭이 좁은 도로에서 차량진출입 유도	
	부설 주차장 설치	•전 구역	•주차장관련 법령 및 규정 준용	
	주차장 설치계획	•일반주거지역	•지침에서 규정한 주차장의 전체를 지하주차장으로 조성 또는 1층부 전체를 필로티 형태로 조성할 것 을 권장	
		•개포동 171번지 일원 •용도지역상향(2-2지구)	•신축 시 1가구(세대)당 1대의 부설주차장 설치 •친환경 정주공간 확보를 위한 친환경 주차장 설치	2-2지구

3) 보행동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지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지구중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지)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1-1지구, 1-2지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2-1지구, 2-2지구, 4지구)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위 치	제 어 기 준	
보행 동선	보행자 전용도로	●일반상업지역내 대형 필지 (2-1지구)	●보행동선 최소화를 위하여 상업지역내 대형 필지와 간선도로 사이에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4) 경관 및 환경친화적인 요소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지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지구중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지)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1-1지구, 1-2지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2-1지구, 2-2지구, 4지구)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위 치	제 어 기 준	
옥상녹화	전구역	●서울시 보급형 옥상녹화 조성기법 및 “서울특별시 건축물 옥상 녹화 시스템 유형 결정과 관리 매뉴얼” 내용 준수	
벽면녹화	전구역	● ‘서울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활성화’ 기법에 의하여 설치토록 권장	
생태면적률	전구역	●건축물의 신축 시 ‘서울시 생태면적률 도시계획 적용 편람’ 및 ‘서울시 생태 면적률 도시계획활용 개선방안’ 내용 준수.	용도지역 상향지역 25% 확보
옥외광고물	전구역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조례’ 및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 시제한완화고시’ 를 준용	
빗물이용시설	전구역	●서울특별시 빗물 저수조 설치 및 관리기준,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지침, 서 울시 ‘친환경 지구단위계획 실현 제고 방안’ 내용에 따라 설치하도록 권장	
신·재생 에너지시설	전구역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령’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 서울시 ’ 친환경지구단위계획실현제고 방안 ‘ 내용 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	
야간경관조명	전구역	●상업지역 간선변 10층이상 건축물은 건물전면 및 옥상부에 야간경관조명의 설치 권장 ●옥외에 설치하는 환경조형물의 경우에도 야간경관 조명 설치 권장	

주) 옥외 광고물의 설치제한 기준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2013-81호)」의 기준을 따라야 하며,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의 규정에 의한다.

5) 가구(세대)수 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지구) : 해당사항 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지구중심) : 해당사항 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지) : 해당사항 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1-1지구, 1-2지구) : 해당사항 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2-1지구, 2-2지구, 4지구)

구분	위치	허용 가구(세대)수	비고
가구(세대)수	2-2지구, 4지구	•10가구(세대)수 이하 (공동개발 시 가구(세대)수는 공동개발 필지수 × 10가구(세대) 이하)	

④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권한 : 구청장)

-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지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지구중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지)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1-1지구, 1-2지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2-1지구, 2-2지구, 4지구)

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2. 공개공지, 썸지형공지, 대지내 통로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3. 대지안의 공지의 위치, 조성방법의 변경 및 신규 설치
4. 수종조경시설물(공개공지, 썸지형공지, 전면공지에 한함)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5. 구역과 연결한 필지의 공동개발 (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6. 집산도로, 국지도로변에서의 주차출입구 신설, 변경에 따른 차량출입불허구간의 변경(공동개발 변경 또는 대지분할에 의한 경우에 한함)
7. 통로의 성격설계계획(보행자 및 차량전용 통로의 위치 변경 및 신규설치)
8.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의 변경(관련법규상 경미한 변경범위내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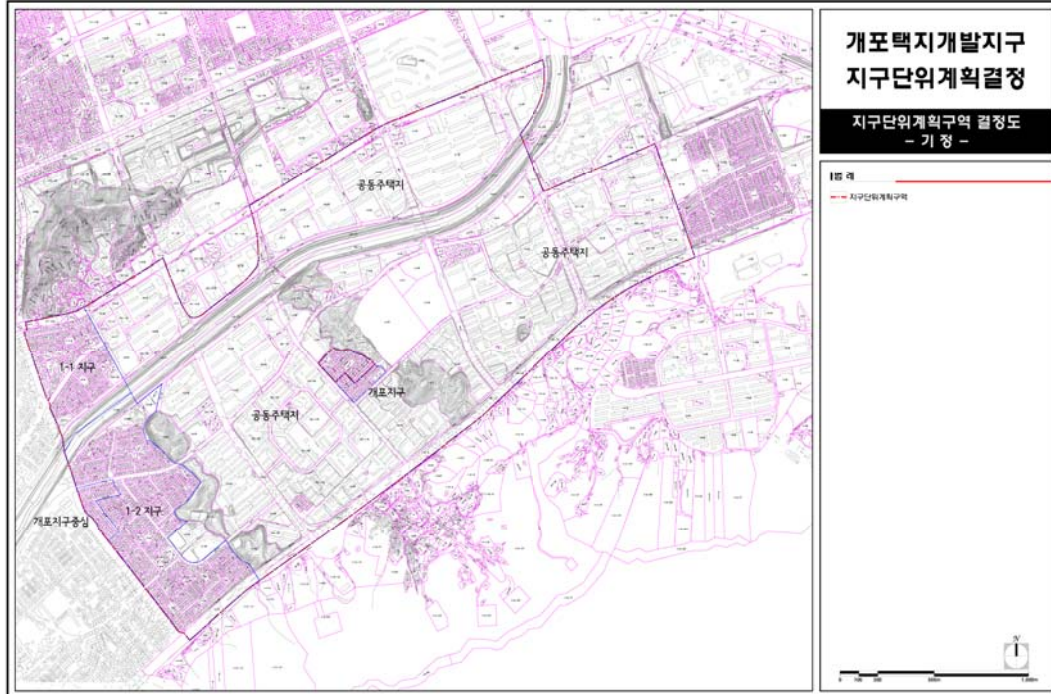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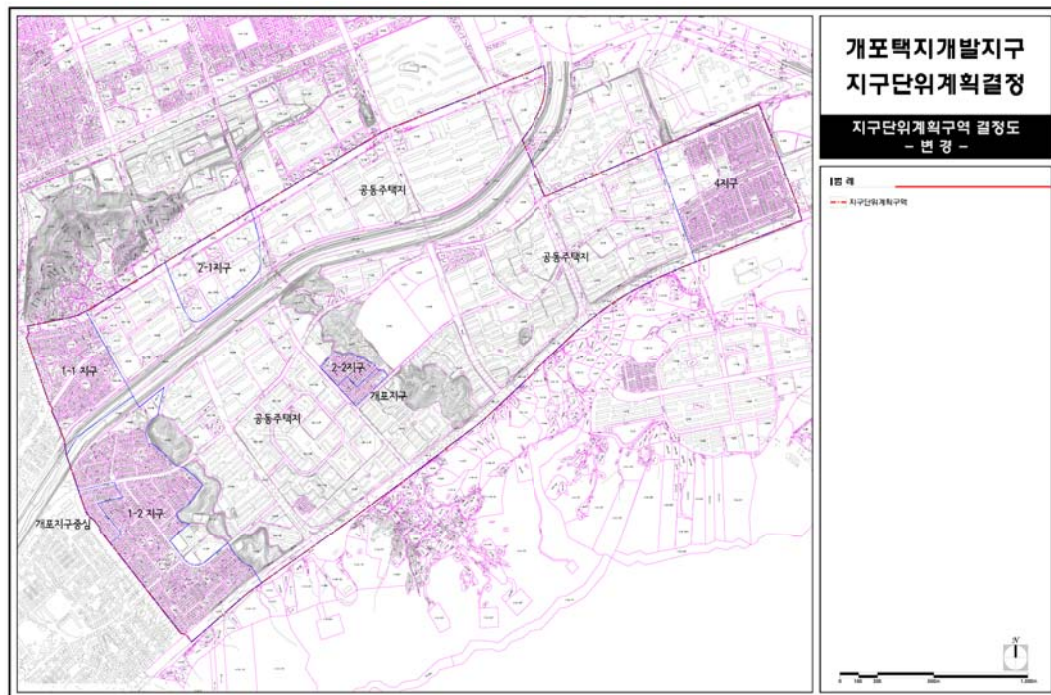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강남구 도시계획과(☎02-3423-6114),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81)에 관계도서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기정)도☐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변경)도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515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 장

☐ 기부금품 모집등록 내역

등록 번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사용기간
2016-66	재단법인 연필장학재단 (대표 이동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56 알파빌딩 4층	○ 국내 고등학생 및 외국인 대 학생 대상 장학금 사업 진행	300 (현금)	전국	'16.7.20. ~'17.7.19. '16.7.20. ~'18.7.19.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02-2133-656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516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 장

☐ 기부금품 모집등록 내역

등록 번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사용기간
2016-67	대한맹인복지회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대표 김동성)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5가길 20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찾아 가는 장애 인식 개선 체험장 및 실내 인식개선 체험장 설립	50 (현금)	전국	'16.7.6. ~'16.12.31. '16.7.15. ~'16.12.31.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02-2133-656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517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장

□ 기부금품 모집등록 내역

등록 번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사용기간
2016-68	재단법인 옥스팜코리아 (대표 크리스토퍼폴아쉬워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24길 20, 301호(효자동, 이음빌딩)	○국제 긴급 구호, 구제사업 및 구호사업	500 (현금)	전국	'16.7.7. ~'17.7.6. '16.7.7. ~'18.7.6.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02-2133-656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706호

시유특허권 처분 공고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의 직무발명을 통해 발굴된 시유특허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국제특허권)의 사업화로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6에 따라 서울특별시 보유 시유특허권에 대한 실시 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업체에서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장

1. 시유특허권의 정의

-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의 직무발명으로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입니다.

2. 처분대상 시유특허권

가. 국내 시유특허권

구분	연번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처분종류	등록일
특허	1	물 흐름 감지형 제수밸브	10-1643173	통상실시권 허락	2016-07-21
특허	2	이동자 흡식 부유물 제거장치	10-1642443	통상실시권 허락	2016-07-19

구분	연번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처분종류	등록일
특허	3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한 출동 지령 전달 시스템	10-1614510	통상실시권 허락	2016-04-15
특허	4	심폐소생술 실습장치	10-1610289	통상실시권 허락	2016-04-01
특허	5	인터페이스 호환성을 가진 모바일 웹 페이지 생성 장치 및 제공 시스템	10-1592496	통상실시권 허락	2016-02-01
특허	6	흙 콘크리트 조성물(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1575791	통상실시권 허락	2015-12-02
특허	7	무장애 스마트 통신 장치 및 그 방법	10-1574201	통상실시권 허락	2015-11-27
특허	8	호흡면체 직결 공기정화용 어댑터	10-1551675	통상실시권 허락	2015-09-03
특허	9	물 유출 지연 장치	10-1551672	통상실시권 허락	2015-09-03
특허	10	배수지용 수돗물 재담수 시스템	10-1543736	통상실시권 허락	2015-08-05
특허	11	흉부 압박 시스템	10-1532418	통상실시권 허락	2015-06-23
특허	12	야간 관측이 용이한 하천 수위 측정장치	10-1519592	통상실시권 허락	2015-05-06
특허	13	플라스터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1514809	통상실시권 허락	2015-04-17
특허	14	가교형 받침 구조물의 시공방법	10-1511265	통상실시권 허락	2015-04-06
특허	15	정수 슬러지를 재활용한 다공성 조습보드용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다공성 조습보드의 제조방법(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1478422	통상실시권 허락	2014-12-24
특허	16	중온 저소음 아스팔트용 첨가제 및 첨가제가 포함된 중온 저소음 아스팔트 혼합물	10-1424759	통상실시권 허락	2014-07-23
특허	17	정수처리 공정에서 염소투입량 결정방법	10-1400950	통상실시권 허락	2014-05-22
특허	18	용적확장형 캐리어	10-1400949	통상실시권 허락	2014-05-22
특허	19	장거리방수용 방수포	10-1395664	통상실시권 허락	2014-05-09
특허	20	구명장치	10-1395669	통상실시권 허락	2014-05-09
특허	21	토석류 저감 장치	10-1395667	통상실시권 허락	2014-05-09
특허	22	통합건설 정보관리 시스템	10-1395665	통상실시권 허락	2014-05-09
특허	23	고분자를 이용하여 알갱이 형태로 가공한 안료 및 이를 포함하는 장수명 칼라 아스팔트 조성물(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1392414	통상실시권 허락	2014-04-29
특허	24	안심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 및 이동단말기	10-1345266	통상실시권 허락	2013-12-19
특허	25	방화커튼장치	10-1343047	통상실시권 허락	2013-12-12
특허	26	내식성이 향상되는 수도시설용 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의 용접부 후처리방법(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1309980	통상실시권 허락	2013-09-11
특허	27	휴대용 검사장치	10-1279624	통상실시권 허락	2013-06-21

구분	연번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처분종류	등록일
특허	28	굴착방지 가변형 제수밸브	10-1279625	통상실시권 허락	2013-06-21
특허	29	국지도로용 광방향성 반사블록을 구비한 BUG제어 LED조명등(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1259539	통상실시권 허락	2013-04-24
특허	30	수용액 내 암모니아성질소의 측정방법	10-1244614	통상실시권 허락	2013-03-11
특허	31	요동방지 호스지지체	10-1234541	통상실시권 허락	2013-02-13
특허	32	투수포장 구조체	10-1225072	통상실시권 허락	2013-01-16
특허	33	오거장비용 가림막 자동화 장치(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1224693	통상실시권 허락	2013-01-15
특허	34	수도관용 동결 해빙못 시공구조	10-1205468	통상실시권 허락	2012-11-21
특허	35	유지보수 발판이 구비된 도로 전광표시	10-1197458	통상실시권 허락	2012-10-30
특허	36	DMP 개질아스팔트 및 그 제조방법	10-1195201	통상실시권 허락	2012-10-22
특허	37	급수관 구경확대를 위한 새들블이 분수전 무단수 차단장치	10-1195199	통상실시권 허락	2012-10-22
특허	38	상수도용 자석 부착형 스트레이너	10-1195200	통상실시권 허락	2012-10-22
특허	39	DMP 개질 아스팔트를 사용한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	10-1188092	통상실시권 허락	2012-09-26
특허	40	목조 건축물의 적심층 화재진압용 분사노즐을 구비한 분사건	10-1188064	통상실시권 허락	2012-09-26
특허	41	복합형 빗물받이 뚜껑 및 그 시공구조	10-1188005	통상실시권 허락	2012-09-26
특허	42	정수지 또는 배수지 내에서 유수지 정체부 형성을 방지하는 배플	10-1179008	통상실시권 허락	2012-08-27
특허	43	수도계량기 카운터 걸림 검사장치	10-1179023	통상실시권 허락	2012-08-27
특허	44	전력절감을 위한 맥동식침전지 운영 방법	10-1178601	통상실시권 허락	2012-08-24
특허	45	화재진압용 복합형 소화장치	10-1168210	통상실시권 허락	2012-07-18
특허	46	수증기 응결이 발생하지 않는 계량기의 카운터 제조방법	10-1164601	통상실시권 허락	2012-07-04
특허	47	표면장력 저감을 이용한 막의 완결성 시험방법	10-1164600	통상실시권 허락	2012-07-04
특허	48	투수포장재의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 시험장치 및 방법	10-1131767	통상실시권 허락	2012-03-23
특허	49	음식물 쓰레기통	10-1131124	통상실시권 허락	2012-03-15
특허	50	필지경계점 좌표를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기 위한 방법	10-1090346	통상실시권 허락	2011-11-30
특허	51	자가 공기호흡장치	10-1083726	통상실시권 허락	2011-11-09
특허	52	수영장 청소시스템	10-1081507	통상실시권 허락	2011-11-02

구분	연번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처분종류	등록일
특허	53	제설제 재활용장치	10-1074857	통상실시권 허락	2011-10-12
특허	54	부유물 제거장치	10-1069375	통상실시권 허락	2011-09-26
특허	55	전염소 투입물 산출 시스템 및 방법	10-1043521	통상실시권 허락	2011-06-15
특허	56	무동력으로 초기 기능가능한 펌프 시스템	10-1042676	통상실시권 허락	2011-06-13
특허	57	침전슬러지 배출유동화 장치	10-1019206	통상실시권 허락	2011-02-24
특허	58	수도계량기 교체공구	10-1005335	통상실시권 허락	2010-12-24
특허	59	하수도 맨홀용 역지변	10-0994795	통상실시권 허락	2010-11-10
특허	60	바아형상의 파지부를 구비한 소화기	10-0982443	통상실시권 허락	2010-09-09
특허	61	저소음 · 배수성아스팔트포장도로기능유지차	10-0979766	통상실시권 허락	2010-08-27
특허	62	방음벽 지주의 연결구조물	10-0976636	통상실시권 허락	2010-08-11
특허	63	펌프의 실링수 공급밸브	10-0970322	통상실시권 허락	2010-07-07
특허	64	후타재가 필요없는 교량용 핑거 조인트 결합 구조물	10-0957696	통상실시권 허락	2010-05-04
특허	65	이동식 소화호수 두루마리 장치	10-0955096	통상실시권 허락	2010-04-20
특허	66	다기능 세척장치	10-0952293	통상실시권 허락	2010-04-02
특허	67	정밀하게 부피를 잴 수 있는 일정용적을 갖는 용량코니칼 튜브	10-0947767	통상실시권 허락	2010-03-09
특허	68	수도관의 급속동결장치	10-0936841	통상실시권 허락	2010-01-06
특허	69	식생블록 녹화용 모듈	10-0925849	통상실시권 허락	2009-11-02
특허	70	누설방지장치	10-0922996	통상실시권 허락	2009-10-14
특허	71	잔류오존을 제거하는 상향류식 오존접촉조	10-0890246	통상실시권 허락	2009-03-17
특허	72	하수관거 차수로봇용 가물막이 수밀 패널(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0886461	통상실시권 허락	2009-02-24
특허	73	약품 발생량 저감을 위한 슬러지 처리시스템	10-0834690	통상실시권 허락	2008-08-12
특허	74	수도의 절수장치	10-0848466	통상실시권 허락	2008-07-18
특허	75	2단 침지형 막여과조를 이용한 고도정수처리장치(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0843656	통상실시권 허락	2008-06-27
특허	76	약품 및 케익 발생량 저감을 위한 슬러지 처리 시스템	10-0852939	통상실시권 허락	2008-05-27
특허	77	미세먼지 청소차(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0810152	통상실시권 허락	2008-02-27
특허	78	수도관의 부식억제 방법	10-0797847	통상실시권 허락	2008-01-18
특허	79	안정기 수납부가 형성된 보수용 커버를 갖는 가로등주	10-0796449	통상실시권 허락	2008-01-15

구분	연번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처분종류	등록일
특허	80	자동제어를 이용한 선택적 전처리 막여과 고도처리장치 및 그 방법(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0791896	통상실시권 허락	2007-12-28
특허	81	미끄럼방지용 다짐롤러장치	10-0784031	통상실시권 허락	2007-12-03
특허	82	기초구조물과 분리결합이 용이한 가로등주	10-0775816	통상실시권 허락	2007-11-06
특허	83	빗물받이 받침대	10-0747772	통상실시권 허락	2007-08-02
특허	84	막분리 정수처리장치의 수질 등급코드를 이용한 운전모드 선택장치 및 그 운영방법(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0720140	통상실시권 허락	2007-05-14
특허	85	막분리를 이용한 고도정수처리장치의 막오염 지수 연속 모니터링에 의한 응집 전처리공정 제어장치 및 그 방법(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0720139	통상실시권 허락	2007-05-14
특허	86	신축이음장치의 고무셀 보호부재	10-0700947	통상실시권 허락	2007-03-22
특허	87	복공판(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0665967	통상실시권 허락	2007-01-02
특허	88	다용도 수중점검장치(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0342154	통상실시권 허락	2002-06-14
특허	89	황산염 환원균을 이용한 소각재 처리방법	10-0283403	통상실시권 허락	2000-12-07

실용신안	1	잔수제거용 호스말이	20-0480708	통상실시권 허락	2016-06-22
실용신안	2	정화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공기호흡기	20-0475460	통상실시권 허락	2014-11-26
실용신안	3	소화기용 도구	20-0472691	통상실시권 허락	2014-05-09
실용신안	4	등주형 분전함	20-0470661	통상실시권 허락	2013-12-26
실용신안	5	맨홀뚜껑 개방장치	20-0470567	통상실시권 허락	2013-12-19
실용신안	6	산화된 철분거름기구	20-0465120	통상실시권 허락	2013-01-29
실용신안	7	조명장치	20-0459190	통상실시권 허락	2012-03-05
실용신안	8	체크밸브가 구비된 수도계량기	20-0448968	통상실시권 허락	2010-05-28
실용신안	9	안정기의 취부구조를 갖는 가로등주 보수용 커버	20-0436468	통상실시권 허락	2007-08-17
실용신안	10	교량상판의 신축연결장치	20-0431670	통상실시권 허락	2006-11-15

디자인	1	수도계량기 보호함 보온재	30-0814722	통상실시권 허락	2015-09-18
디자인	2	수도용 가변 이형관(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30-0725734	통상실시권 허락	2014-01-13
디자인	3	가로등	30-0743445	통상실시권 허락	2014-05-09
디자인	4	가로등	30-0723292	통상실시권 허락	2013-12-26

○ 처분범위(공통)

- 실시기간 : 1년(3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 실시지역 : 대한민국 전역
- 실시내용 : 처분대상 시유평특허권을 사용하는 모든 행위
- 선정업체 : 서울시가 지정하는 업체로 선정

나. 해외 시유평특허권

구분	연번	발명의명칭	국가	출원번호	등록번호	처분종류	등록일	비고
특허	1	소화장치	중국	CN/2013101588529	103372271	통상실시권 허락	2016-03-16	국내특허 10-1188064 10-1168210
특허	2	소화장치	일본	JP/2013-95853	5681748	통상실시권 허락	2015-01-16	국내특허 10-1188064 10-1168210
특허	3	잔류오존을 제거하는 상향류식 오존접촉조	미국	US/2011/0220558	8834711	통상실시권 허락	2014-09-16	국내특허 10-0890246
특허	4	잔류오존을 제거하는 상향류식 오존접촉조	중국	CN/200980122574	102066271	통상실시권 허락	2013-09-11	국내특허 10-0890246
특허	5	잔류오존을 제거하는 상향류식 오존접촉조	일본	JP/2011-512410	5356512	통상실시권 허락	2013-09-06	국내특허 10-0890246

○ 처분범위(공통)

- 실시기간 : 1년(3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 실시지역 : 각 시유평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전역
- 실시내용 : 처분대상 시유평특허권을 사용하는 모든 행위
- 선정업체 : 서울시가 지정하는 업체로 선정

3. 신청방법

가. 기 간 : 2016. 8. 25(목)~9. 7(수) [토·일요일 제외한 10일간]

※ 신청기간 이후에도 수시접수 가능

나. 방 법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조직담당관 주무관 전온지 앞
- 이메일 : onjee@seoul.go.kr

다. 구비서류 : 수의계약신청서 1부(첨부서류 포함)

4. 신청자격

- 대상 시유평특허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국제특허)의 실시 가능업체(사업자등록 업체)

5.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가. 계약대상자는 서울시가 지정하는 업체로 선정한다.

나. 시유평허권 실시료 선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 실시료산정식 =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제품의 판매단가×점유율×기본율

- 총판매예정수량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
- 제품의 판매단가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가격
- 점유율 :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시유평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 기본율 : 기본 3%. 다만, 해당 시유평허권의 실용적 가치,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 이상 4% 이하로 할 수 있음

다. 계약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법인등기부 등본(1부),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유평허권의 통상실시권 실시계약이 된 이후에는 제품 홍보를 위해 계약자의 업체명, 대표자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일부 개인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동의한다.

6. 계약 및 실시료 납부 방법

가. 계약대상자가 결정되면 계약대상자에 한해 실시를 위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서류를 확인한다.

나. 계약내용

1) 실시기간은 1년(3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으로 한다.

※ 특허를 이용하여 설치되는 구조물 및 처리시스템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본 공고와 별도로 특허가 반영되는 시점으로부터 3년 범위 내로 한다.

2) 판매예정 수량은 계약대상자가 신청한 수량으로 한다.

3) 제품의 판매단가 기준은 계약대상자가 제시한 가격으로 한다.

4) 기본율은 기본 3%로 하여 년 단위로 실시료 산정*

*다만, 해당 시유평허권의 실용적 가치,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 이상 4% 이하로 조정 할 수 있음

다. 지정된 처분범위와 실시료를 내용으로 계약서 확인과 함께 실시료를 선납한 후 서울시가 날인한 “시유평허권의 통상 실시권 실시계약서(2부)”에 계약대상자 날인하여 계약 체결을 완료한 후 시유평허권을 실시할 수 있다.

라. 실시기간 만료일 또는 년 단위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매수량을 비교하여 계약서의 판매수량 초과시 초과 수량에 대한 실시료를 정산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 수량 미만시에는 기 선납한 특허실시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7. 문의처

○ 기타 시유평허권의 구체적 내용 및 실시권설정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주무관 전온지(☎ 02-2133-6739, onjee@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 의 계 약 신 청 서

(시유평허권 처분)

신 청 인	① 명 칭 (대 표 자)	(예시) (주) 기업체명 (홍길동)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④ 권 리 의 표 시		(예시) 특허등록 제 0000 호		
⑤ 발 명 (고 안) 의 명 칭				
⑥ 처 분 의 종 류		☐ 매수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⑦ 실 시 범 위		기 간 : 201 . . - 201 . . (년간) 지 역 : 내 용 : (예시) 처분대상 시유평허권을 사용하는 모든 행위		
⑧ 견 적 금 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 6,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시행규칙 제 7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6 년 월 일

신 청 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1. 당해 시유평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부

사 업 계 획 서(예시)

1. 회 사 현 황

회 사 명		대 표 자		
설립년월일		홈페이지/e-mail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소유여부
본 사				
사 업 장				
업 종				
생산품목				
사업규모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자본금			
	총자산			
	매출액			
	순이익			
	종업원수(명)			

2. 회 사 연 혁

년 월 일	내 용	비 고

3. 대표자 이력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연락처	사무실 :		휴대폰 :	
경력	기간	기업체명	주생산 품목	최종직위

4. 인 원 현 황

부서명	경영직	사무직	영업직	...	합계
인사/총무					
생산					
영업					
· · ·					
합계					

5. 시유평허 사업화 추진계획

- ※ ① “당해 기술 분야에 대한 사업경험 및 기술축적 정도” 및
 ② “연도별 생산 및 판매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실 시 료 건 적 서

권리의 표시	특허 제 호
발명의 명칭	
실시료의 건적금액	금 원

[예 시]

- 실시료의 건적금액 산정근거
 -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100개
 - 제품의 판매단가/단위 : 4,000천원/개
 - 점유율 : 80%
 - 기본율 : 3%
 - ※ 해당제품의 경우 특허10-1234567호의 기술이 추가적으로 필요한바 점유율 80%로 신청함
- 실시료 산출금액
 - 100개 × 4,000천원/개 × 80% × 3% = 9,600천원

※ 기재 요령

1. 총판매예정수량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계한 것
2. 판 매 단 가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 가격
3. 점 유 율 : 단위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해당 시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4. 기 본 율 : 3%

2016 년 월 일

○○○(기업체명) 대표이사 홍길동 (인)

서울특별시시장 귀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714호

회계관계직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직인을 폐기 및 등록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장

1. 등록 직인 (등록사유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 등록일자	비고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자전거정책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16.7.1.	
	자전거정책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72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1항에 의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하고 동시행령 제4조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장

등록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의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 연월일	주된사업	주관과	등록 구분	비고
1006	사랑플러스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17 동은빌딩 지하102호	김상경	2008.12.31	하단참조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직권말소	말소일자:2016.8.16. 말소사유: 설립허가조건위반

※ 주된사업

- ① 노인시설 및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의 자원봉사활동 및 지원
- ② 독거노인 및 극빈자가정 생활지원 및 자원봉사활동
- ③ 청소년 교화 및 소년 소녀가장 물질적 후원사업
- ④ 특별행사를 통한 본 사업 활성화 등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727호

소방시설업 폐업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의2 제2항에 의거 소방시설업 폐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

등록번호	업종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폐업일
제 광진1999-4호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경성이엔에프(주) (윤인호)	성동구 왕십리로4가길 13	2016.8.11.
제 강남2004-5호	방염처리업 (합판·목재류)	미래방재산업 (유창모)	강남구 영동대로 202	2016.8.1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728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지방세 제6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 불명,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2016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

1. 건명 :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2. 근거 :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가.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성명	주소		
최현석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봉동동서로 76, *0*-**04호(봉동읍)	일시 : 2016-06-01 06:39 장소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송파대로 내용 : 차량의 제한 폭 0.25m 초과	과태료 : 30만원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성명	주소		
구영길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920번길 **, *0*호(병방동)	일시 : 2016-06-08 19:08 장소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올림픽대로 내용 : 차량의 제한 길이 2.6m 초과	과태료 : 30만원
장순돈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70번길 *-** (향촌읍)	일시 : 2016-06-17 02:26 장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연주로 내용 : 차량의 제한 폭 0.27m 초과	과태료 : 30만원
장순돈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70번길 *-** (향촌읍)	일시 : 2016-06-18 04:25 장소 :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현릉로 내용 : 차량의 제한 폭 0.28m 초과	과태료 : 30만원
유만균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소공원길 8-*2, **5호(왜관읍)	일시 : 2016-06-22 05:02 장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IC 내용 : 차량의 제한 폭 0.8m 초과	과태료 : 100만원
박문섭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5길 5-**, *0*호(송파동)	일시 : 2016-06-27 22:34 장소 :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현릉로 내용 : 차량의 제한 축하중 1.65t 초과	과태료 : 50만원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과태료 납부기한 : 2016. 09. 30.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7%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가 도달하지 않을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문의처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 02-2040-0324, 팩스번호 : 02-2040-0305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729호

2016년도 제14차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공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제14차 서울특별시 미술작품 심의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장

- 가. 심의일시 : 2016. 8. 11.(목) 14:00 ~ 16:30
 나. 심의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5층 회의실
 다. 심의작품 : 총 8건 12작품(조각 15점, 회화 2점, 사진 2점, 부조 1점)
 라. 심의결과 : 승인 8작품, 부결 4작품
 마. 작품별 심의결과 : 별첨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02-2133-27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제14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2016년 제14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의결합니다.

연번	건물명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사유 및 의견
				승인	부결	
1-1	강서구 힐스테이트 에코동익	회화	다시움트다		○	공간과의 부조화
1-2		회화	가든	○		
1-3		회화	바람의 울동		○	안정성 결여
1-4		조각	시간.공간-마음을담다	○		
1-5		조각	시간.공간-여행		○	유사작품 다수 설치
2	은평구 KT21	조각	Happy Time		○	조형성 결여
3	송파구 위례중앙푸르지오1단지	조각	가족 나들이	○		
4	송파구 위례중앙푸르지오2단지	조각	무빙 하트	○		
5	강서구 우성에스비타워	조각	Dream2016-2	○		
6	송파구 파크하비오	회화	환희사계	○		
7	강북구 꿈의숲 롯데캐슬	조각	꿈으로 날아오르다	○		
8	성동구 e편한세상-옥수	조각	Circle of Gathering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732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6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도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도로법’ 제1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가.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송제풍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고재로 *** (진건읍)	일시: 2016-06-07 04:55 장소: 오곡동 별말로 내용: 제한 폭 1.6m 초과	처분일: 2016. 7. 27. 과태료: 100만 원 납기일: 2016. 9. 30.
김대곤	경기도 의정부시 비우로108번길 *** (녹양동)	일시: 2016-06-07 06:12 장소: 성산대교 남단램프 내용: 제한 총중량 4.8t 초과	처분일: 2016. 7. 27.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6. 9. 30.
황형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북문4길 ** (강화읍)	일시: 2016-06-08 19:16 장소: 개화육감문 내용: 제한 축하중 1.95t 초과	처분일: 2016. 7. 27.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6. 9. 30.
김태근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업단지116번길 ** (신일동)	일시: 2016-06-11 07:13 장소: 성산대교 남단램프 내용: 제한 총중량 4.0t 초과	처분일: 2016. 7. 27. 과태료: 25만 원 납기일: 2016. 9. 30.
강성정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165번길 40, *동 ***호 (부평동, 미도아파트)	일시: 2016-06-14 13:59 장소: 올림픽대로 내용: 제한 폭 0.29m 초과	처분일: 2016. 7. 27.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16. 9. 30.
심지용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144-4, *동 ***호 (가좌동, 창대빌라)	일시: 2016-06-23 11:11 장소: 개화육감문 위 내용: 제한 폭 0.4m 초과	처분일: 2016. 7. 27.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6. 9. 30.

나.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김종무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로120번길 29-1, *층 *호(고강동)	일시: 2016-01-14 14:26 장소: 행주대교 북단 과적검문소 내용: 제한 높이 0.21m 초과	처분일: 2016. 5. 27.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16. 7. 31.
모동주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독골길 * (월야면)	일시: 2016-04-07 04:42 장소: 오곡동 벌말로 내용: 제한 폭 1.1m 초과	처분일: 2016. 5. 27. 과태료: 100만 원 납기일: 2016. 7. 31.
김태훈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로98번길 27-7, *층동 *호 (역곡동)	일시: 2016-04-08 14:44 장소: 천왕동 내용: 제한 높이 0.28m 초과	처분일: 2016. 5. 27.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16. 7. 31.
조국현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946번길 41-7, *동 ***호 (병방동, 영신빌라)	일시: 2016-04-14 07:07 장소: 행주대교북단 과적검문소 내용: 제한 축하중 1.24t 초과, 2회	처분일: 2016. 5. 27. 과태료: 70만 원 납기일: 2016. 7. 31.
정지완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약천길 ***-*(우성면)	일시: 2016-04-19 10:23 장소: 행주대교북단 과적검문소 내용: 제한 축하중 1.08t 초과	처분일: 2016. 5. 27.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6. 7. 31.
채홍운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곤지암읍)	일시: 2016-04-24 10:26 장소: 행주대교북단 과적검문소 내용: 제한 축하중 1.08t 초과	처분일: 2016. 5. 27.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6. 7. 31.
이상태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신복운로7길 30, ***호 (송악읍)	일시: 2016-04-25 09:39 장소: 오곡동 벌말로 내용: 제한 폭 0.29m 초과	처분일: 2016. 5. 27.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16. 7. 31.
최창식	대구광역시 서구 북비산로60길 ***-*(평리동)	일시: 2016-04-25 11:26 장소: 행주대교북단 과적검문소 내용: 제한 축하중 1.16t 초과	처분일: 2016. 5. 27.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6. 7. 31.
어중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동로5안길 ** (와동)	일시: 2016-04-26 13:45 장소: 구로구 오리로 내용: 제한 축하중 1.50t 초과	처분일: 2016. 5. 27.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6. 7. 31.

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5. 납부기한: 2016. 9. 30.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7%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 라. 과태료 부과 처분청(이의제기서 제출처)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2657-7922, 팩스번호: 02-2657-7950
 - 전자우편: skyblue7@seoul.go.kr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739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서울특별시공인조례 제8조(공인의 등록), 제9조(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 제11조(공고)에 의거하여, 공인 등록 및 폐기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장

☐ 공인 등록

- 공인등록 사유 : 조직개편
- 공인등록 일자 : 2016년 8월 19일
- 최초 사용일자 : 2016년 8월 19일
- 공인등록 내용

공인 명	규격	인영	전자이미지 인영
서울특별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인	2.4cm × 2.4cm		없음

☐ 공인 폐기

- 공인폐기 사유 : 조직개편
- 공인폐기 일자 : 2016년 8월 19일
- 공인폐기 내용

공인 명	규격	인영	전자이미지 인영
서울특별시 일자리노동국장인	2.4cm × 2.4cm		없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746호
보라매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열람공고

건설부 고시 제1986-265호('86.06.20.)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건설부 고시 제130호('87.04.15)호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74호('16.03.24.)로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 결정·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6호('16.01.07)로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된, 동작구 신대방동 395번지 일원의 보라매근린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6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

1. 공 원 명 : 보라매근린공원
2. 위 치 : 동작구 신대방동 395번지 일원 보라매근린공원
3. 공원조성계획변경(안)
 - 서울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장애인승강기 설치 : 교양시설 면적 증12.81㎡
 -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 반영(서울시 고시 제2016-74호, 부지면적 감 1,789㎡)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동수	바닥면적 (㎡)	연 면 적 (㎡)			동수	바닥면적 (㎡)	연 면 적 (㎡)	
계		415,141.00	163,503.08	19	14,675.62	33,228.09	413,352.00	163,515.89	19	14,675.62	33,228.09	증12.81㎡
기 반 시 설	소 계	57,217.94	57,217.94				57,217.94	57,217.94				
	도 로	44,699.98	44,699.98				44,699.98	44,699.98				
	목 교	108.50	108.50				108.50	108.50				
	광 장	12,409.50	12,409.50				12,409.50	12,409.50				
조경시설		48,454.00	48,454.00				48,454.00	48,454.00				
휴양시설		2,807.55	2,431.79	2	938.97	3,264.35	2,807.55	2,431.79	2	938.97	3,264.35	
유희시설		2,402.27	2,402.27				2,402.27	2,402.27				
운동시설		29,197.73	29,197.73				29,197.73	29,197.73				
교양시설		16,327.60	14,495.98	7	10,235.75	21,538.60	16,340.41	14,508.79	7	10,235.75	21,538.60	증12.81㎡
편익시설		4,931.53	4,931.53	5	429.06	429.06	4,931.53	4,931.53	5	429.06	429.06	
관리시설		5,152.58	3,071.84	5	3,071.84	7,996.08						
녹 지		247,349.80					245,547.99					감1,801.81㎡ 부지면적감소 감1,789㎡ 교양시설증가 감12.81㎡
기 타		1,300	1,300				1,300	1,300				
시 설 율		(163,503.08/ 415,141) × 100 = 39.38%					(163,515.89/ 413,352) × 100 = 39.56%					증0.18%
건 폐 율		(14,675.62 / 415,141) × 100 = 3.53%					(14,675.62 / 413,352) × 100 = 3.55%					증0.02%

4. 관계도서 : 열람 장소에 비치
5.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 1층 시설과(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
7. 안내사항 : 공원조성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시설과 : 02-2181-1195)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747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4항을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앞서 의견제출통지를 하고 이 사실을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

1. 공고기간 : 2016.8.24.~2016.9.9.
2. 처분사전(의견제출)통지 사항

업체명 및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재지	처분사유	예정처분
제이엠월드(주) 서장원	건축공사업 01-0561	서울시 강서구 남부송환로19길25,1층	건설업 등록사항 (주기적)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2호
4. 공고내용
 - 가. 의견제출기한 : 2016. 9. 9.(금)
 - 나. 의견제출처 : 서울특별시 시설안전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 다. 처분 원인 : 건설업등록사항(주기적)신고 미이행
 - 최근 주기적신고 수리일(등록일) : 2013.4.23. - 위반일자 : 2016.5.22.
 - 신고기한 : 2016.5.23~2016.9.9.
5. 위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이 진행됨을 알려 드리오며,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시설안전과 ☎(02)2133-82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 2016-1761호**

2017년도 서울광장 사용신고서 접수 공고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의거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연도 서울광장 사용일을 미리 확정하고자 하오니, 2017년도에 서울

광장을 사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

1. 사용신고서 제출 대상

2017년도에 서울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 또는 ‘사용일’에 연례적인 기념 행사나 충분한 사전준비 및 홍보 등이 필요한 행사를 하고자 하는 자

2. 사용신고 대상일

2017.1.1~12.31 기간 중 사용기간이 6일 이내이며, 다음 표에서 안내한 사용제한 기간 및 장소가 아닌 경우

○ '17년도 사용제한 기간 및 장소(안)

제한내용			사용 가능 장소
기간	사유	장소	
' 17.01.01~02.28	스케이트장 설치운영	잔디·동편	남측(1,200㎡)
' 17.03.20~04.30	잔디 식재 예정기간	잔디 광장	동편(2,000㎡), 서편(1,200㎡)
' 17.11.17~12.31	스케이트장 설치운영	잔디·동편	남측(1,200㎡)

3. 신고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8.25.(목) ~ 9.8.(목) 09:00~18:00(공휴일제외)

나. 접수처 : 서울특별시 총무과(서울시청 본관 7층)

다. 제출서류 : 서울광장 사용신고서, 행사계획서, 사용위치도, 시설물설치 내역 및 원상복구 계획서

※ 공고문에 첨부된 신고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하고, 기타 연례적인 기념행사, 충분한 사전준비 및 홍보 등이 필요한 행사임을 입증할 서류 제출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1) 방문접수 : 서울특별시 총무과(본청사 7층)

2) 우 편 : 2016.9.8. 18:00까지 서울시 우편 접수분에 한함

- 주 소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총무과

3) 모사전송 : 02-2133-0771

4) 전자우편 : jcmyny@seoul.go.kr/ dreamkiho@seoul.go.kr

※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한 접수는 반드시 접수사실 확인

4. 우선수리 대상 및 신고수리 제한 대상

(「서울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참조)

가. 우선수리 대상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일 또는 기념일의 경우
- 2) 연례적으로 광장을 사용한 행사로서 행사준비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행사
- 3) 그 밖에 공익적 행사로서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나. 신고수리 제한 대상

- 1)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 2) 시민의 신체·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수리결과 공개

‘서울특별시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도 신고수리 대상 행사를 선정하여 광장운영 홈페이지(<http://plaza.seoul.go.kr/>) 등에 2016년 10월중 공개 및 개별 통보

※ 수리되는 모든 행사는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

6. 기타(유의)사항

가. 사용제한 기간 및 장소를 확인한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용신고 수리에 따른 사용료는 추후별도 지정되는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사용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신고서상에 기재된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됩니다.

바.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총무과 담당 전기호(☎ 2133-5665)
 담당 정창민(☎ 2133-5640)
 담당 이준행(☎ 2133-5644)

첨 부: 서울광장 사용신고서식 1부.

첨 부 2

서울광장 이용 준수사항 동의서

1. 시설물 설치

- 가. 시설물은 신고된 장소에 시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통행로 확보)
 ▶ 설치 금지 : 잔디광장, 서울도서관 앞, 지하철 1호선 5번 출구, 분수대 및 횡단보도 주변
- 나. 시설물 설치·철거 시에는 안전펜스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작업장 등의 안전기준을 준용
 ▶ 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만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서울시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음
- 다. 잔디광장 내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다만, 시설물(의자 등)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잔디보호대를 깔고 사용해야 하며, 당일 설치 및 철거를 원칙으로 함
 ▶ 우천 시에는 잔디보호를 위해 잔디광장에서의 행사는 금지됨(우천시 행사를 강행하여 잔디를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
- 라. 광장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없으며 광장 내 시설물 파괴 등 훼손된 경우 행사 주최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함

2. 소음기준 : '소음진동 관리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규정된 기준 준수

〈소음·진동 관리법상의 확성기 소음 기준〉

시간대별	아침, 저녁(05:00 ~ 07:00, 18:00 ~ 22:00)	주간(07:00 ~ 18:00)	야간(22:00 ~ 05:00)
옥 외 설 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소음 기준〉

대상 지역 \ 시간대	주간(해 뜨 후 ~ 해 지기 전)	야간(해 진 후 ~ 해 뜨기 전)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그 밖의 지역	75 이하	65 이하

3. 행사장 관리

- 가. 행사시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나. 1,000명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행사는 공연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재해대처계획을 사용일 7일전까지 해당 구청에 제출하고 응급실 및 화장실을 설치
- 다. 폭죽, 불꽃놀이, 풍선 날리기, 종이 꽃가루 등 효과 연출용 물품사용 금지
- 라. 서울광장은 금연구역으로 행사장에 질서요원을 배치하여 금연 계도에 노력하여야 함
- 마. 광장 및 주변 도로에는 차량을 주차 할 수 없으므로, 필요시 별도의 장소를 확보 조치
 (서울광장 주변 도로에 불법 주차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견인조치 될 수 있음)
- 바. 행사시 이동상인 단속과 청소인력을 상시 배치하여 광장 질서와 청결 유지

4. 기타 제한사항

- 가. 서울광장 사용신고 수리 후 제3자에게 서울광장 사용을 양도·양수(전대)할 수 없음
- 나. 광장 내에서 일체의 협력업체 등 기업광고, 각종 모금행위, 판매행위는 할 수 없음
- 다. 광장 내에서 음식물 취사 및 동물 반입이 예상되는 행사는 할 수 없음
- 라. 서울광장 내에서는 잔디보호를 위해 운동경기를 할 수 없으며, 참가비 또는 회비모금 등 광장 사용과 관련하여 일체의 징수행위를 금지
- 마. 행사장 내에는 행사 안내소 및 행사안내 표지판 등 행사 관련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사용신고 순위)의 사용신고 순위는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인 09시부터 18시까지만 적용하며, 같은 날 09시부터 18시까지 접수한 경우는 동일한 신고순위로 인정함
- 위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 . . . 주 최 자 〇 〇 〇 (인) 신 고 자 〇 〇 〇 (인)

서울광장 사용신고서

서울광장 사용신고서				
행 사 명 칭				
사 용 목 적				
사 용 일 시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시간 분)		
주 최 자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F A X	()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직 업	
주최단체의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직 업	
연락책임자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직 업	
사 용 인 원			사용면적	㎡
행 사 내 용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서울광장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1. 행사계획서(사용장비, 시간계획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 2. 사용 위치도(현장답사 후 평면도 표시) 3. 시설물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기타시설물 설치시) 4. 안전관리계획서(시설물 설치 및 이용, 광장사용자, 기타 행사참여자 등 대상)				

[별지 2-1호 서식]

행 사 계 획 서

☐ 행사개요

- 일 시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장 소 : m²(서울광장 편)
- 참석 인원 : 명
- 주최·주관 :
- 내 용 :

☐ 행사내용

일 시	행 사 명	내 용	비 고
	시설물설치		
	사 전 행 사		
	본 행 사		
	시설물철거		

☐ 추진대책

- 참가자 안전 대책
- 행사 후 청소대책
- 광장주변 주정차 금지 및 대중교통이용 대책(안)
‘서울광장 주변 도로는 주차 금지구역으로 불법 주차 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될 수 있습니다.
주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광장 인근 주차장 등 별도의 장소를 확보하시기 바라며, 안 내요원 등을 배치하여 불법 주차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상인 단속 대책
- 설치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대책

☐ 기 타

- 무대설치 등 시안(상세 평면도, 입면도 등 ※ 별도첨부 가능)
※ 행사계획서는 자유로이 작성하되 파워포인트 등 제출 가능

[별지 2-2호 서식]

서울광장 사용 위치도

(행사장소, 시설물 배치 등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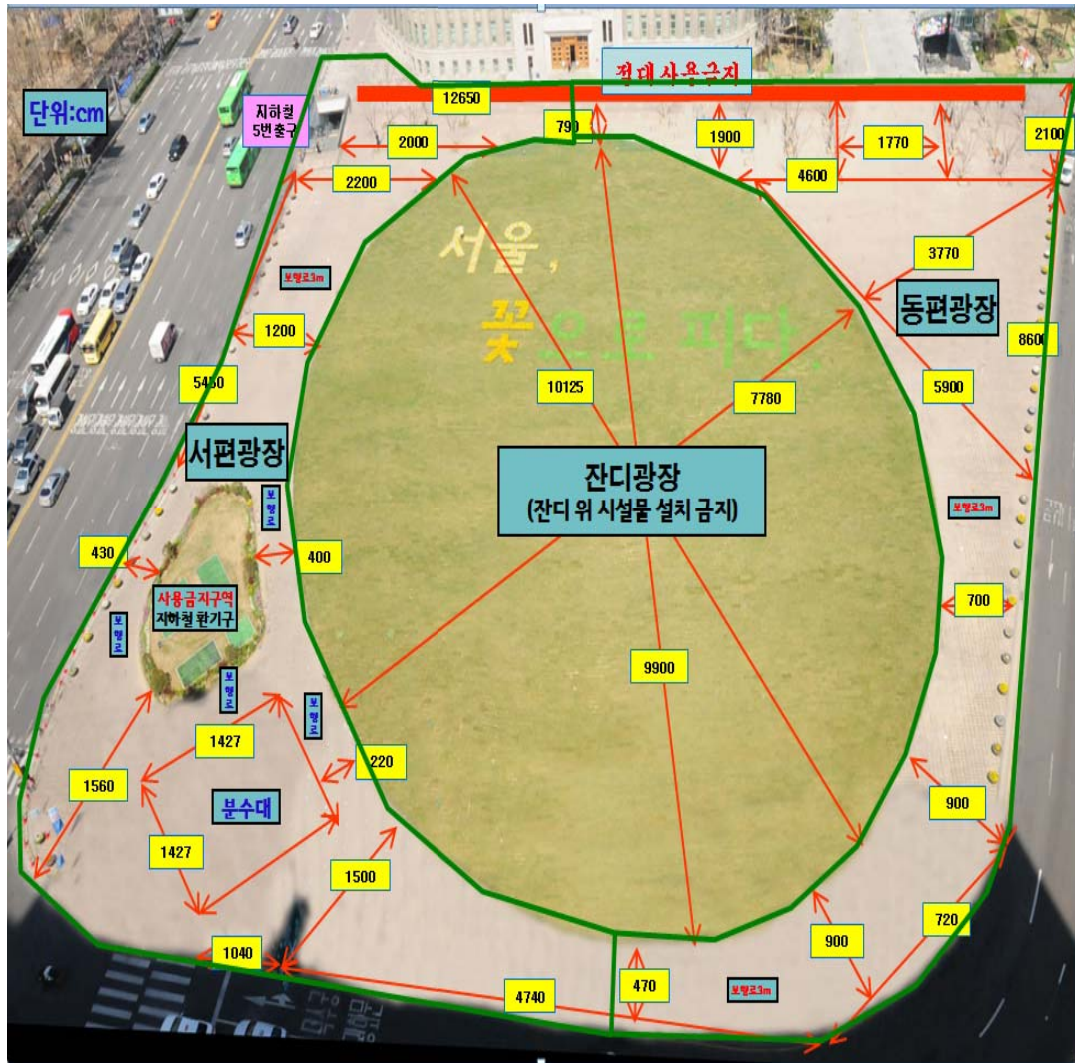
■ 사용장소 표기



- ▷ 사용 위치도는 서울광장을 사용하시는 분의 편의를 위해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를 수 있음
- ▷ 광장전체면적 : 13,207㎡(잔디부분 6,449㎡, 잔디외곽 화강석 부분 6,758㎡)
- ▷ 서울광장 주변 도로에 불법 주차 시에는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 될 수 있음

[별지 2-2호 서식 참고자료]

서울광장 실측 도면



▷ 서울광장 실측도면은 서울광장 내에 행사용 천막이나 무대 설치 등을 위한 위치 안내 등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며, 실제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별지 2-3호 서식]

시설물 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

☐ 시설물 설치 내역

시 설 명	규 격(m) (가로×세로×높이)	사 용 용 도	개 수

※ 행사를 위해 설치되는 모든 시설물 기재 (동원장비, 무대, 테이블, 의자, 현수막, 음향 등)
 - 현수막 등에 새겨진 문구를 “사용용도”란에 기재, 음향 : 스피커 출력용량 반드시 기재

☐ 원상복구 계획 : 시설물 철거, 쓰레기 수거방법 등

☐ 시설물 철거

-
-
-

☐ 쓰레기 수거방법(청소용역 계약 등)

-
-

[별지 2-4호 서식]

안전관리계획서

- 행사 개최개요
- 참여 예상 인원 : 명
- 주요내용·시설물 :
예시) 문화공연 - 행사용 무대 1동, 천막 20 동, 홍보 조형물 1개 등

- ☐ 안전 관리요원

 - 총괄책임자 : 성명 전화번호
 - 위치별배치

위 치 별	인 원	책임자(전화번호)	안전관리요원
광장 동편			
분수대·환풍구			
서편·5번출구			
잔디광장			
광장주변 도로			

- ☐
- 주요시설물보호

시설물별	조 치 사 항	책 임
무대	안전펜스 설치	
분수대·환풍구	안전펜스 설치, 안전요원 배치	
서편·5번출구	안전요원 배치	
잔디광장	안전요원 배치	
광장주변 도로	주정차금지, 안전요원 배치	

- ☐
- 비상시 조치사항

발생유형별	조치사항	책임
신고	경찰서·소방서 전화	
응급의료	구급차 전화()	
차량통제	남대문경찰서 교통과(2096-8345)	

☐ 시간별 안전대책

시간	세 부 내 용	안 전 조 치 방 안

☐ 기타 안전대책

- 보험가입 여부 : 가입, 미가입 ※ 해당 부분 O로 표시
- 응급의료 조치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 문화 공연·행사·축제 등은 119 구급요원 등을 현장에 배치
 - ▷ 민간단체의 공연·행사·축제·집회(시위) 등은 사전에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민간 이송업체 또는 병원구급차 이용 조치
- 기타, 야간 행사의 경우 참여 시민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안전선(safety line) 등을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증가 배치

※ 위 사항을 포함하여 서울광장에서 개최되는 행사 특성에 맞게 별도의 안전관리계획 제출 가능

구 고 시

◆ 종로구고시 제2016-89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총독부고시 제722호(1936. 12. 26.) 및 건설부고시 제432호(1963. 7. 1.)로 결정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3가 53-43번지 일대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5일

종 로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법원 판결 이행을 위해 대학교 점유구간 제척 및 현황도로 선형을 반영하여 일부구간 선형을 변경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470	명륜3가 55-1	명륜2가 138-5	일반 도로	-	건설부고시 432 (‘63.7.1.)	일부구간 선형변경
변경	소로	2	4	8	국지 도로	470	명륜3가 55-1	명륜2가 138-5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	6~8	국지 도로	840	가회동 1-33	명륜3가 55-1	일반 도로	-	총독부고시 722 (‘36.12.26.)	일부구간 선형변경
변경	소로	3	-	6~8	국지 도로	840	가회동 1-33	명륜3가 55-1	일반 도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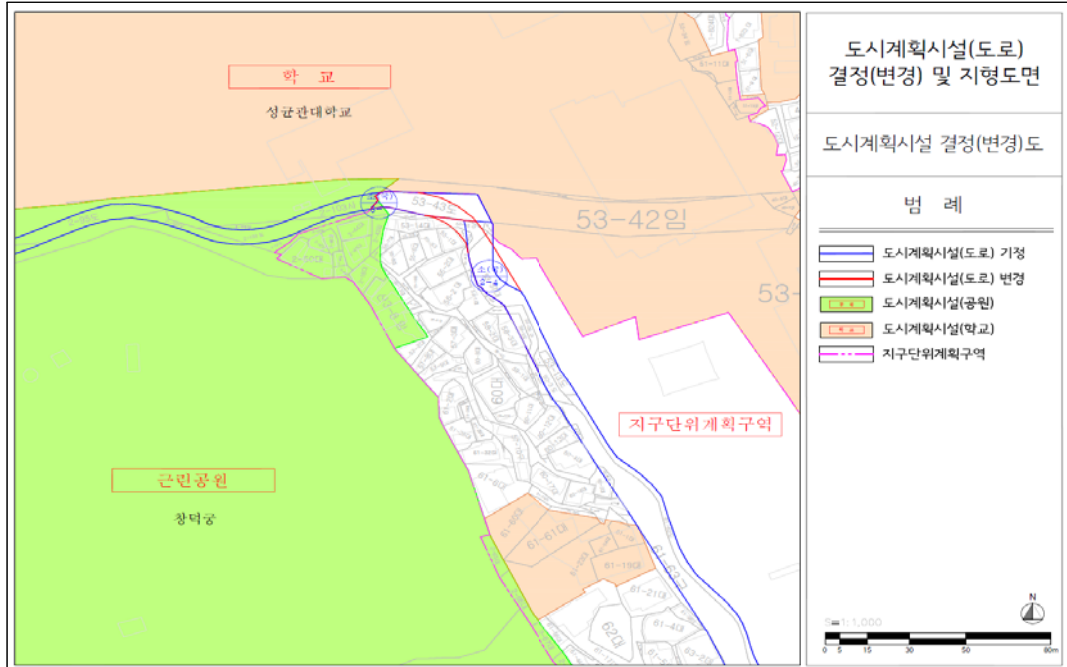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종로구 도시개발과(☎2148-2663) 및 도로과(☎2148-3164)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성동구고시 제2016-80호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772 일대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5일

성 동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도시철도)	위 치	면적(㎡)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철도	마장정거장 (5호선)	성동구 마장동 772번지 일대	4,916.5	-	4,916.5	건고시695 (90.10.13)	선형 변경

2) 변경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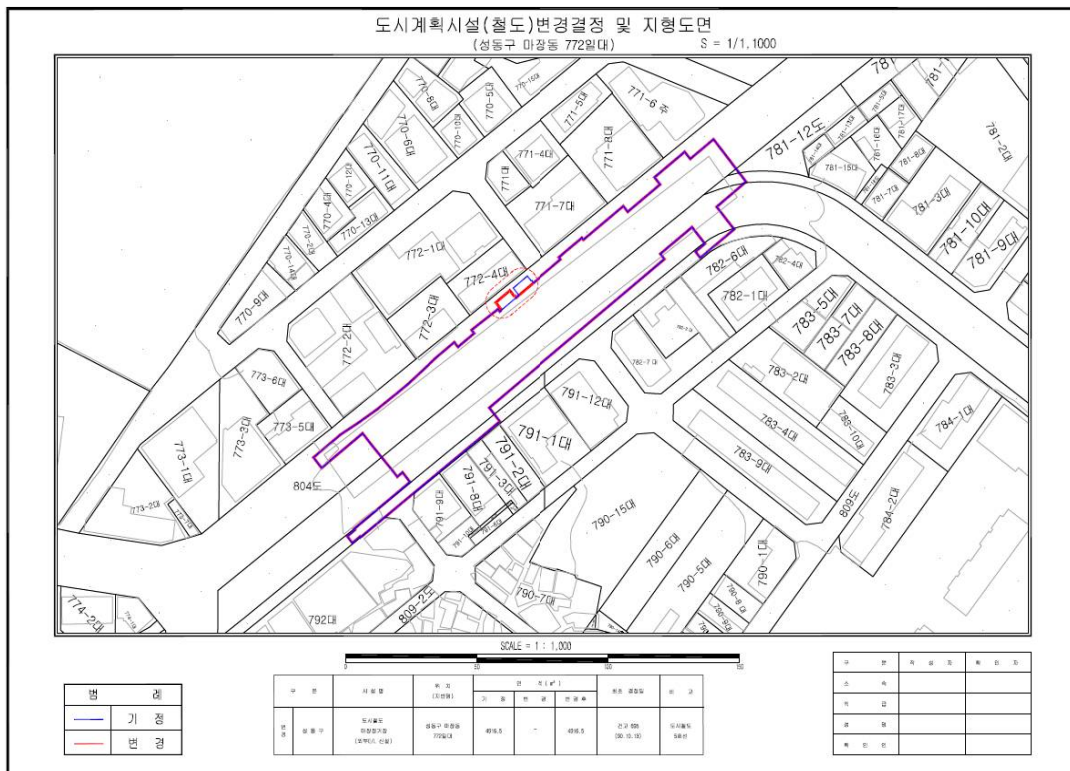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철도 (마장정거장) 5호선	○ 도시계획시설 선형 변경 (면적 변경 없음)	○ 이면도로 및 횡단보도와 인접한 승강시설에 대해 보 행자 안전 등을 고려하여 위치 변경.

나. 지형도면: 별첨

※ 게재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주민들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계획과(☎2286-5554)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 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광진구고시 제2016-91호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1번지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6조·제97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5일

광진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광진구 능동로 120(화양동 1번지 외 31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 2) 사업의 명칭 : 건국대학교 신공학관 증축공사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1) 사업시행면적 : 460,443.20㎡
- 2) 사업내역(신공학관 증축허가 신청)
 - 지하2층/지상12층, 연면적 25,375.26㎡, 1개동 증축

라.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1) 성명 :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김경희
- 2) 주소 : 광진구 능동로 120(광진구 화양동 1번지)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1) 착수년월일 : 허가일(실시계획변경인가일)
- 2) 준공예정일 : 2016.08.30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없음

사.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아. 관계도서 : 생략(관계도서는 광진구청 건축과(☎450-7736)에 비치).

◆ 성북구고시 제2016-108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419호(2015.12.31.)로 상월곡동 삼태기마을 주거환경관리구역의 정비계획상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공공공지) 결정된 상월곡동 삼태기마을 주거환경관리구역 기반시설 설치사업(도로 및 공공공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5일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공공공지)사업

나. 사업개요

사업의 명칭	사업의 위치	사업의 규모	최초 결정고시	비고
상월곡동 삼태기마을 주거환경관리구역 기반시설설치사업 (도로 및 공공공지)	상월곡동 24-30 ~ 산 7-15	B = 4m L = 32m	서울특별시 고시 제205-419호 (2015.12.31.)	도로
	상월곡동 24-319일대	면적 = 176.0㎡		공공공지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성북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고시일로부터 2017. 12. 31.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따로붙임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도시재생디자인과(☎02-2241-279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 : 성북구청장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사업의 명칭 : 상월곡동 삼태기마을 주거환경관리구역 기반시설
 설치사업(도로 및 공공공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면적 (㎡)	소 유 권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공유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성북구 상월곡동 24-38	대	99	84	최병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210 교오동트리폴리스1 씨-3411				
2	성북구 상월곡동 24-319	임야	874	70	기획재정부	750/874					
					김문양	3/874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월곡동 24-221	성북구		임류	
					이정수	29/874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월곡동 24-72				
					이영식	41/874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월곡동 24-319	노영자	서울특별시 종량구 망우동 506-3 씨-101	근저당권	
					이장호	51/874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월곡동 24-47				
3	성북구 상월곡동 24-43	대	132	107	기획재정부						
4	성북구 상월곡동 24-198	대	30	26	기획재정부						
5	성북구 상월곡동 24-397	대	8	8	민하영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15길 85 에이동 301호(장위동, 수정빌라)				

별첨 조 서

사업시행자 : 성북구청장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사업의 명칭 : 상월곡동 산태기마을 주거환경관리구역 기반시설
 설치사업(도로 및 공공공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	제 정 이 유 상 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종류 및 내용	
1	성북구 상월곡동 24-43외 1필지	건물	벽돌조 시멘트기와 지붕 및 스테트 지붕	58.74	주택	송용욱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월곡동 24-197					
2	성북구 상월곡동 24-43외 1필	건물	세멘 블록 세멘 기와	40.44	주택	임민복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월곡동 24-38					미등기
3	성북구 상월곡동 24-43	건물	세멘조	33.058	주택	임의순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월곡동 24-198					기준 무허가
4	성북구 상월곡동 24-38	건물	세멘조	72.7276	주택	임민복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월곡동 24-38					기준 무허가

위 치 도



◆ 노원구고시 제2016-76호

도시계획시설사업[불암산도시자연공원(중계지구)]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 7. 9.)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70호(2014. 2. 27)로 공원조성계획이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 제2016-26호(2016. 3. 24.)로 실시계획인가고시(최초), 서울시노원구공고 제2016-630호(2016. 8. 4.)로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한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산95-1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사업[불암산도시자연공원(중계지구) 조성]에 대한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편입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하며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3. 관련 내용은 노원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8월 25일

노 원 구 청 장

■ 사업개요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산95-2번지 일대

나. 사업종류 및 명칭 : 불암산도시자연공원(중계지구) 조성

다. 면 적 : 8,649㎡

라. 사업의 내용 :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 등

마. 사업시행자 : 노원구청장

바.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자등 권리명세 : 별첨

■ 고시방법 : 시보게재

■ 열람장소 : 노원구청 공원녹지과(공원기획팀 ☎2116-3943, 노원구 노해로 437)

토지조서

사업명 : 불암산도시자연공원(중계지구) 조성
최초 실시계획인가고시 : 2016. 3. 24.

소재지 지번	지목	이용 상황	지적 (㎡)	면적 (공유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중계동 신95-2	임야	임야 6,149		6,149	이종호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80(중계동)					
중계동 신95-1	임야	임야 23,456		2,000	김병호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41길 162, 202호(홍은동, 동이아파트)					
					이승문	인천시 부평구 원적로 361, 106동 304호(신북동, 한화아파트)	이정연	인천 남동구 방축로 501, 5동 302호(간석동, 우성아파트)			
					정강현	인천 남동구 석정로574번길 9-15 102호(간석동)					
					조규춘	충남 태안군 남면 안면대로 1685					
					대한불교 조계종 보현사	노원구 상계동 1291					
중계동 신96	임야	임야 12,883		500	김이현	송파구 송이로17길 46-8, 3층 302호(가락동)					
					이광희	도봉구 마들로 646, 106동 201호 (양학동, 방학동삼영대인아파트)					
					홍순정	중로구 복춘로 94-5, 30호(화동)					
					홍해숙	서초구 동광로19길 51, 307호 (임배동, 래미안방배메어뉴)					
					홍순영	서초구 신반포로 270, 112동 40호 (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					

물 건 조 서

사업명 : 불암산도지사연공원(중계지구) 조성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조및 규 격	수량	실제 이용 현황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내용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노원구 중계동 산95-1	가건물	목조, 판넬, 시멘트	255㎡	주거용	정점례	노원구 중계동 산95-1				
2	노원구 중계동 산95-1	가건물	목조, 판넬	72㎡	창고	정점례	노원구 중계동 산95-1				
3	노원구 중계동 산95-1	가건물	목조, 판넬	45㎡	창고	정점례	노원구 중계동 산95-1				
4	노원구 중계동 산95-1	가건물	목조, 판넬	39㎡	창고	정점례	노원구 중계동 산95-1				
5	노원구 중계동 산95-1	아치형 울타리 (입구)	철재, 비닐 9m*5m	1식	진입로	정점례	노원구 중계동 산95-1				
6	노원구 중계동 산95-1	가설물	목조, 판넬 2m*2m	1식	화장실, 창고	정점례	노원구 중계동 산95-1				
7	노원구 중계동 산95-1	파이프, 철판 (다리)		1식		정점례	노원구 중계동 산95-1				
8	노원구 중계동 산95-1	수목	두릅나무	300주		정점례	노원구 중계동 산95-1				
9	노원구 중계동 산95-1	수목	대추나무	2주		정점례	노원구 중계동 산95-1				
10	노원구 중계동 산95-1	수목	앵두나무	1주		정점례	노원구 중계동 산95-1				
11	노원구 중계동 산95-1	전기시설		1식		정점례	노원구 중계동 산95-1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조및 규 격	수량	실제 이용 현황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내용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2	노원구 중계동 산95-1	수도시설		1식		정점례	노원구 중계동 산95-1					
13	노원구 중계동 산95-1	전기보일러		1식		정점례	노원구 중계동 산95-1					
14	노원구 중계동 산95-1	정화조		1식		정점례	노원구 중계동 산95-1					
15	노원구 중계동 산95-1	등물	개	6마리		정점례	노원구 중계동 산95-1					
16	노원구 중계동 산95-1	개집	철재	6식		정점례	노원구 중계동 산95-1					
17	노원구 중계동 산95-1	수목	은행나무	1주		정점례	노원구 중계동 산95-1					
18	노원구 중계동 산95-1	수목	오동나무	1주		정점례	노원구 중계동 산95-1					
19	노원구 중계동 산96	가건물	목조, 시멘트, 철근	82㎡	사육시설	김순덕	노원구 중계동 산96					
20	노원구 중계동 산96	연탄보관함	철재2.5m*1m	1식		김순덕	노원구 중계동 산96					
21	노원구 중계동 산96	평상	목재 2m*1m	1식		김순덕	노원구 중계동 산96					
22	노원구 중계동 산96	창고	철재 3.5m*4m	1식	창고	김순덕	노원구 중계동 산96					
23	노원구 중계동 산96	보일러(연탄)		1식		김순덕	노원구 중계동 산96					
24	노원구 중계동 산96	전기시설		1식		김순덕	노원구 중계동 산96					
25	노원구 중계동 산96	수도시설		1식		김순덕	노원구 중계동 산96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조및 규 격	수량	실제 이용 현황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관리 내용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26	노원구 중계동 산96	동물	개	50마리		김순덕	노원구 중계동 산96				
27	노원구 중계동 산96	실내개장	철재	90개	개장	김순덕	노원구 중계동 산96				
28	노원구 중계동 산96	사육시설	파이프	1식		김순덕	노원구 중계동 산96				
29	노원구 중계동 산96	석축	시멘트, 석조	1식		김순덕	노원구 중계동 산96				
30	노원구 중계동 산96	헨스	비닐, 파이프, 40m	1식		김순덕	노원구 중계동 산96				
31	노원구 중계동 산96	수목	두릅나무	6주		김순덕	노원구 중계동 산96				
32	노원구 중계동 산96	수목	썰레꽃	2주		김순덕	노원구 중계동 산96				
33	노원구 중계동 산96	수목	단풍나무	1주		김순덕	노원구 중계동 산96				
34	노원구 중계동 산96	수목	신수유	1주		김순덕	노원구 중계동 산96				
35	노원구 중계동 산96	수목	매화나무	1주		김순덕	노원구 중계동 산96				
36	노원구 중계동 산96	수목	사철나무	1주		김순덕	노원구 중계동 산96				
37	노원구 중계동 산96	수목	취룡나무	1주		김순덕	노원구 중계동 산96				
38	노원구 중계동 산96	수목	영산홍	1주		김순덕	노원구 중계동 산96				
39	노원구 중계동 산96	수목	주목	1주		김순덕	노원구 중계동 산96				
40	노원구 중계동 산96	수목	게나리	2주		김순덕	노원구 중계동 산96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조및 규 격	수량	실제 이용 현황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관리 내용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41	노원구 중계동 산95-2	분묘	유연단장	1기		박길천	노원구 중계동 90-41				
42	노원구 중계동 산95-2	정화조		1식		이종호	노원구 중계동 산95-2				
43	노원구 중계동 산95-2	가건물	비닐하우스	36㎡	창고	이종호	노원구 중계동 산95-2				
44	노원구 중계동 산95-2	가건물	비닐하우스, 목재	47㎡	창고	이종호	노원구 중계동 산95-2				
45	노원구 중계동 산95-2	가건물	판넬	60㎡	창고	이종호	노원구 중계동 산95-2				
46	노원구 중계동 산95-2	가건물		1㎡	화장실	이종호	노원구 중계동 산95-2				
47	노원구 중계동 산95-2	평상	5m*2.5m	1식		이종호	노원구 중계동 산95-2				
48	노원구 중계동 산95-2	보도블럭	7m*4m	1식	바닥포장	이종호	노원구 중계동 산95-2				
49	노원구 중계동 산95-2	보도블럭	4m*4m	1식	바닥포장	이종호	노원구 중계동 산95-2				
50	노원구 중계동 산95-2	수도시설		1식		이종호	노원구 중계동 산95-2				
51	노원구 중계동 산95-2	전기시설		1식		이종호	노원구 중계동 산95-2				
52	노원구 중계동 산95-2	건자재		1식		이종호	노원구 중계동 산95-2				
53	노원구 중계동 산95-2	석상		6개		이종호	노원구 중계동 산95-2				
54	노원구 중계동 산95-2	수목	두릅나무	100주		이종호	노원구 중계동 산95-2				
55	노원구 중계동 산95-2	수목	복숭아	200주		이종호	노원구 중계동 산95-2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 이용 현황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내용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56	노원구 중계동 산95-2	수목	감나무	10주		이종호	노원구 중계동 산95-2				
57	노원구 중계동 산95-2	수목	대추나무	30주		이종호	노원구 중계동 산95-2				
58	노원구 중계동 산95-2	수목	보리수나무	30주		이종호	노원구 중계동 산95-2				
59	노원구 중계동 산95-2	수목	사과나무	10주		이종호	노원구 중계동 산95-2				
60	노원구 중계동 산95-2	수목	자두나무	10주		이종호	노원구 중계동 산95-2				
61	노원구 중계동 산95-2	수목	소나무	5주		이종호	노원구 중계동 산95-2				
62	노원구 중계동 산95-2	수목	영산홍	30주		이종호	노원구 중계동 산95-2				
63	노원구 중계동 산95-2	수목	회양목	11주		이종호	노원구 중계동 산95-2				
64	노원구 중계동 산95-2	수목	단풍나무	30주		이종호	노원구 중계동 산95-2				
65	노원구 중계동 산95-2	벌통	판재	100통		이영달	노원구 중계동 602 비콘드림힐 101-1305				중계동 산95-2 주거용 벌통 포함

◆ 은평구고시 제2016-73호

도시관리계획(연서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20호(2011.10.27.)로 지구단위계획(계획수립) 결정된 연서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대조동 220-8 외 1필지 토지 소유자로부터 공동개발(지정)변경 제안이 있어,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16.07.27.) 결과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연서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5일
은 평 구 청 장

가. 변경결정 사유

- 단독개발 및 공동개발(권장) 토지를 공동개발(지정)로 계획하여 건축행위가 가능토록 변경하는 것임.

나. 도시관리계획(연서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조서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기정

위 치		필지면적 (m^2)	공동개발면적 (m^2)	계 획 내 용	
대조동	220-6	136.9	812.3	220-6, -7 공동개발 권장	공동개발 권장
	220-7	137.2			
	220-9	139.5		220-9, -10 공동개발 권장	
	220-10	133.9		-	
	220-11	38.0		단독개발	
	220-8	226.8	978.7	220-12, -16 공동개발 권장	공동개발 권장
	220-12	152.0			
	220-16	155.0		220-26, -31 공동개발 권장	
	220-26	147.4		220-27, -28 공동개발 권장	
	220-31	159.0		-	
	220-27	167.6		-	
	220-28	157.7			
	220-29	20.0			
	220-30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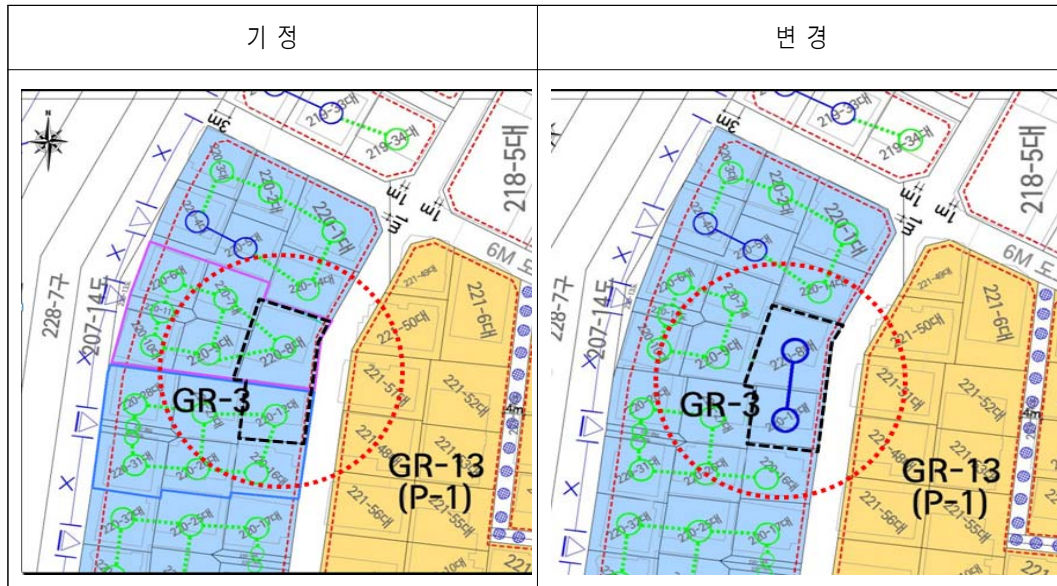
- 변경

위 치		필지면적 (<i>m</i> ²)	공동개발면적 (<i>m</i> ²)	계 획 내 용	
대조동	220-6	136.9	585.5	220-6, -7 공동개발 권장	공동개발 권장
	220-7	137.2		220-9, -10 공동개발 권장	
	220-9	139.5			
	220-10	133.9		-	
	220-11	38.0			
	220-8	226.8	378.8	220-8, -12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지정
	220-12	152.0			
	220-16	155.0	826.7	-	공동개발 권장
	220-26	147.4		220-26, -31 공동개발 권장	
	220-31	159.0		220-27, -28 공동개발 권장	
	220-27	167.6			
	220-28	157.7		-	
	220-29	20.0			
	220-30	20.0		-	

다. 기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 : 변경내용 없음

라.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도시계획과(☎351-7412, 741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도시관리계획(연서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강서구고시 제2016-69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5호(2002. 1. 9)로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결정 및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280(2002.12. 6)호로 건설사업계획 승인되어, 강서구고시 제2014-45호(2014. 5.8)로 변경결정, 강서구고시 제2014-116호(2014.12.26)로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강서구고시 제2015-92호(2015.10.15.)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5일

강 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150-34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철도 : 정거장)사업
- 명 칭 : 마곡지구 B7-4BL 신축관련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및 지하통로 연결공사

다. 규모 및 면적 (변경없음)

- 규 모 : 폭원 8.5m ~ 11.5m, 연장 4.7m ~ 9.6m
- 면 적 : 52.01㎡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성 명 : 대방디엠시티(주) 대표이사 이주현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74-17, 804(백석동)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 당 초 : 2015.10.15 ~ 2016.8.31.
- 변 경 : 2015.10.15 ~ 2016.10.31.

바. 변경사유 : 신축부지(마곡지구 B7-4BL) 공사와 연계하여 사업기간 조정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변경없음) : 따로붙임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시설물 준공 후 무상귀속

자. 기타 관계도서 : 생략 (강서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 ☎2600-6842).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공사명 : 마곡지구 B4-3BL 신축관련 마곡나루역(9호선) 휴게공간 설치 및 연결공사

연 번	소재지	지 목	지적(㎡)	사용할 토지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1	강서구 등촌동 709	도로	30,687.7	10.0	서울특별시	-				
2	마곡지구 B7-4 블럭	-	5,810.0	42.0	대방디엠시티(주) 대표이사 이주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74-17, 804 (백석동)				

구 공 고

◆ 용산구공고 제2016-596호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79호(1993. 3. 24.)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으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76호(2016. 6. 23.)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이 변경결정된 우리구 청파동2가 53-12 일대 숙명여자대학교에 대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작성된 실시계획을 같은법 제90조,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열람합니다.
2. 본 실시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용산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8월 25일

용 산 구 청 장

가. 인가신청의 요지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기 정: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2가 53-12 외 25필지
 - 변 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2가 53-12 외 34필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 명 칭: 숙명여자대학교 르네상스플라자 증축공사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학교법인 숙명학원 이사장 이돈희
 -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7길 100 숙명여자대학교
-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2017. 8. 31.
- (5)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 (가) 사업시행 면적

구 분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숙명여자대학교	80,710.20	79,745.40	80,710.20	증) 964.8㎡

(나) 건축물의 규모(건폐율)

구 분	밀도산정 기준면적(㎡)	법정건폐율 (%)	건 폐 율 (%)		관리건폐율 (%)	비 고
			기 정	변 경		
제1캠퍼스	40,050.90	34.31	22.61	22.93	34.00	
제2창학캠퍼스	36,219.10	49.84	33.06	33.10	40.00	
기숙사부지	4,440.20	60.00	38.63	38.63	45.00	

(다) 건축물의 규모(용적률)

구 분	구역면적(㎡)	법정용적률 (%)	용 적 률 (%)		관리용적률 (%)	비 고
			기 정	변 경		
①	34,033.90	200.00	160.32	161.57	235.00	일반관리구역
②	36,219.10	200.00	176.68	179.32	190.00	일반관리구역
③	4,440.20	200.00	198.33	198.33	200.00	일반관리구역
④	6,017.00	200.00	-	-	5.00	외부활동구역

나. 열람의 일시 및 장소

- (1)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열람장소: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2199-7395)

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별첨

라. 실시계획도서: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2199-73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구분	필지수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	시설결정면적 (㎡)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비고
							기 정	변 경		
제 1 캠 퍼 스	1	용산구 청파동 2가	1-171	학	1,309.9	1,309.9	1,309.9	1,309.9	학교법인숙명학원	
	2		47-2	대	207.6	207.1	-	207.1	학교법인숙명학원	금회일부추가
	3		47-3	대	26.4	26.4	-	26.4	학교법인숙명학원	금회추가
	4		47-4	대	49.9	49.9	-	49.9	학교법인숙명학원	금회추가
	5		47-5	대	195.1	195.1	195.1	195.1	학교법인숙명학원	
	6		47-8	학	3,131.8	3,131.8	3,131.8	3,131.8	학교법인숙명학원	
	7		47-20	대	321.3	321.3	321.3	321.3	학교법인숙명학원	
	8		47-21	대	208.9	200.0	-	200.0	학교법인숙명학원	금회일부추가
	9		47-32	대	11.6	11.6	-	11.6	학교법인숙명학원	금회추가
	10		47-40	대	17.5	17.5	-	17.5	학교법인숙명학원	금회추가
	11		47-41	대	44.0	44.0	-	44.0	학교법인숙명학원	금회추가
	12		48-2	대	405.4	405.4	-	405.4	학교법인숙명학원	금회추가
	13		48-3	대	99.9	99.9	99.9	99.9	학교법인숙명학원	
	14		48-4	대	10.2	10.2	10.2	10.2	학교법인숙명학원	
	15		48-12	대	2.9	2.9	-	2.9	학교법인숙명학원	금회추가
	16		48-13	대	7.3	7.3	7.3	7.3	학교법인숙명학원	
	17		53-38	대	20.4	16.5	16.5	16.5	국(기획재정부)	
	18		53-41	학	11,023.4	11,023.4	11,023.4	11,023.4	학교법인숙명학원	
	19		53-39	학	881.8	630.8	630.8	630.8	학교법인숙명학원 국(기획재정부)	지분630.8/881.8 지분251.0/881.8
	20		43-12	학	21,319.4	21,319.4	21,319.4	21,319.4	국(기획재정부)	
	21		53-6	학	1,020.5	1,020.5	1,020.5	1,020.5	학교법인숙명학원	
소 계					40,315.2	40,050.9	39,086.1	40,050.9		
제 2 창 학 캠 퍼 스	22	용산구 청파동 2가	543	학	1.2	1.2	1.2	1.2	학교법인숙명학원	
	23		54-9	학	11.3	11.3	11.3	11.3	학교법인숙명학원	
	24		64-39	학	9.8	9.8	9.8	9.8	학교법인숙명학원	
	25		144	학	2,727.8	2,727.8	2,727.8	2,727.8	학교법인숙명학원	
	26	용산구 청파동 3가	115	학	13,961.8	13,956.6	13,956.6	13,956.6	학교법인숙명학원	
	27		115-23	학	15,822.9	15,822.9	15,822.9	15,822.9	학교법인숙명학원	
	28		115-33	학	238.4	238.4	238.4	238.4	학교법인숙명학원	
	29		115-34	학	1,257.4	1,257.4	1,257.4	1,257.4	학교법인숙명학원	
	30		115-35	학	0.6	0.6	0.6	0.6	학교법인숙명학원	
	31		115-38	학	1,187.5	1,187.5	1,187.5	1,187.5	학교법인숙명학원	
	32		117-22	학	327.3	327.3	327.3	327.3	학교법인숙명학원	
	33		140-7	학	605.4	605.4	605.4	605.4	학교법인숙명학원	
	34		140-10	학	72.9	72.9	72.9	72.9	학교법인숙명학원	
	소 계				36,224.3	36,219.1	36,219.1	36,219.1		
기 속 사	35	청파동 2가	1-157	학	4,440.2	4,440.2	4,440.2	4,440.2	학교법인 숙명학원	
	소 계				4,440.2	4,440.2	4,440.2	4,440.2		
합 계					80,979.7	80,710.2	79,745.4	80,710.2		

◆ 도봉구공고 제2016-825호

도시관리계획(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06-140호(2006.4.27)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된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방학동 717-1번지의 도시계획시설(공원) 시설세부의 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열람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8월 25일
도 봉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도봉구청 도시계획과

다. 열람내용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나. 공간시설

③ 공원 결정(변경) (안)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생활권 공 원	소공원	방학동717-1	1,289	-	1,289	서고제2006-140호 2006.4.27.	
변경			어린이공원						

■ 변경사유서

위치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방학동 717-1	생활권공원	소공원 → 어린이공원	효율성이 낮은 소공원을 어린이공원으로 변경하여 공원시설 확충 및 이용 활성화

※ 상기 사항 외 변경사항 없음

라.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마.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도봉구청 도시계획과(2091-3563)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노원구공고 제2016-690호

도시계획시설사업[불암산도시자연공원(공릉지구)] 실시계획(변경)인가 열람 공고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07.09)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11호(2012.11.22)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하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 제2012-32호(2012.6.14)로 실시계획인가고시(최초), 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 제2016-26호(2016. 4. 7.)로 실시계획변경고시한(최종)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1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사업[불암산 도시자연공원(공릉지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변경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편입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하며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련 내용은 노원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오니 이 사업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공고 기한 내 열람 장소에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8월 25일
노 원 구 청 장

■ 사업개요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1번지 일대
- 나. 사업종류 및 명칭 : 불암산 도시자연공원(공릉지구) 조성사업
- 다. 면 적 : 24,351㎡
- 라. 사업의 내용 : 토지 보상 및 공원 조성 등
- 마. 사업시행자 : 노원구청장
- 바. 사업기간 : 2012. 6. 12. ~ 2016. 12. 31.
-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자등 권리명세 : 별첨

■ 변경사항 : 분할토지 지번 확정, 사업기간 연장

■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노원구청 공원녹지과(☎2116-3943, 노원구 노해로 437)

토 지 조 서

○ 사업명 : 불암산 도시자연공원조성사업(공릉지구)

○ 사업인가일 : 2012. 06. 14

기 정						변 정						비 고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이용상황	소 유 자		이해 관계인	소유권 외 관리의 종류 및 내용	소 유 자		이용 상황		이해 관계인		소유권 외 관리의 종류 및 내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하계동 산16-69	임야	2,500	2,500	임야, 경작지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하계동 산16-25	임야	2,777	2,777	경작지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하계동 산16-70	임야	2,025	2,025	임야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하계동 산16-71	임야	4,810	4,810	임야, 경작지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하계동 산16-72	임야	3,810	3,810	임야, 경작지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하계동 산16-73	임야	2,000	2,000	임야, 진입로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하계동 1-1	답	711	711	경작지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하계동 1	답	536	536	경작지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하계동 2	답	1,379	1,379	경작지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하계동 35	답	503	503	임야, 경작지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하계동 21-1	답	119	119	경작지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하계동 2-1	구거	294	294	경작지	노원구		변경없음								
하계동 46-1	구거	168	168	구거	노원구		변경없음								
공릉동 산2-3	임야	984	984	임야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하계동 산16-74	임야	1,300	1,300	임야, 경작지, 진입로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하계동 산16-27	임야	25,387	임야	변경이세천성공파종중 · 변경이세천성공파종중 · 변경이세천성공파종중 · 변경이세천성공파종중	하계동 31			
							하계동 산16-75	임야	435	진입로	변경이세천성공파종중 · 변경이세천성공파종중 · 변경이세천성공파종중 · 변경이세천성공파종중	하계동 31		추가	

◆ 양천구공고 제2016-911호

**도시관리계획(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재 열람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50호(2007.5.21)로 결정(변경)된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관련 양천구공고 제2015-854호(2015.08.13)로 열람공고 한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16년 제9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제68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 열람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5일

양 천 구 청 장

1. 재열람사유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 반영에 따른 계획(안) 변경
2. 열람기간 : 열람공고 다음날부터 14일간
3. 열람장소 : 양천구청 균형개발과(본관 7층, ☎ 2620-3530)
4.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92,743	-	192,743	1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776.2	-	1,776.2	0.9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6,741.6	-	6,741.6	3.5	
	제2종일반주거지역	9,591	-	9,591	5.0	
	제3종일반주거지역	103,997.6	감)27,150	76,847.6	39.9	
	준주거지역	70,636.6	증)27,150	97,786.6	50.7	

- 2) 용도지구, 도시기반시설 결정조서 : 변경없음
-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 생략(열람장소 비치)
- 라.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관한 결정 : 생략(열람장소 비치)
- 마.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생략(열람장소 비치)
5. 세부조서 및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
6. 의견제출 :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균형개발과(☎ 2620-353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구로구공고 제2016-104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11호(2014.12.4)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구로구공고 제2016-681호(2016.05.26)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 열람공고하여 구로구고시 제2016-94호(2016.6.16)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한 『천왕동 37-2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편입토지의 분할측량 성과결과 반영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9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고자 합니다.
2. 관련서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도로과(☎860-3127)에 비치하고 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본 열람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8월 25일

구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동 37-2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 칭 : 천왕동 37-2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규모(변경없음) : 도로개설 폭6m, 연장37.8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성 명 : 신순철
- 주 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11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026-703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변경인가일로부터 12개월

바. 열람기간 : 공보게재일 익일로부터 14일간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 별 첨

토 지 조 서

○ 사 업 의 명 칭 : 천왕동 37-2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모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당초	천왕동 37-2	답	1,983	35	신순철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311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026-703	경서농업협동조합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977-20	근저당권	
	변경	천왕동 37-11	전	39	39	"	"	"	"	"	천왕동37-2
2	당초	천왕동 38-1	전	407	42	김영화	경기도 파주군 파주읍 파주리 471	-	-	-	
	변경	천왕동 38-7	전	44	44	"	"	-	-	-	천왕동38-1

■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서초구공고 제2016-958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시행자(변경)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60호(2012.12.28)로 결정된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내 내곡동 368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에 대하여 시행자(변경)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실시계획 내용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5일
서 초 구 청 장

1. 인가신청의 요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368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 명칭 :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주차장2용지 주차전용건축물 신축공사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 성명 : (기존) (주)엘에스디(대표자 기세도)

(변경) (주)위본(대표자 기민영)

- 주소 : (기존)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92(쌍촌동)

(변경)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92-1(쌍촌동)

라. 사업의 규모(변경)

- 대지면적(변경없음) : 3,618㎡

- 건축면적 : (기존) 2,926.98㎡ → (변경) 2,937.67㎡(건폐율 81.20%)

- 연 면 적 : (기존) 19,440.50㎡ → (변경) 19,758.60㎡(용적률 229.97%)

- 층수(변경없음) : 지하4층/지상3층

- 주차대수 : (기존) 425대(지하 305대, 지상 120대) → (변경) 413대(지하 303대, 지상 110대)

- 변경된 시설별 면적

구 분		점유비율(%)	전용면적(㎡)	공용면적(㎡)	시설면적(㎡)
주차장		70.36	12,785.12	1,116.91	13,902.03
부대 시설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소매점)	27.06	4,427.97	918.25	5,346.22
	운전자휴게실, 화장실, 창고 등	2.58	510.35	0	510.35
	소계	29.64	4,938.32	918.25	5,856.57
합계		100.00	17,723.44	2,035.16	19,758.60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기존)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4개월 → (변경) 실시계획인가일 ~ 2017. 7.31
2.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3. 열람 및 의견 제출 장소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92), 내곡동 주민센터
 - 의견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도시계획과(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번호	토 지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1	서초구 내곡동	368일원	전	-	3,618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92-1 (쌍촌동)	(주)위본	-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남구공고 제2016-1441호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 폐지 결정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율현동 98-3 일원에 위치한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에 대하여 SH공사로부터 폐지 입안 요청이 접수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 폐지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8월 25일
 강 남 구 청 장

가. 목적 :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 폐지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나.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 폐지 결정(안)

○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 폐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방수설비	강남구 율현동 98-3 일원	706	감) 706	0	07.11.29 (서고2007-435호)

○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 폐지 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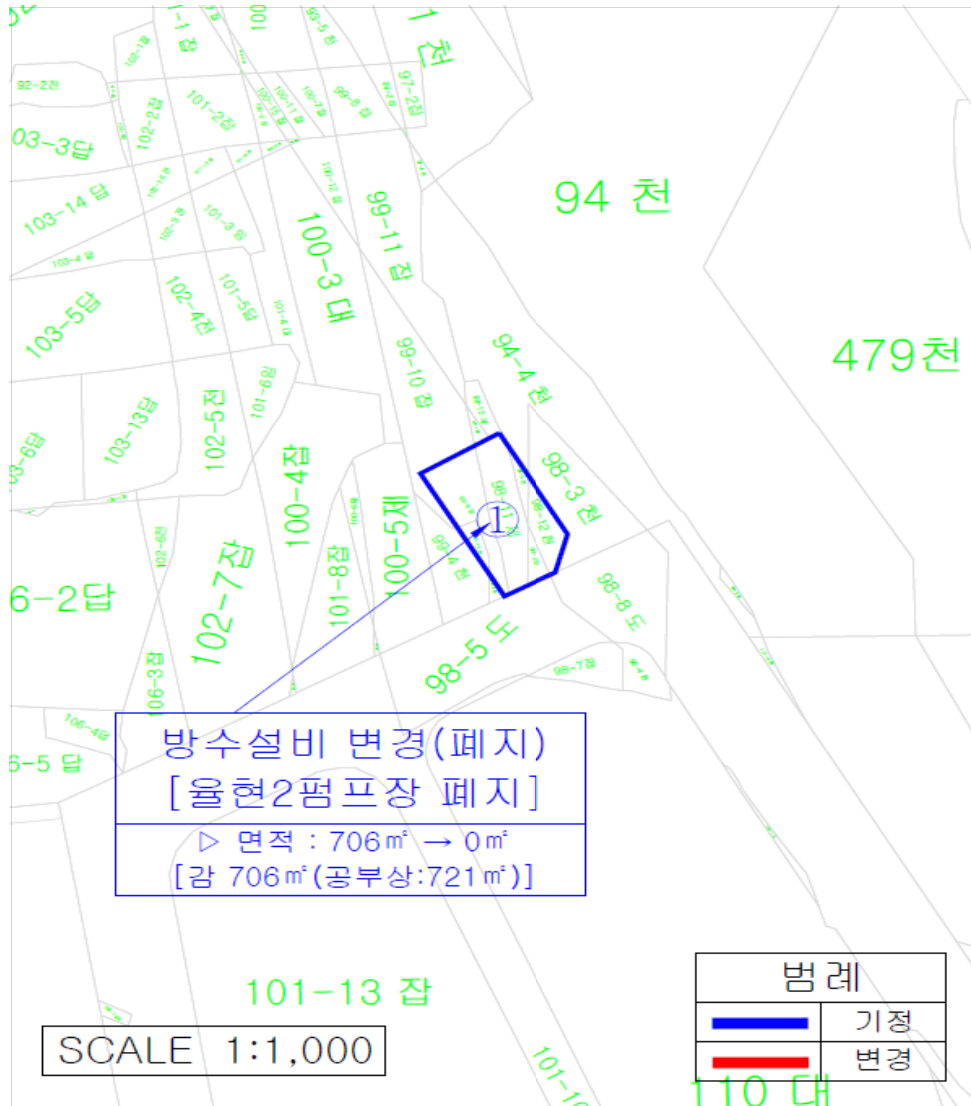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방수설비	방수설비 폐지 (면적 : 706㎡)	세곡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방수설비 폐지 (세곡2공공주택지구내 방수설비용지로 기능 이전)

다. 열람기간 : 신문게재일로 부터 14일간

라. 열람장소 : 강남구청 도시계획과(☎3423-6105)

마. 관련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자료와 같음).

<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 폐지결정(안) 도면 >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6-17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이에이치알앤씨(주)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310번길	성산대교 ~ 신행주대교	선박 1척 (고무보트)	한강 내 퇴적물조사를 위한 선박운항	2016. 9.05. ~ 2016. 9.07.	2016. 8.12.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6-17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	잠실철교	선박 2척 (기선1척, 부선1척)	잠실철교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선박 운항	점용허가일 ~ 2016. 9.30.	2016. 8.12.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6-17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한강대교 ~ 행주대교	선박 2척 (기선1척, 부선1척)	한강대교 보수공사를 위한 선박 운항	2016. 8.20. ~ 2016.12.19.	2016. 8.12.

사업소공고

◆ 한강사업본부공고 제2016-178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을 위반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 불명,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1. 건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 “세부내역 별첨” 참조
4. 공고기간 : 2016.8.25. ~ 2016.9.7.(14일)
5. 자진납부기간 : 2016.9.8. ~ 2016.9.21.(14일)
6. 수령방법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에서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7. 공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02-3780-0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시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승달 대상내역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 액(원)	자진납부 감면액(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1865	임*정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 관진구 명목로***길	(종곡동)
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1866	CI*** E JEAN F**COIS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하문로 ***-*	(부암동)
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1867	황*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회암로***번 길 ***-**	(산성동)
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1869	김*석, 김*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전라북도 군산시 설림안*길 **	(소룡동)
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1870	김*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	***호 (석촌동, 제우빌딩)
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1876	우*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길 **	***호 (신림동)
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1877	유*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고양시 화도읍 맏들로***번 길 **	***호 ()
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1879	관*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세솔로*길 **	***호 (삼송동)
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1882	맹*열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 ***	***호 (북천동, 더블유에스타워)
1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1884	변*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주조불응	서울특별시 강서구 병화대로*마길 **	(공향동)
1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1887	강*숙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번길 ***-**	***호 (상동, 디아드갤러리*)
1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1888	허*무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길 *-*	***호 (구로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 액(원)	자진납부 감면액(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1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1892	박*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 **	***동 ***호 (암사동, 선사현대아파트)
1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1894	이*학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길 **	(노량진동)
1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1895	한*철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차인물 명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서로 **	***호 (남주동)
1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1896	조*일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길 *	***동 ****호 (방화동, 강서센트레빌*차)
1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1903	유*현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난계로**길 **	(송인동)
1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1904	김*숙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길 ***-	*층 ***호 (신림동)
1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1907	염*주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호평로**길 ***-	***호 (방배동)
2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1908	김*집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길 ***-	***호 (길동, 길동빌라트)
2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1910	유*준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원로**길 **	지층 *호 (용산동*가)
2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1911	윤*석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차인물 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길 **	***호 (역삼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 액(원)	자진납부 감면액(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2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1912	김*미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	동 ***호 (반포동, 경남아파트)
2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1913	윤*석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 불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길 **	***호 (역삼동)
2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1917	이*중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로*길 *	***호 (본오동)
2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1918	남*민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흥길 **	***호 (반포동)
2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1920	윤*석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 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길 **	***호 (역삼동)
2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1921	윤*석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 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길 **	***호 (역삼동)
2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1924	윤*석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 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길 **	***호 (역삼동)
3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1925	DOU***TE M***NIE A***LA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 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길 *--*	***호 (한남동)
3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1926	김*숙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길 ***-	층 ***호 (신림동)
3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1928	김*숙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길 ***-	층 ***호 (신림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 액(원)	자진납부 감면액(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3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권위반과태료	2016-07	001932	NET***UTT II JA*** E W***EN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촌로 **	*층 (용산동*가)
3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권위반과태료	2016-07	001935	윤*석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 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길 **	***호 (역삼동)
3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권위반과태료	2016-07	001936	김*숙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길 ***	***호 (신림동)
3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권위반과태료	2016-07	001938	송*영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양로**길 ***	(구의동)
3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권위반과태료	2016-07	001939	우*용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 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길 **	***호 (청담동)
3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권위반과태료	2016-07	001940	최*석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빽배로**길 ***	지층동 *호 (빙배동)
3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권위반과태료	2016-07	001941	안*찬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문로 **	(모광동)
4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권위반과태료	2016-07	001942	김*숙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길 ***	*층 ***호 (신림동)
4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권위반과태료	2016-07	001943	윤*석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 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길 **	***호 (역삼동)
4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권위반과태료	2016-07	001945	김*현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나길 *	(동자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 액(원)	자진납부 감면액(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4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1947	문*석	지정된 장소외에서 비취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한 영업행위	70,000	56,000	수취인불 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길 **	***호 (역삼동)
4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1948	남*민	지정된 장소외에서 비취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한 영업행위	70,000	56,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공길 **	***호 (반포동)
4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1950	김*숙	지정된 장소외에서 비취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한 영업행위	70,000	56,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길	*층 ***호 (신림동)
4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1951	문*석	지정된 장소외에서 비취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한 영업행위	70,000	56,000	수취인불 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길 **	***호 (역삼동)
4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1959	김*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길 **	***동 ***호 (전원동, 신반포*지구아파트)
4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1962	김*숙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길	*층 ***호 (신림동)
4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1968	김*중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길 ***-**	(신림동)
5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1970	채*근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길 ***-*	*층***호 (광희동*가)
5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1972	김*호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원로**길 *	***호 (역삼동, 유경빌라)
5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1974	김*자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길 **	*층 ***호 (논현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 액(원)	자진납부 감면액(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5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1976	박*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이사불명	경기도 의정부시 금신로 ***-*	(신곡동)
5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1978	김*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번길	(신곡동)
5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1981	김*곤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번길 *	***호 (부평동, 필하모스주상복합)
5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1983	박*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가길	***동 ***호 (상계동, 은빛*단지아파트)
5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1993	안*열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상동구 무학로 **	***동 ***호 (하왕십리동, 텐즈힐*)
5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1994	박*정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로*길 **	***호 (구의동, 뉴현대빌라)
5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1996	이*득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길 ***-*	(길동, 지상원룸빌)
6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1997	송*순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길 **	(면목동)
6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1998	이*득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길 ***-*	(길동, 지상원룸빌)
6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1999	임*숙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회암로 ***	***동 ***호 (중앙동, 롯데캐슬)
6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007	김*형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	***동 ***호 (문촌동, 주공아파트)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립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 액(원)	자진납부 감면액(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6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008	김*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나길 **-*	***호 (정릉동, 동신아파트빌라)
6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011	강*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길 **	***호 (사당동)
6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013	전*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주소불명	강원도 양구군 동면 돌산령로 ***	()
6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017	이*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	***동 ***호 (상계동, 상계주공*단지아파트)
6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018	김*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가 길 **	*호 (여의도동, 초원아파트)
6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022	서*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역로 ***	***동 ***호 (신내동, 신내우디안*단지)
7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024	정*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안로**길 **-***	(성내동)
7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028	이*석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마길 *-*	(자양동)
7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029	이*미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사길 ***	***동 ***호 (보문동*가, 아남아파트)
7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038	한*중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구리시 장자대로***번길 **	***동 ***호 (토평동, 한일아파트)
7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041	김*민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로 ***	***동 ***호 (길동, 삼익파크)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립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 액(원)	자진납부 감면액(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7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052	김*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길 ***호 (전농동, 한창빌라)	납세자상세주소 ***호 (전농동, 한창빌라)
7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057	이*중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하남시 신정로 **	(천현동)
7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062	박*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	***호 (수유동 효성인텔리안오피스텔)
7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065	유*열, 정*교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길 **	***동 ***호 (답십리동, 답십리정슬우성아파트)
7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070	홍*표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길 **	(화양동)
8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076	김*화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 ***-***	***호 (월계동, 월계로주빌)
8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079	김*준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길 *	(종곡동)
8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083	김*국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 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길 **	***동***호 (삼성동, 롯데캐슬프레미어)
8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090	신*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복면 충절로 ****	***동 ***호 (중앙아파트)
8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091	이*섭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구리시 통구릉로**번길 **	***동 ***호 (인창동, 이름마을인창데미안아파트)
8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092	권*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	(능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 액(원)	자진납부 감면액(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86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096	황*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길 **	(구의동)
87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103	전*호, 전*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하북로 ***	***호 (천천동)
88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108	문*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가길	(청량리동)
89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109	김*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수차인물 영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	***동 ***호 (면목동)
90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112	이*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다길	***호 (용문동, 사인빌)
91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126	구*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길 **	***동***호 (창동동, 창답*차 이편한세상)
92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131	이*원	지정된 장소외에서 비취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한 영업행위	70,000	56,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일로 ***-*	(송정동)
93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133	신*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길 **	***동 ***호 (도선동, 성동삼성세트빌)
94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136	이*섭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독성로**길	(자양동)
95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137	문*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나길 **	(면목동)
96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140	오*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원로 **	B***호 (장안동)
97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147	김*진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변영로 **	***호 (자양동, 제이원하이텔)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립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 액(원)	자진납부 감면액(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9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148	라*철	바뀌기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덕정길 *****	동*****호 (성수동*가, 공영연립)
9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150	이*돈	바뀌기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호	***동 ***호 (내유동)
10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155	김*식	바뀌기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길 **	(하월곡동)
10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158	이*후	바뀌기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덕정*길 **	(성수동*가)
10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159	박*구	바뀌기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앙로*길 *****호	(중화동)
10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164	송*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돌레*길 ***	(성수동*가)
10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166	김*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원로*길 **	***호 (역삼동)
10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170	이*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 ***	***호 (장위동)
10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171	황*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로*길 **	***동 ***호 (중계동, 한화꿈에그린아파트)
10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172	이*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 **번길 ***호	B동 ***호 (한진빌라)
10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174	조*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수취인 불명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번길 **	*층동***호 (교문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립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 액(원)	자진납부 감면액(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분주소	납세자상세주소
10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175	전*	바뀌기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	(전농동)
11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177	정*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길 **	***동 ***호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11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178	해명***발 (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수차인 불명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로*번길 ***-	*층 ***호 ()
11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182	이*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수차인 불명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서로 **	***동***호 (웅신동, 웅원로일두크)
11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184	강*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길 ***-	***호 (구의동)
11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197	송*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길 **	***호 (잠원동)
11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198	김*준	바뀌기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길 ***-	(성수동*가)
11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199	추*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	(사당동)
11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201	WANG CH***JI, 이*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경로*길 *	***호 (정릉동)
11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202	이*열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길 ***-	(제기동)
11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204	신*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면목로*길 ***-	(면목동)
12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212	서*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로 ***	***동***호 (신도브레뉴아파트)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 액(원)	자진납부 감면액(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12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공관원위반과태료	2016-07	002213	김*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번길 **	***동 ***호 (용현동, 용현세아*차이파트)
12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공관원위반과태료	2016-07	002216	이*형, 김*숙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이천시 이설대천로 ****	***동 ***호 (증포동, 한솔솔파크*차이파트)
12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공관원위반과태료	2016-07	002221	최*준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길 ***-*	***호 (불광동)
12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공관원위반과태료	2016-07	002222	김*숙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길 **	(망원동)
12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공관원위반과태료	2016-07	002223	김*순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우정로**길 **	(망원동)
12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공관원위반과태료	2016-07	002226	셀*광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나길 *	***호 (대림동, 오션빌)
12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공관원위반과태료	2016-07	002227	김*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번길 ***-***	*동 ***호 (성사동, 영창빌라)
12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공관원위반과태료	2016-07	002231	정*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	***동 ***호 (암사동, 강동롯데캐슬퍼스트아파트)
12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공관원위반과태료	2016-07	002233	지*성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샘로**길 **	(미아동)
13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공관원위반과태료	2016-07	002235	박*윤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길 **	(군자동)
13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공관원위반과태료	2016-07	002239	한*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향*길 **	지흥 (신림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립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 액(원)	자진납부 감면액(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13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240	김*규	바뀌기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수막**길 ***	(금호동*가)
13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243	박*호, 박*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 **	**동 ***호 (부평동, 부평동아이파트)
13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244	김*훈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길 **	**호 (종곡동, 그린트리빌)
13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245	장*숙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	***호 (미국동, 갤럭시 인텔리전스)
13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248	윤*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로**번길 *	지*호 (은행동, 그린빌라)
13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249	우*숙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호대로***길 ***	(상일동)
13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250	조*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	***동 ***호 (북면동, 북한산푸르지오아파트)
13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257	최*무, 윤*옥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기길 **	***호 (상도동, 상도해미리빌라)
14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259	한*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로 **	***동 ***호 (명품하우스)
14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261	신*민	바뀌기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	(상봉동)
14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266	서*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길 **	***동***호 (상계동, 주공아파트)
14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267	김*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 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	***동***호 (신천동, 롯데캐슬드)
14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269	김*수	바뀌기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길 **	(화양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립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 액(원)	자진납부 감면액(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분주소	납세자상세주소
14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274	양*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 ***-*	(송정동, 이경자빌딩)
14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275	채*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연남*길 **	(양재동, 상지빌라)
14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284	문*득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양로*길 **	(자양동)
14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285	최*태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	(화양동)
14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286	조*곤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길 **	***호 (주암동, 청명그린빌라)
15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287	최*웅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길 **	B**호 (주암동, 수정빌라)
15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291	주식회사 **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 명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삼성대로 ***	***호 (신흥동, 한신프라자)
15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293	김*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 명	경기도 구리시 범발로 ***-*	***호 (토평동)
15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295	김*원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 **	***동 ***호 (하월곡동, 월곡두산위브아파트)
15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296	이*웅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원*길 **	***동 ***호 (성수동*가, 성수동동아그린아파트)
15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298	백*열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번지 **/*
15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303	문*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길 **	(중곡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립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 액(원)	자진납부 감면액(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분주소	납세자상세주소
15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306	김*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	B동 ***호 (능동)
15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315	(주)이제*** 엔씨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수차인물 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보로 ***-**-**	(작성중)
15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317	김*철, 이*웅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길 **	***동 ***호 (하월곡동, 월곡길올머가)
16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319	김*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운**길 **	***동 ***호 (봉천동, 관악파크푸르지오아파트)
16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324	홍*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길 **	*동 ***호 (신월동, 신인약수아파트)
16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338	지*미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림로**길 *-**	(작성중)
16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354	한*호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황송로 **	***동 ***호 (금광동, 래미인금광아파트)
16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355	우*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길 **	***호 (논현동)
16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356	김*태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가길 ***-**-**	(행단중)
16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359	H**G H**YU AN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가 길 **-**-**	(대림동)
16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360	윤*석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차인물 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길 **	***호 (역삼동)
16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366	김*숙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길 ***-**-**	*층 ***호 (신림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립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 액(원)	자진납부 감면액(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16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368	이*중	바뀌어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로*길 *	***호 (본오동)
17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375	이*진	바뀌어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 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길 **	(중계동)
17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376	이*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길 **	(동빙고동)
17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377	신*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 ***	***호 (황학동, 현양 Class)
17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379	문*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송인로*길 **	***동 ***호 (길음동, 길음동동부트레일아파트)
17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384	최*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	*동 ***호 (답십리동, 동서울한양아파트)
17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385	박*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대산로*번 길 **~**	(정발산동)
17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388	김*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공원로 ***	***동 ***호 (신흥동, 두산아파트)
17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389	이*희	바뀌어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무하로*번 길 **~**	()
17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390	이*호	바뀌어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담중앙*길 **	(용담동)
17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393	허*영	바뀌어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중구 대신로 ***	***호 (흥인동, 현대우일터)
18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395	김*산	바뀌어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 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원길 ***~*	***호 (반포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 액(원)	자진납부 감면액(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181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397	원*남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	***동 ***호 (개포동, 주공아파트)
182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398	문*호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명대로**길 ***-	(반포동)
183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400	이*우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길 **	(임사동)
184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402	조*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계로 **	***동 ***호 (하왕신리동 극동미라주 아파트)
185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405	차*홍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탄중로 ***	***동 ***호 (중산동, 중산마을*단지아파트)
186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407	이*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길 ***-	***호 (방배동)
187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459	정*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 **	*동 ***호 (부평동, 부평동아아파트)
188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461	백*정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중랑구상봉*동	***-
189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462	김*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 명	경기도 인양시 민안구 양화로***번 길 ***-	(박달동)
190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468	최*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길 ***-	(사당동)
191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553	이*주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길 *	*층***호 (신림동)

◆ 한강사업본부공고 제2016-179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수시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을 위반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수시분)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1. 건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 (수시분) 과태료 부과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 “세부내역 별첨 참조”
4. 공고기간 : 2016.8.25. ~ 2016.9.7.(14일)
5. 자진납부기간 : 2016.9.8. ~ 2016.9.21.(14일)
6. 수령방법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에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7. 공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02-3780-0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충달 대상내역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과세대상	부과금액 (원)	성명 /별명	반송사유	기본주소	상세주소
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0766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이*식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길 **	***동 ***호 (상암동, 상암월드컵파크*단지)
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0726	지정된 장소외에서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한 영업행위	70,000	윤*석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길 **	***호 (역삼동)
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0756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최*명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겸재로**길 **	B*호 (면목동)
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0818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권*호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길 ***	***호 (문정동, 은성빌라)
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0666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김*구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세발로 ***	(구로동)
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067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주**사 해*로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 ***	***호 (역삼동, Sunsc 빌딩)
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0762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이*훈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가길 ***	*층동 *호 (응암동)
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0674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김*영	이사불명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민로***번길 ***	(신흥동)
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0675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주*현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길 **	가동 지*호 (신월동, 남향빌라)
1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068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최*원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길 **	***호 (망우동, 삼흥하이빌)
1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0684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주)굿***보 사업단	이사불명	충청남도 부여군 구룡면 성충로 *****	()
1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0779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고*영	주소불명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	***동 ***호 (민락동, 민락주공아파트)
1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0822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강*욱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 **	(임사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과세대상	부과금액 (원)	성명 /법인명	반송사유	기본주소	상세주소
1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0690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강*철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길	***호 (화곡동)
1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0824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김*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주로***길	(논현동, *층)
1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0715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임*오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하정로*길	(신설동)
1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0741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윤*석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길	***호 (역삼동)
1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0810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SAT*** L DANE A***ANDER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길 ***-	*층 (이태원동)
1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0812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K***RI AB*** AHNED S***H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길 *	*층 (이태원동)
2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0813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윤*석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길	***호 (역삼동)
2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073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김*민, 이*배	폐문부재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로 ***	****동 ***호 (별내동, 별내아이파크)
2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076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송*석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	***동 ***호 (상계동, 상계주공*단지아파트)
2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0676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김*환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서로**길 ***--	B**호 (상계동, 각광빌라)
2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0677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박*을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가길	(구의동)
2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0740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장*근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서로**길 *	*등 ****호 (상계동, 한신*차이파트)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과세대상	부과금액 (원)	성명 /법인명	반송사유	기본주소	상세주소
2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0819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이*중	수취인부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	***동 ***호 (판교동, 판교원미들*단지아파트)
2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0667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유*두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양천구 새곡*길 *	(신월동)
2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0668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최*호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길 **	(자양동)
2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0669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신*철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다길 **--*	(행당동)
3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0672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김*민	폐문부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북정로**번길 *--*	B**호 (북정동, 파크빌라)
3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067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김*빈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길 **	(구의동)
3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0678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박*범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독성로**길 ***-	층 ***호 (자양동)
3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0679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방*식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독성로**길 **	(자양동)
3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0680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박*례	폐문부재	전라북도 군산시 선창*길 **--*	(중동)
3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0682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정*원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길 **	(성내동)
3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0776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이*나	폐문부재	경기도 김포시 풍무로**번길 **	***동 ***호 (풍무동, 풍무자이아파트)
3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0780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김*수	폐문부재	경상북도 인동시 은행나무로 ***--*	***동 ***호 (옥동, 옥동*주공아파트)
3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069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박*균	폐문부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번길 **	***호 (상동, 지호세르빌)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과세대상	부과금액 (원)	성명 /법인명	반송사유	기본주소	상세주소
3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0693	바뀌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김*심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동구 회수로 **	*동 ***호 (송현동, 동부센트레빌아파트)
4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071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조*조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벌로 ***	*동 ***호 (효성동, 동아아파트)
4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0719	바뀌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문*기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독성로**길 **	***호 (자양동, 가든하우스)
4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0746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홍*자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바길 **	***호 (추암동, 제**차대림하이츠타운)
4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0774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오*원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길 *--*	b**호 (목동, 신보빌라)
4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077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최*규	폐문부재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번길 **	***호 (원종동, 에덴빌라)
4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0829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성*리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	***호 (압구정동, 미성아파트)
4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0825	바뀌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김*숙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길 *--*	층***호 (신림동)
4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0794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최*백	이사불명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연호로 **	(울진읍)
4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0706	바뀌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김*만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	(송인동)
4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0704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강*연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성로*길 *	***호 (성수동*가, 서울숲빌라)
5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0807	바뀌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박*준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사로 *--*	***호 (천호동)
5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0700	바뀌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김*숙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길 *--*	층 ***호 (신림동)
5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073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박*건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번길 **	***동 ***호 (청학동, 한별렉스힐 타운하우스)



함께 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